



201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Childcare center Safety & Insurance Association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Childcare center Safety & Insurance Association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목차

제1장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 7

1. 안전사고 현황 / 8
2. 법규 및 실제 / 11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 15

1. 사고유형으로 살펴보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예방법 / 16
2. 어린이집 소방·전기·가스 설비 및 관리 / 52
3. 어린이집 재난 안전 대비 및 대응 / 69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 93

1. 안전사고 대처법 / 94
2.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응급처치 / 96

참고문헌 / 122





사례로 알아보는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기획/편집

성명	소속	직위
윤경봉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국	국장
전경하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안전팀	팀장
신상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안전팀	대리
장미령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안전팀	주임

감수

성명	소속	직위
고용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
권일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재난안전부	차장
남기원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박춘서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
이진희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교육팀	팀장
이현준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사무관
탁송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제1장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르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부분은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영유아·학부모 모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안전사고, 그리고 사고 발생장소 및 빈도에 따른 안전사고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안전사고 현황과 어린이집 안전관리 법규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살펴봅니다.

01. 안전사고 현황

02. 법규 및 실제





01

안전사고 현황



가. 연령별 보육현원 비율과 사고율과의 특성

2016년도 말 기준,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전체 인원은 1,451,215명(보육통계 기준)이었으며 이 중 남아 750,122명(51.7%), 여아 701,093명(48.3%)임. 보육 아동에 대한 연령별 인원비 중은 2세 386,726명(26.6%), 1세 318,245명(21.9%), 3세 263,652명(18.2%)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보육 현원 비율 〉

(명, %)

구 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보육아동	1,451,215	141,013	318,245	386,726	263,652	180,255	153,893	7,431
비 율	100	9.7	21.9	26.6	18.2	12.4	10.6	0.5

2016년도에 발생하여 현재('18.2월)까지 공제회로 보상 접수된 총 19,509건의 연령별 현황은 표와 같음

〈 연령별 사고건수 및 평균사고율 〉

(건, %)

구 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사고건수	19,509	326	1,726	5,410	4,004	3,057	4,776	210
비 율	100	1.7	8.8	27.7	20.5	15.7	24.5	1.1

이에 따른 연령별 보육현원 대비 사고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보육현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대비 연령별 사고율이 낮은 연령은 0세(9.7% vs. 1.7%) 및 1세(21.9% vs. 8.8%)였으며, 2세 이상의 경우 사고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특히 5세의 경우 현원 비율 대비 2.3배 정도 사고율이 높은 연령별 특성을 보이고 있음



나. 안전사고 유형과 연령별 특성

연령별 발달특성에 따른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하고자 각 사고별 비중을 총 6개 유형별로 분류해본다면,

〈 안전사고별 유형군과 사고건수 비율 〉

구 분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기타)
세 부 사고유형	넘어짐 떨어짐 미끄러짐	물체에 부딪힘 사람에 부딪힘	꼬집음/ 함킴 긁힘	화상	이물질삼킴(삼입)/흡입 물림 음식물섭취	끼임, 놀림, 당김, 찔림, 베임, 기타
비 율	6,295건 (32.9%)	5,876건 (30.1%)	1,583건 (8.1%)	442건 (2.3%)	871건 (4.5%)	3,812건 (19.5%)



유형 1군(넘어짐, 떨어짐, 미끄러짐)과 2군(물체에 부딪힘, 사람에 부딪힘)의 경우, 신체적 움직임이 덜한 0세아를 제외하고 각 연령별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1~3세의 경우, 행동범위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주변 대상들에 대한 모방행동이나 놀이 등을 하려다 본인이나 주위환경에 의해 넘어지거나 떨어짐, 미끄러지는 사고가 각 연령의 평균 사고율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신체조절능력이 능숙하지 못한 연령별 특성을 감안한 예측과 예방조치가 필요함
- 4~5세의 경우, 대근육의 발달 등 신체움직임이 활발해짐과 함께 자기중심적 상황판단이나 성인에 비해 좁은 시야범위 등으로 인해 충돌 사고(부딪힘)가 각 연령의 평균 사고율보다 많이 일어나 이에 대한 적절한 중재나 환경구성과 함께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함





제1장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 유형 3군, 4군, 5군의 경우 영아기 사고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음
- 유형 3군(할퀴, 긁힘)의 경우, 자기감정조절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친구와의 놀이 중 상대 아동에 대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 등이 특징이며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은 2세 이하에서 많이 나타남
- 유형 4군(화상)의 경우, 호기심이 왕성하고 사전교육에 의한 습관화 단계 전 예측되지 못한 행동들이 빈번한 1세 이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 보육교직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임도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과 철저한 주의와 예방조치가 필요함
- 유형 5군(이물질삼킴, 물림, 음식물섭취)의 경우, 손에 닿는 것을 쉽게 입으로 가져가는 특성을 지닌 영아기의 전형적인 사고이며 또한 상대방에 대한 감정표현을 ‘무는 행위’로 나타내는 특성도 같이 나타나고 있음
- 유형 6군의 경우, 끼임, 찢림, 베임, 기타 야외사고(물에 빠짐 등)나 교통사고 등으로 전 연령기에 걸쳐 나타나지만 활동이 많은 유아기의 특성 또한 함께 혼재되어 있음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원 중인 영유아 등에 대한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조치만이 아니라 가정과의 협력(올바른 옷차림 및 생활습관(예절), 손톱정리, 신체적·정서적 정보 공유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안심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무모와의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요소임을 함께 인식해 나가야 할 것임





가. 어린이집 안전관리 법규

어린이집의 시설·설비 관련 법령과 조항은 영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됨

- | | |
|----------------------|----------------------------------|
| ▶ 영유아보육법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아동복지법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 ▶ 건축법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 ▶ 주택법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 도시가스사업법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 전기사업법 |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 도로교통법 |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 ▶ 방송법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 개인정보보호법 |
| ▶ 식품위생법 | ▶ 석면안전관리법 |
| ▶ 개별소비세법 | ▶ 환경보건법 |

나. 어린이집 안전관리를 위한 보육사업안내 지침

1) 분야별 예방관리

가) 물리적 환경

(1) 어린이집 자체 안전 관리

- 어린이집의 장은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을 실시
- 자체점검은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함

(2)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시설안전 관리

-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함





제1장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나) 인적 환경

(1) 보육교직원 행동 지침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2) 안전교육

〈영유아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소방대피, 지진대피, 폭설대비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 1회 실시해야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대상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안전교육기준 참고)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 및 이수해야 함
-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부모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 아동학대, 안전, CCTV 열람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 아동학대예방 등 관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안전사고 대비체계 구축

가) 비상연락체계 구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나) 안전사고 대응

- 비상상황 및 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책임관의 지시에 따라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활동 전개 및 어린이집의 비상대응계획 가동 및 운영함

다)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응급 처치동의서를 비치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해야 함
 -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 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보고를 원칙으로 함
- ※ 2011.1.1.부터 감염병 보고는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의 발생현황을 보고

3) 안전관리책임관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 관리감독 및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하며, 시설장이 안전관리책임관 역할 수행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해당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가) 평시 주요업무

- 어린이집이 직면할 수 있는 재난, 재해에 대해 비상대응계획 수립(연 1회)
-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총괄(월 1회)
 - ※ 비상계획수립 관련 상세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비상대비훈련 지침 참조
- 어린이집의 비상연락망 수립 및 관내 안전관리 기관과의 연락체계 수립
 - ※ 비상연락망은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의료, 경찰,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 연락처를 포함





제1장 어린이집 안전사고의 이해

나) 어린이집 내 안전관리 시설 유지관리 담당

● 어린이집 내 안전관련 시설

- 화재감지기, 소화기, 화재경보기와 수신기 등 화재 감지 기구 점검
- 비상대피도 마련, 가스 밸브, 전기 차단기 점검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

다) 비상상황 및 재해발생 상황

- 발생 시 :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활동 전개 및 어린이집의 비상대응 계획 가동 및 운영
- 발생 후 : 재해발생 전 상황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복구 절차 총괄

MEMO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어린이집에서는 실내외 환경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이나 잠재적 위험 발견 시 제거 및 수리를 통하여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들이 실내외 환경의 안전수칙을 익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시에 사전예방 및 대피훈련 등을 일상화해야 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대처요령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사례로 살펴보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와 예방법, 소방전가가스 설비, 재난 대응법을 살펴보고, 재난재해 시 어떻게 대비하고 점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합니다.

01. 사고유형으로 살펴보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예방법
02. 어린이집 소방전가가스 설비 및 관리
03. 어린이집 재난 안전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안전공제회로 공제급여 청구된 자료를 사고유형에 따라 선별하여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고유형 분류〉

사고유형 ① 넘어짐, 추락(떨어짐), 미끄러짐

사고유형 ② 부딪힘(물체, 사람)

사고유형 ③ 할퀴, 긁힘

사고유형 ④ 화상

사고유형 ⑤ 이물질 삼킴

사고유형 ⑥ 기타(실종, 통학차량 등)



유형 ①-1 넘어짐

장난감을 밟아 넘어졌어요



놀이를 마치고 정리정돈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놀았던 교구들을 교구상자에 넣어 정리하였습니다. 회수도 계속 가지고 놀던 숫자놀이 교구를 상자에 넣어 정리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정리를 먼저 끝마친 회수는 “자 이쪽으로 모이세요”라는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1등으로 정리하여 신이 난 회수는 선생님에게 뛰어가다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교구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밟았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진 회수는 바닥에 입술을 부딪쳤고 치아도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예방수칙 ) 바닥에 놓인 물건을 무심코 밟고 미끄러지는 사고는 매우 빈번합니다. 정리정돈이 덜된 교실 바닥은 안전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구를 가지고 논 뒤에는 깨끗이 정리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주제 ①

▶ 놀잇감 안전관리(교구) ☆

- 발달에 따른 적합한 크기의 견고한 교구 선정
- 무독성이고 불가연성의 재질로 된 것 확인
- 모서리를 둥글게 잘라 제작
- 빛이 반사되어 눈에 부담이 되므로 가능하면 코팅하지 않은 교구를 활용
- 영아용 인형은 너무 크거나 폭신한 것은 피하기
- 영아에게 직경 3.5cm 이상 놀잇감(구슬, 작은 레고 블록, 단추 등)을 제공
- 유아의 경우, 주사위, 말, 구슬과 같은 크기가 작은 교구까지 정리할 수 있는 정리함을 설치하여 유아들이 작은 교구를 유실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 영유아에게 충분한 수의 교구를 마련해주고, 영유아의 선호도가 높은 교구는 동일한 것으로 여러개 구비
- 부서진 것은 즉시 폐기하고 새 것으로 교환
- 수리가 필요한 것은 방치하지 않고 즉시 수리
- 건전지나 자석, 기타 작은 부속물이 빠지지 않는지 확인

관련주제 ②

〈건전지 교재교구 주의사항〉

- 전자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단추형 수은(리튬)건전지의 사용이 증가하였고 최근 장난감에도 단추형 수은(리튬)건전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영유아가 단추형 수은(리튬)건전지를 삼키거나 코에 집어넣을 경우 장기(식도, 성대, 코뼈 포함)에 심각한 화상과 괴사를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하고, 자석 또한 삼킬 경우 자석끼리 붙어 장기에 천공이 생기고 출혈과 감염, 패혈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추가 사고사례 - 이물질 삼킴 사고(교구)]



〈파손된 자석교구〉



〈개복술 후 환아〉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자유선택활동시간 놀이 중 자석 교구를 가지고 놀던 유아가 손과 입으로 여러 차례 뜯다가 자석을 삼킴. 각기 다른 창자에 위치한 자석이 붙어 천공 및 괴사 직전 상태에서 개복하여 제거함

(예방 수칙)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석교구에 대하여 정기적 점검을 통해 파손되거나 노후된 교구 파기 필요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만 2세 영아가 플라스틱 소재 포도 모양 장난감 교구(가로 4cm, 세로 3.5cm)를 가지고 놀던 중 이를 삼켜 질식사하여 결국 사망

※ 병원 이송 과정이 지연(1시간 가량) 됨으로 인해 적절한 응급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함

(예방 수칙)

→ 영아의 코, 귀, 입에 들어갈만한 작은 크기의 교구(직경 3.5cm) 는 제공하지 않도록 함



유형 11-2 넘어짐

신발을 꼭 맞게 신어요



어린이집 일과가 끝나고 모두 집에 갈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옷을 챙겨 입고 즐거운 마음으로 현관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차례차례 선생님의 손을 잡고 현관 앞에 앉아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런데 윤아는 빨리 집에 가서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에 신발을 대충 신고 급히 일어났습니다. 윤아는 **현관문**을 향해 뛰어가다가 아직 완전히 신지 못한 신발이 벗겨져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눈 옆 부분이 찢어지는 상처가 있습니다.

(예방수칙) 영유아들에게 큰 신발은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신발 끈이 풀어져 밟고 넘어 지기도 하므로 신고 벗기에 편한 신발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귀가 지도 시에는 현관 앞이 혼잡할 수 있으니 영유아들이 차례대로 나와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관련주제

현관

- 현관은 가능하면 넓게 설치
- 신발장은 영유아가 함께 사용 시 혼잡 피하기 위해 높이는 낮고 가로는 넓게 설치
- 신발장 위에는 물건을 적치하지 않기
- 어린이집 현관문은 영유아가 성인의 보호 없이 나갈 수 없고, 외부인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개폐 장치 설치 및 관리
-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에는 손끼임방지장치 부착
- 문이 닫힐 때 서서히 닫힐 수 있도록 속도조절 장치(도어체크)를 설치
- 눈이나 비가 오는 날의 경우에는 물기를 제거하거나 우산꽂이, 고무매트를 깔기

심화학습

〈CCTV 관련 사항〉

- 어린이집 내 시설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내 시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고 안내판을 일부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 출입구, 어린이집 주변 경계부(담장) 장소에는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어린이집 내 'CCTV 등'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2018 보육사업안내 <부록5>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름

〈CCTV 관리 방법〉

우리 어린이집 CCTV는 이렇게 관리해요	우리 어린이집 CCTV는 이렇게 열람해요
〈CCTV 영상정보 수집 시에는〉 -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 다른 곳을 비추거나 회전,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됨 - 녹음기능 사용 안 됨 - 카메라는 해상도(HD)이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 프레임 저장하도록 설정 〈CCTV 영상정보 저장 시에는〉 - 저장기간은 60일 이상.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1차:50만원, 2차:100만원, 3차:150만원) -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보관 - 영상정보관리대장을 통한 CCTV 설치·운영관리	〈열람 요청을 하고 싶어요〉 - 사유 :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 방법 : '열람 요청서' 제출 〈열람 결정 통지를 해요〉 - 10일 이내 회신 - 방법 : 자료를 요청한 보호자에게 '열람결정통지서' 발송 - 내용 : 열람장소, 일시 등 ◆ 열람이 안될 수 있어요 • 영상자료 보관기관(60일)이 경과한 경우 • 어린이집운영위원장이 피해정도, 사생활 침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 관리자(원장 등)가 관리차원에서 열람 시에도 관리대장에 기록

〈CCTV 영상정보 삭제 시에는〉

- 삭제 주기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 조치
- 삭제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 열람 요청이 있는 영상 정보
- 사고 관련 영상 정보

〈열람을 해요〉 - 최장 7일

- 대상 : 자료를 요청한 보호자, 원장
- 범위 : 열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협의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신분증 등

출처: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6). CCTV 관리방법 포스터



유형 Ⅱ-3 넘어짐

웅덩이를 보지 못했어요



오전 실내자유선택 놀이가 끝나고 **어린이집 근처의 작은 뒷산에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짝을 지어 씩씩하게 산을 오르며, 주변의 식물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첫째 줄에서 앞장서던 도윤이가 바닥에 작게 패인 웅덩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발을 헛디딤으로써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곳에는 크고 작은 돌들이 박혀있고, 나뭇가지들도 많아 도윤이는 무릎과 손바닥, 그리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방수칙) 영유아들이 나들이나 현장학습과 같이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갈 때는 주변의 여러 사물과 현상을 탐색하느라 넘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영유아들은 호기심이 많고 관심 가는 곳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외 나들이 시에는 사전에 영유아들에게 주의할 내용을 알려주어 숙지시키고 교사가 맨 앞과 맨 뒤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합니다.



**관련주제****일상적 야외활동(나들이, 산책 등)****가. 활동 전 준비사항**

- 계획 수립 : 월간 또는 주간보육계획 수립, 영유아 건강 및 날씨 고려, 학부모 의견 수렴
- 부모 공지 : 문서로 공지하기(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대화수첩, 보육계획안 등)
- 사전 답사 : 동선 파악, 위험 요인 확인
- 영유아 및 보육교사 안전교육 실시
- 구조법 및 응급처치 요령 숙지
- 물품 소지 : 영유아 명단, 비상약품, 비상연락처, 기타 물품(핸드폰, 카메라, 물수건 등)
- 영유아 및 보육교사 복장 확인
 - 어린이집 명, 어린이집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름표(유괴에 대비해 이름을 기재하지 않음)
 - 활동하기 편한 복장, 끈이 없고 신체 크기에 맞는 운동화
-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확인

나. 활동 중 주의사항

- 이동 시
 - 도보 : 전체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빨리 걷도록 재촉하지 않음
 - 유모차 : 유모차 탑승 시 안전(바퀴, 시선)에 대해 주의, 유모차 정차 시 브레이크 잠금
 - 횡단보도 : 횡단보도에서 한발짝 물러섬, 횡단보도 건널 시 손을 들고 가도록 지도
- 나들이, 산책 시
 - 안전한 장소로 인솔, 수시로 인원 확인 및 건강상태 살핌, 활동하는 시간만큼 충분한 휴식시간 갖기, 앉아서 기다리기

다. 활동 후 확인사항

- 인원 및 소지품 확인 : 최종 인원 점검, 소지품 확인
- 손 씻기 및 건강상태 확인 : 손 씻기, 건강상태 살핌





미끄럼틀에서 떨어졌어요



점심식사를 마친 서언이와 유진이는 유희실에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서언이와 유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때, 블록놀이를 하던 연경이는 **유희실**에 와 좋아하는 블록을 들고 미끄럼틀에 올라갔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려는 순간 연경이가 비틀거리며 미끄럼틀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연경이는 손목이 부어올랐고 손에 쥐고 있던 블록 모서리에 의해 이마도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예방수칙) 유희실에서 영유아들의 갈등을 중재 할 때 안전사고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어린 영아가 미끄럼틀을 탈 때에는 반드시 교사의 감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희실과 같이 대근육 활동을 즐기는 곳에서 블록 조각 때문에 다치는 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교재 교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주제

유희실

- 대근육 활동 기구는 서로 충분한 공간을 두고 비치
-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장에 보관하고 잠금장치를 설치
-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소그룹으로 나누어 활동하기
- 영유아 키 높이의 벽면, 바닥, 기둥, 모서리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 또는 안전 매트 설치, 대근육 활동 시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매트 깔기
- 창문 없는 벽면에 놀이기구 배치하기



〈그림 1〉 유희실 놀잇감 간격 두고 배치



〈그림 2〉 유희실 바닥과 벽면 매트

MEMO

A large, rounded rectangular area with a dashed border and horizontal lines inside, intended for writing notes.





흔들흔들 흔들다리



만 5세 은하수반 아이들은 어린이집 근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실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놀이기구에서 놀던 중 민준이는 흔들다리를 빠르게 건너보고 싶었습니다. 다리 위를 뛰어가던 민준이는 중간에서 그만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결국, 다리의 난간 사이로 빠져 추락한 민준이는 바닥에 엉덩이를 세게 부딪쳤습니다. 흔들다리는 바닥에서 1m 정도 높이였지만 다행히 우레탄 소재의 폭신한 바닥 덕분에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민준이는 앞으로 뛰어들지 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예방수칙) 실외활동 시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유아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사고가 추락사고입니다. 그물망이나 난간에 영유아들의 몸이 빠질 수 있으므로 위험한 놀이기구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거나 교사와 함께 손을 잡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놀이 전후의 안전에 관한 약속을 반복하여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EMO



관련주제

실외 놀이터

- 영유아가 길이나 도로에 나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 설치
-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영아용과 유아용 놀이터를 따로 구분하여 적합한 크기의 구조물 설치
- 입에 넣을 만한 것이나 손이 베일만한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확인
- 모래놀이터는 무게감 있는 덮개로 덮어 놓으며, 주기적으로 살균 소독
- 실외놀이 도중 일사 광선을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그늘 확보

심화학습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

-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함
- 이 법 시행(2008.1.27)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요약 〉

구분	내용
안전점검	매월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 합격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검사불합격 시설 이용금지	설치검사를 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 이용금지/ 정기시설검사를 받지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 이용금지
유지관리	상시
안전진단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이용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기록 보관
안전교육 이수	시설인도 후 3개월 이내 2년에 1회 재교육
보험가입	시설인도 후 1개월 이내 가입
중대사고보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자료제출·보고	자료제출명령 접수 시 즉시보고

출처 :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cpf.go.kr>)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활용 tip



- ▶ 어린이집안전공제회홈페이지(www.csia.or.kr)
> 자료실 > 예방자료실 > [애니메이션]놀이 시설 안전관리(full)



유형 1-6 미끄러짐

화장실 앞에서 미끄러짐!



하루 종일 재미있게 논 윤호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윤호가 선생님께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선생님은 윤호를 화장실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윤호는 곧 실외활동을 하러 나갈 시간이라 빨리 볼일을 보고 뛰어 나갈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급한 마음에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던 윤호는 바닥에 있던 발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로 넘어진 윤호는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쳤고, 그로 인해 윤호의 머리에는 피가 나고 찢어지는 상처가 났습니다.

(**예방수칙** ) 화장실 앞이나 세면대, 기저귀갈이대 등과 같이 물을 다루는 곳의 바닥부분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매트나 수건을 놓아두어야 합니다.



관련주제

화장실

- 화장실 바닥재는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것을 사용
- 바닥이 미끄러울 경우 미끄럼방지대 또는 물기제거판 설치
- 영유아용 화장실 문은 안과 밖에서 다 열 수 있도록 설치
- 교사가 비상 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높이로 설치
- 영유아가 수도꼭지를 조작해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도록 수온을 조절하고 온수조절장치 등을 설치
- 위험한 물건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별도 보관하거나 잠금장치하여 보관
- 돌출형 라디에이터의 경우는 화상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설치



〈그림 3〉 영유아용 화장실



〈그림 4〉 미끄럼방지 매트



〈그림 5〉 온수조절장치

MEMO





다음 시간은 특별활동 수업입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다 함께 2층 강당으로 이동하기 위해 복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다소 지루했던 지연이는 복도 계단의 손잡이를 보았습니다. 손잡이 이곳저곳을 만져보다가 놀이터에서 오빠들이 철봉에 매달려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는 손잡이에 매달려 보았지만, 너무 높아 마음대로 잡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본 연우는 지연이가 잘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지연이를 뒤에서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지연이는 갑자기 연우가 미는 바람에 손잡이에 쇠골을 부딪쳐버렸습니다. 결국, 지연이는 쇠골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방수칙 ) 키가 작은 영아들에게는 손잡이가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얼굴, 어깨 등을 부딪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안전쿠션 등으로 손잡이를 마무리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손잡이는 보행을 위한 설비이므로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손잡이가 없는 곳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영유아가 차례를 기다리면서 긴 시간을 보내는 전이시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동안 무료하지 않도록 간단한 손놀이나 노래를 부르는 등 앉아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주제

복도

- 복도는 최소한 성인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너비를 확보 (영유아 충돌 방지)

계단

- 계단의 난간은 세로봉 10c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 계단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계단의 끝부분에 미끄럼방지대를 설치
- 손잡이(굽힘 없는 부드러운 표면)는 벽을 따라 연결
- 계단에서는 천천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
- 일렬로 줄을 서서 이동할 경우, 앞의 영유아와 간격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가 항시 주시



〈그림 6〉 미끄럼 방지



〈그림 7〉 계단의 난간설치



〈그림 8〉 2층 안전문 설치

MEMO





아이들의 낮잠시간 후, 선생님은 교실을 정리하며 이불을 수납하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꼭 잔 재민이는 기분이 상쾌하여 보육실과 유희실을 드나들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재민이는 선생님께서 이불정리를 하시던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신이 난 재민이는 제자리에서 두 발을 모아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에 열려있던 수납장 문 모서리에 머리를 찰고 말았습니다. 놀란 선생님은 곧바로 재민이를 일으켰고 머리를 살펴보니 피가 많이 나고 있어 병원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예방수칙 ) 교사가 자주 사용하는 가구라 할지라도 영유아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있는 가구는 모든 모서리 부분에 안전장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또 여닫이문 보다 미닫이문, 커튼 등을 활용하여 좀 더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MEMO



**관련주제 ①****▶ 보육교직원의 가구(수납장, 사물함, 기타 가구 등) 관리**

- 보육교직원의 개인 물품은 잠금장치가 된 별도의 공간이나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 이불장, 가구장이 보육실 내에 있을 경우 영유아가 스스로 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 설치

관련주제 ②**▶ 가전제품(선풍기, 가습기 등) 관리**

- 영유아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사용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
- 선풍기나 히터는 보호망을 사용하거나 벽걸이 용으로 사용
- 가습기 등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교구장 등 높은 곳에 두지 않고 고정시켜 사용

관련주제 ③**▶ 기타 비품(약품, 피아노 등) 관리**

- 약품은 영유아 손이 닿지 않도록 교구장이나 수납장 안에 보관하고 잠금장치 설치
- 피아노 밑부분, 건반과 뚜껑사이에 폭신한 천이나 부직포를 부착하고, 피아노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 항상 뚜껑을 닫아 놓고 잠금장치 이용
-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비품(글루건, 전기주전자 등)은 보육실에서 사용하지 않기
- 영유아용 거울을 부착 할 경우 안전거울이나 투명 시트지를 부착하여 깨짐을 방지

MEMO




아이들은 **실내 놀이터**에 있는 복합 놀이대에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놀이대 밑에 작은 공간에서 민찬이와 예린이는 소꿉놀이를 하였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놀이를 하던 중 예린이가 실수로 물컵 장난감을 놀이대 바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민찬이는 컵을 대신 줍기 위해 급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낮은 공간에서 급하게 일어난 민찬이는 놀이대 위쪽 벽에 머리를 쿵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었지만 특별한 외상이나 통증은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던 민찬이는 점점 구토를 심하게 하기 시작했고 지속적인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뇌에 충격이 가해졌던 것 같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방수칙) 영유아들은 독립된 작은 공간에서 놀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모르게 일어서다가 지붕이나 기둥 등에 머리를 부딪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위험이 있는 부분에 '머리조심'이라고 적어붙이고, 완충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레탄 스펀지를 넓게 부착하여 놓도록 합니다. 또한, 머리를 부딪친 경우 외상이 없더라도 병원 진단을 꼭 받도록 합니다.



관련주제

실내 놀이기구 설치

-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
- 놀이기구는 영유아의 신장,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여부 확인
- 놀이기구에는 살이 베이거나 찢릴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모서리 등), 돌출 부분(볼트, 너트 등), 파손 부분이 없어야 함
- 움직임으로 인하여 옷과 끈 등이 놀이기구에 묶이거나 얽매임이 없어야 함
- 1m 이상 높이의 모든 놀이기구에는 벽면, 바닥, 기둥, 모서리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충격 흡수용 표면재) 또는 안전매트를 설치
- 특히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바닥에는 안전매트를 설치하며 충격을 최소화



유형 2-4 사람과 부딪힘

천천히 차례차례 미끄럼틀을 타요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인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아이들은 너도나도 미끄럼틀로 올라갔습니다. 미끄럼틀을 유독 좋아하는 서정이는 다른 아이들에 뒤질세라 얼른 미끄럼틀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탈 차례가 되자 신이 난 서정이는 미끄럼틀에 앉아 힘차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끄럼틀 끝에는 먼저 탄 민규가 아직 다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정이는 앞서 내려가던 민규와 부딪치면서 발목을 빼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예방수칙 ) 영유아들은 높은 곳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즐거움 때문에 미끄럼틀을 좋아하지만, 안전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놀이기구이기도 합니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 먼저 미끄럼틀을 탄 친구가 완전히 내려가야 위에 서서 기다리는 친구가 탈 수 있다는 안전규칙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관련주제

실외환경 - 놀이기구 이용시 유의 및 지도방법

가. 그네

- 그넷줄이 단단히 매어 있는지, 좌석의 훼손 정도를 확인
- 그네를 타고 있는 영유아는 놀이하고 있는 친구와 충돌하지 않는지 주의
- 양손으로 그넷줄을 잡고 앉아서 타고, 그네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타고 내리도록 지도
- 그네가 움직이는 도중에 뛰어 내리거나 친구와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
- 배를 깔고 엎드려서 타거나 서서 타지 않도록 지도
- 그네 가까이에서 놀이하지 않기

나. 시소

- 쇠로 된 시소는 이용하기 전에 시소 표면 온도를 확인하고, 화상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하지 않기
- 녹이 슬지 않았는지,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
- 시소에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수시로 살피기
- 시소에 오르고 내릴 때 손잡이를 반드시 잡도록 지시

다. 미끄럼틀

- 미끄럼틀을 이용하기 전에 교사는 반드시 미끄럼틀의 표면 온도를 확인하고, 화상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하지 않기
- 나무로 된 미끄럼틀의 경우에는 나무가 일어난 곳, 갈라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미끄럼틀 이용 시 미끄럼틀 판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먼저 내려간 영유아와 부딪치지 않도록 간격을 두고 내려가도록 지도

라. 오르기 기구(정글짐, 그물망 오르기, 계단오르기, 사다리 오르기 등)

- 끈이 끊어져 발이 빠지는 곳은 없는지,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 등 확인
- 영유아가 올라갈 때 흔들거림 없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 혼자 힘으로 기구를 잡을 수 없는 연령(영아)은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그림 9〉 안전 미끄럼틀

〈그림 10〉 충격 흡수판



유형 3-1 할퀴

질서를 지키지 않아 상처가 났어요



박물관 외부 견학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차량 탑승을 위해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승범이와 지원이가 서로 앞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차례로 서서 차량에 탑승할 것을 지도했지만 승범이 앞에 지원이가 서자 승범이는 “내가 맨 앞에 설 거야” 라면서 지원이의 가방을 잡아당겼습니다. 이때 화가 난 지원이가 “하지마!”라고 소리 지르면서 몸을 돌려 손으로 승범이 미간 사이를 할퀴었습니다. 지원이의 손톱이 다소 긴 상태여서 승범이 미간에 상처가 나고 말았습니다.

(예방수칙 ) 줄 서기를 하거나 기다리는 시간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지루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은 마음에 영유아들은 장난을 치거나 자리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질서와 차량 탑승규칙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관련주제

현장학습(관람, 체험, 견학 등) ☆

가. 현장학습 전 준비사항

- 계획 수립 : 연간 보육계획 수립, 영유아 건강 및 날씨 고려, 학부모 의견 수렴
- 부모 공지
 - 문서로 공지하기(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대화수첩, 보육계획안 등)
 - 동의서 받기(참여 유무, 부모 서명)
- 사전 답사 : 동선 파악, 위험 요인 확인
 - 현장학습을 가기 전에는 자주 가는 장소라도 계절이나 시기에 따라 주위환경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답사를 실시
 - 사전답사 시에는 영유아의 이동 동선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화장실, 의무실과 함께 인근 병원도 미리 확인해야 함
- 계획표 및 시간별 세부일정 작성
 - 현장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표 작성
 - 시간에 따른 교사역할 분장 작성
- 영유아 및 보육교사 안전교육 실시
- 구조법 및 응급처치 요령 숙지
- 물품 소지 : 영유아 명단, 비상약품, 비상연락처, 기타 물품(핸드폰, 호루라기, 일정표, 카메라, 물수건, 여벌옷 등) 소지
- 영유아 및 보육교사 복장 확인
 - 어린이집명, 어린이집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름표(유괴에 대비해 이름을 기재하지 않음)
 - 활동하기 편한 복장, 끈이 없고 신체 크기에 맞는 운동화 착용
- 영유아 및 운전자 협조 요청
 - 영유아 차량 이용에 대한 안전약속
 - 운전자 정보 공개 및 안전운전에 대한 협조 요청
-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확인

나. 현장학습 중 주의사항

- 이동시
 - 도보 : 전체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빨리 걷도록 재촉하지 않기
 - 차량 : 안전벨트 착용, 차량 내부 안전사항 살핌, 트렁크에 음식 보관 안 됨, 안전하게 하차





- 횡단보도 : 횡단보도에서 한발짝 물러섬, 횡단보도 건널 시 손을 들고 가도록 지도
- 관람, 체험, 견학시
 - 안전한 장소로 인솔, 수시로 인원 확인 및 건강상태 살핌, 충분한 휴식시간, 활동하는 시간만큼 충분한 휴식시간 갖기, 앉아서 기다리기

다. 현장학습 후 확인사항

- 인원 및 소지품 확인 : 최종 인원 점검, 소지품 확인
- 손 씻기 및 건강상태 확인 : 손 씻기, 건강상태 살핌
- 평가표 작성 : 활동관련 평가, 안전관련 평가



유형 3-2 굼뎀(베임)

책 모서리에 굼뎀(베임)



푸른 반 종현이와 수진이는 **보육실**에서 함께 책을 보며 하원 시간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 사이좋게 같은 책을 한쪽씩 넘기면서 보기도 하고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책 마지막 장을 넘기고 나서 종현이가 책을 책장에 꽂아놓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는 종현이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고 함께 책을 정리하겠다고 책장 앞으로 갔습니다. 종현이는 바로 옆에 다가온 수진이를 보지 못하고 책을 꽂았습니다. 그 순간, 책 모서리에 수진이의 이마가 굼뎀(베임)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방수칙) 책꽂이나 도서 자체에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에 소파나 책상, 카펫을 설치하여 독서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 될 것입니다.





관련주제

실내 환경



가. 공간별 안전관리

1) 보육실

- 보육실은 넓고 개방적인 공간(1인당 2.64m²)이어야 함. 보육실이 협소한 경우, 유사한 영역을 통합하여 배치하되 교사가 영유아를 한눈에 파악가능 하도록 하기
- 보육실 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하는 끼임 방지 장치 설치
- 보육실 가구 등에 모서리 보호대 설치
- 바닥은 턱이 없어야 하며 미끄럼 방지 처리
- 창문은 유아가 밖을 볼 수 있는 높이에 설치(2층 이상 보호대 설치)
- 유리는 안전유리를 설치해야하고, 부딪침 방지 위해 유리에 스티커 부착
-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방음 장치를 천장, 벽, 또는 바닥에 설치
- 영아반에는 안전문(안전울타리) 설치



〈그림 11〉 문-손끼임방지



〈그림 12〉 미끄럼방지 매트



〈그림 13〉 창문 부딪침 방지 무늬

MEMO





유형 ③-3 굽힘(베임)

문을 너무 세게 열었어요



점심 식사 후 각자 자유롭게 앉아서 쉬거나 책을 보는 자유선택활동시간이었습니다. 5세 반 친구 보람이는 보육실 문 쪽에 앉아 블록 놀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문밖에서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돌아오던 선후가 급히 뛰어 오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하던 그림 그리기 놀이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에 보육실 문을 세게 연 순간, 안쪽에 앉아있던 보람이가 문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블록 놀이에 집중하던 보람이는 급히 열리는 문을 미처 피하지 못하였고, 보육실 문 모서리에 발등을 3cm가량 긁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예방수칙) 보육실의 출입문은 안전을 고려하여 문 턱이 없는 미닫이 문으로 하거나, 문 안쪽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문에 창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손, 발 끼임 장치를 설치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용하는 놀이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지정 장소에서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주제

어린이집 문 설치

* 문은 어린이집 외부에서 바로 이어지는 출입문을 제외한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문(보육실문, 화장실문, 중간문 등)을 말한다.

- 출입구,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은 안과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도록 설치
- 여닫이문보다 미닫이문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한 방향으로 열고 닫도록 설치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 가급적 안과 밖이 다 보일 수 있는 강화유리로 된 투명문을 설치하고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부딪침을 방지하기
- 영유아 신체에 손잡이가 닿을 경우 둥글게 처리된 손잡이를 사용하거나 손잡이 쿠션(커버)을 씌워서 사용
- 문의 잠금장치는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높이에 설치
-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문에는 문이 닫히는 것을 방지하는 문닫침방지대를 설치
- 문이 서서히 닫히도록 하는 속도조절장치 설치
- 문틀 사이, 문틈 아래에 손가락이나 발이 들어갈 공간이 있는 경우 끼임방지대를 설치
- 문에 모서리가 있을 경우 모서리보호대 설치



유형 4-1 화상

뜨거운 국이 옆질러졌어요



12시 점심시간이 다가와 선생님은 분주하게 아이들 식사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주방에서 보육실로 밥과 국, 반찬을 나르고 있을 때 배식 테이블 아래에 있는 작은 축구공 장난감이 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공을 좋아하는 재성은 테이블 아래로 기어들어가 재빠르게 공을 줍고 기분이 좋아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성이 갑자기 일어서는 바람에 배식 테이블이 흔들려 국통이 엎어졌고 재성은 뜨거운 국물에 의해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방수칙) 주방에서 보육실로 음식을 가지고 오기 전, 뜨거운 음식은 영유아들이 먹기 좋게 미리 식혀야합니다. 그리고 배식을 위해 음식을 여러차례 나르기 보다는 음식물 전용 카트에 싣고 한번에 안전하게 나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별 식판에 배식을 모두 하고 난 후에 테이블에 앉도록 하여 배식 과정 중 영유아들이 이동하지 않도록 지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주제

▶ 식당(조리실)

- 이동 시 부딪칠 수 있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치움
- 뜨거운 물과 음식은 화상 방지를 위해 미리 적절하게 온도를 낮추어 제공
- 조리실에는 영유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전문 설치
- 조리실의 벽, 바닥, 천장은 모두 내화성, 내수성,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설비
-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고 환기를 자주 시켜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



〈그림 14〉 조리공간의 분리

추가 사고사례

▶ 간식 조리 중 화재 사고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원아들의 간식을 만들기 위해 가스불에 기름을 끓이다가, 교재교구 정리를 위해 약 1~2분 정도 조리현장을 이탈함. 다시 부엌으로 가보니 달궈진 기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가스레인지 옆과 후드장치에 불이 타올라 응급조치로 진화 작업을 함

(예방수칙)

- ⇒ 조리시 조리현장을 가급적 이탈하지 않고, 급한 용무 시 다른 교직원에게 주시 부탁
- ⇒ 주방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함
- * 자동확산소화기 : 화재 시 화염이나 열 감지 (72℃)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 * 주방용 K급 소화기 설치





하윤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모래놀이**를 하러 이동했습니다. 모래를 마음껏 만지고 다양한 모양으로 쌓아보며 재밌게 놀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놀고 있던 신후가 갑자기 모래를 한 움큼 집어 하윤이 쪽으로 뿌렸습니다. 하윤이는 몸을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모래를 뒤집어쓰고 말았습니다. 하윤이의 입안에 모래가 잔뜩 들어갔고 눈도 너무 따가웠습니다.

(**예방수칙** ) 실외 놀이 공간은 새로운 환경과 놀이기회 속에서 쉽게 흥분하거나 친구와 갈등을 일으키는 등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여러 공간에서 놀이기회보다 두 세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시간과 순서를 정해 놀이규칙을 회상한 후에 놀이하도록 지도합니다. 아울러 모래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눈을 비비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흐르는 식염수를 옆으로 흐르게하여 이물질 제거한 후,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관련주제

모래놀이 시설

- 모래놀이 시설은 곰팡이 등의 세균번식을 막기 위해 햇볕이 잘 드는 양지 바른 쪽에 설치 하되, 더운 날 강한 햇볕을 막아주기 위해 그늘을 만들어 주거나 그늘에서 놀 수 있도록 지도
- 모래놀이 도구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함을 만들어 주어 유아들이 정리하도록 지도





- 모래놀이 도구는 수시로 점검하여 깨진 것이 있으면 즉시 교체
- 모래를 입에 넣거나 다른 사람에게 뿌리지 않도록 지도
- 모래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비비지 않도록 지도
- 모래는 수시로 체로 쳐서 유리조각이나 돌맹이 등의 위험물질을 골라내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뚜껑이나 덮개를 만들어 덮어두기
- 모래가 부족해지면 수시로 보충해 주고, 모래를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 주기

심화학습

〈모래의 세척 방법은?〉

- ① 모래발 10㎡를 세척할 경우 표백용액 22ml와 물 18ℓ를 준비한다.
- ② 먼저 9L 물에 11ml의 표백용액을 잘 섞어서 모래발에 골고루 뿌린다.
- ③ 잠시 후 나머지 9L 물에 11ml의 표백용액을 잘 섞어서 모래발에 골고루 뿌린다.
- ④ 모래발 전면에 용액을 골고루 뿌린 후 속에 있는 모래와 골고루 뒤섞어 준다.
- ⑤ 수도에 호스를 연결해서 모래발에 물을 뿌려 용액이 밑으로 흘러가게 한다.
- ⑥ 모래를 다시 뒤섞은 뒤, 다시 한 번 물을 뿌려서 용액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한다.

출처 : 이기숙 외(2002).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MEMO





점심식사 후 풀잎만 아이들은 어린이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쐬고 나무와 꽃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후,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산책 뒷정리를 도운 후 화장실에서 손 씻기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성이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이동했던 길과 공원으로 급히 뛰어가 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담당지구대에서 어린이집으로 윤성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예방수칙 ) 적은 수의 교사와 여러 명의 영유아가 실외 활동을 할 시에는 각 교사가 맡은 영유아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 전체의 집단 이동보다 소집단으로 이동하며, 수시로 인원수를 점검하여 실종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관련주제

실종 및 미아방지

가. 예방 수칙

- 현장학습 시 활동 이전, 중간, 이후 영유아 인원 수 확인
 - ※ 영유아에게도 수시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확인하도록 돕는 안전교육 실시
- 차량 승차 이전, 중간, 이후에 수시로 인원 수 확인
- 외부 현장에서는 교사 대 영유아 수를 더 적게 배정





나. 대처 방법

- 우선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곳에 되돌아 가기
- 함께 걸어가던 짝이나 친구들에게 묻기
- 걸어오던 방향으로 가면서 아이를 찾아보기(발달상 뒤로 돌아 걷기보다는 가던 방향으로 계속 걷는 성향이 있음)
-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 야외 활동 관리자, 부모님(일정 시간이 지나도 못 찾았을 경우)께 신속히 사실을 알리기
-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옷차림과 신체적 특징을 자세히 이야기 하며 안내 방송하기
- 경찰서(112)와 경찰청 실종 아동찾기 센터(182)로 신고하기

다. 실종예방 구호 3단계

- 멈추기 : 길을 잃거나 헤어지면 제자리에 서서 보호자를 기다리게 함. 보호자는 역시 아이가 사라지면 왔던 길을 되짚어 가봐야 함
- 생각하기 : 자신의 이름과 부모 이름, 부모 연락처, 주소 등을 10번씩 외우며 기다리도록 함
- 도와주세요 : 주위에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함. 또한 가까운 곳에 공중전화를 찾아 '긴급전화 112' 또는 '182'를 눌러 경찰아저씨나 가까운 아동안전지킴이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

심화학습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 학교주변 · 통학로 · 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
- 아동안전수호천사 - 신뢰성 있는 업체의 외근사원을 수호천사로 위촉하여 외근활동 중 아동보호활동을 하며, 현재 야쿠르트 아줌마, 집배원, 태권도 사범, 모범택시운전자회, 학원차량기사 등이 활동
- 설립배경
2008년 경기도 안양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 살인 사건 이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와 경찰이 함께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을 도입 시행



〈아동안전지킴이 표지물〉

출처 :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www.safe182.go.kr)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유형 6-2 차량 관련 사고

차에서 잠들었어요



평범한 수요일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등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과 운전기사 선생님은 원아들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한 명씩 차례로 태운 후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안전띠를 풀어주고 아이들의 하차를 도왔습니다. 교실에 도착한 아이들은 걸옷을 정리하며 수업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시간이 흐른 후, 다연이 담임선생님은 다연이가 오늘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모님께 확인차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운전기사 선생님이 “다연이 오늘 차 탔는데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주차되어 있는 차의 맨 뒷자리에서 홀로 잠들어 있는 다연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예방수칙 ) 영유아의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차량** 이동시간이 길면 영유아들은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영유아를 차에 둔 채 방치하게 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큼 매우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승차차 지도 시 탑승 인원과 하차 인원을 정확히 점검하여 차량 운행일지에 기록하고, 영유아들이 모두 내리고 난 후 차량의 안 쪽부터 잠든 영유아가 있는지, 두고 내린 소지품이 있는지, 차량의 안전문제를 천천히 살피도록 합니다.

MEMO





관련주제

통학차량 안전

가. 통학차량 관리

- 통학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 ◎ 어린이집 원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가능 (2008.9.2)
-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시 행정처분 : 시정명령(시정명령 위반시 최대 3개월 운영정지)

- 운전기사 채용 시 건강진단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도로교통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참고

- 운전자는 통학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통학차량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일 경우 어린이보호 표시를 부착하기



〈그림 15〉 차량용 소화기



〈그림 16〉 금연 표시





나. 승하차 안전

-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
- 운전자는 통학차량에 승차한 영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하차한 영유아가 보도 또는 길가 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통학차량을 출발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 장구를 착용
 -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 영유아 몸무게에 적합하고 안전 테스트에 합격한 안전의자 장착하고 차량 운행 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 승하차시 주변 도로환경을 고려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
 -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주·정차 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도로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 위해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정차
 - 통학차량 승·하차 장소를 지정하여 통학차량 주·정차 안내판 등 표시
 - 원아들이 도로 등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하게 대기
-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영유아가 하차한 후 지체없이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
 -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 중 무단결석 영유아가 있을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영유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영유아가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기
 -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
- 등·퇴원 차량 운행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 확인
- 어린이집 원장은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 효력여부(취소 또는 정지 등)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면허 운전자가 통학차량을 운전하지 않도록 관리
 - ※ 매 반기별로 운전기사에게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다.交通安全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어린이집 실정에 맞도록 반복적인 영유아交通安全교육을 실시(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 안전한 도로 횡단법
 -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 날씨와 보행안전
 - 어른과 손잡고 걷기
- 차량 이용 등·하원 관련 부모 안전교육을 실시함
 - 오리엔테이션, 가정통신문, 학부모 안전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집 등·하원 시 주정차 장소 및 승하차 방법 등 안내

활용 tip



〈그림 17〉 승하차 확인 스티커



〈그림 18〉 영유아 승하차 교육자료

※ 통학차량 안전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자료로 삽화 및 스케치(밀그림)으로 구성되어 어린이집에서 교수자료로 사용

▶ 활용자료: (교육자료) 버스에 혼자 남겨졌어요(통학차량 안전) / (영상) 등하원시 주의사항 / (영상) 안전가나다(자막ver)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www.csia.or.kr)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심화학습 ①

어린이집 내 통학차량 안전관련 TIP		
항목	주요 미흡사항	개선방안
문서관리	- 안전교육 확인증 부착 위치, 금연표시 미부착, 성범죄 경력 조회 관리 등	- 각 문서 보관 방법 및 관리방법 안내
어린이 보호표지	- 규격 미달, 부착 위치	- 어린이보호표시 규격 및 부착 방법·위치안내
광각 후사경	- 운전석, 보조석 각각 광각 후사경 미설치	- 광각 후사경의 규격(곡률반지름 100cm 이상) 및 별도 광각 후사경 부착 안내
구급함	- 유통기한 초과, 구급함 미설치	- 구급함은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응급상황 시 빨리 꺼낼 수 있는 장소 안내
소화기 관리	- 소화기 위치, 관리 미흡, 규격미달	- 소화기 위치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점검기록표에 기록할 것을 안내
기타	- 연령에 맞는 카시트 미사용 - 발판 미설치, 작동 불량 - 정지표시장치 미설치 - 등화 장치 탈락 및 작동 불량	- 안전 인증 검사 제품 사용 권장 및 규격에 맞는 보호장구 착용 권장 - 선티*(앞면: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좌우:투과율 40%) 설치 기준 - 승강구 발판, 정지표시장치 설치 기준 안내

※ 위 사항은 '17년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결과(통학차량분야) 어린이집 내 주요미흡사항을 정리한 내용임

※ 통학차량 선티* 관련 사항 중 기존 출고차량의 경우, 자외선 및 열 차단 기능 유지를 위해 선티 전체 제거나 교체보다는 최소한 유리 하단 선티 일부를 제거하여 내부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리

심화학습 ②

통학차량 운행 최장 11년까지

- 2015년 7월 20일 신설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출시된 지 **9년**까지(정기검사 기준 충족으로 연장되더라도 **1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운행할 수 있음
- 다만, 기존 오래된 통학차량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행할 수 있으나, 2019년도부터는 차량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의사항

1. 운송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차량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됨
2. 차량 기산일 기준
 - ① 제작연도에 등록된 경우 : 최초 신규등록일
 - ②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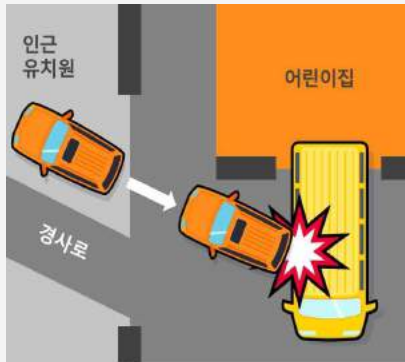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설치 의무화

- ◎ 2021년 7월부터는 개정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모든 승합차의 경우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됨
- *후방영상장치, 보행자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보행자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추가 사고사례

추가 사고사례

▶ 승·하차 대기 중 사고(어린이집 하원 시 잘못된 탑승위치로 인한 사고)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인근 유치원 학부모가 (1차 책임: 중립 기어 상태로 경사로에 주차한) 차량이 뒤로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어린이집의 정문에 세워둔 통학차량 승하차 출입문 쪽으로 돌진, 하원차량 탑승을 위해 대기 중이던 만2세 아이가 치임. 이후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

(예방 수칙)

- ⇒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차량을 주·정차 할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도로방향이 아닌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옆 등 안전위해 요소가 없는 방향에서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차량을 주·정차 하여야 함

▶ 차량 후진 사고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등원 중 차량 오른쪽(출입문)이 어린이집 입구 반대편을 향하도록 차를 정차시키고 영유아를 하차시킨 상황에서 만2세 아이 홀로 차량 뒤쪽으로 돌아가다 후진하는 통학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짐

(예방 수칙)

- ⇒ 운전자는 차량 후진 시 영유아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영유아의 모습이 자동차에 가려질 수 있으므로 담임교사나 보호자에게 인계 되었는지 확인 후에 출발함
- ⇒ 교사는 영유아가 차량의 앞·뒤를 횡단해야 할 경우 안전하게 횡단하였는지 확인 후 차량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함





02

어린이집 소방 · 전기 · 가스 설비 및 관리



〈사고원인 분류〉

사고원인 ① 전기

사고원인 ② 가스

우수 대응 사례

▶ 울산 어린이집 화재...1분 만에 유아 27명 대피시킨 보육교사들에 소방관 감탄

침착한 대응으로 불이 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무사히 구한 보육교사들의 소식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3월 24일 SBS '8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울산의 한 어린이집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불길은 보육교사들과 아이들이 있던 교실 창문 너머까지 치솟았다. 어린이집은 금세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당황하지 않았다. 불길에 막힌 현관 대신 밖과 연결된 창문으로 아이들을 재빨리 대피시켰다. 보육교사들은 교실과 창문 밖에 서서 신속히 움직였으며 놀란 아이들을 달래는 침착함까지 보였다.

견지 못하는 영유아를 포함한 원생 27명을 무사히 대피시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2분이었다.

울산 동부소방서 측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에이 그걸 누가 못 해’ 하지만 실제로 화재가 나면 정말 당황스럽다”며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대피를 아주 잘 하셨다”고 말했다.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진화에도 힘을 보탰다. 이들은 소화기를 정확히 사용해 초기에 불길을 거의 잡았으며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대부분의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2015-03-25 일자 이데일리]

MEMO





소방시설 안전관리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 정의 - 소화기는 소화 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 보육실의 경우 화재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보육실마다 1개씩 비치하는 것을 권장

가) 소화기 보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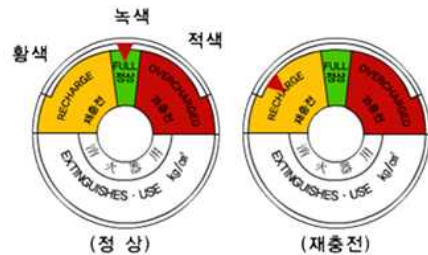
- 직사광선을 피하며, 습기가 적고 건조한 곳에 둠
- 눈에 잘 띄고 영유아 보행시 충돌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배치
- 소화기 표지판을 부착하여 위급상황 시 누구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함

나) 소화기 관리 방법

- 제조일자, 제조 회사명, 연락처 등이 표기되어있는지, 국가검정 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
- 외관상으로 녹이 슬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봄
- 약제가 굳지는 않았는지, 거꾸로 흔들어서 미세한 분말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지 확인함
- 지시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함
- 소화기를 소화기 점검표와 함께 비치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함
-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경우에는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다) 압력계 점검방법

- 소화기의 용기내부가 압축가스로 채워진 상태
- 점검은 소화기에 부착된 압력계의 지시침을 확인
- 정상상태의 압력은 지시침이 녹색 부분을, 이상과압상태는 적색부분을, 압력 미만상태는 흰색 또는 노란색 부분을 가리킴



〈그림 19〉 소화기 압력계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 소화약제 중량은 이산화탄소소화기, 하론소화기, 분말소화기 등 모두 소화기 몸체에 약제의 중량과 소화기의 총 중량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소화기의 중량을 측정하여 보면 확인할 수 있음

소화기 사용법

- ① 침착하게 손잡이를 잡고 불 쪽으로 접근
- ② 소화기 상단 레버를 잡고 안전핀을 제거
- ③ 바람을 등지고 불꽃을 향함
- ④ 불길 주위에서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방사

소화기 관리시 주의사항

- ◆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는 곳에 비치
- ◆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비치
- ◆ 안전핀이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고 구부러 놓거나 묶어 놓지 않기
- ◆ 압력계를 확인하여 압력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한달에 한번 정도 흔들어 약제가 굳는 것을 방지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6).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시 대처요령 포스터

2) 스프링클러 설비

- 정의 - 화재 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자동으로 열을 감지한 후 소화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설비
- 점검 및 관리
 - 설치된 배관 및 헤드에 변형, 손상, 탈락, 부식, 누설이 있는지 확인
 - 헤드 주위에 살수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 수원의 저수량은 확보되었는지 확인
 - 가압 송수장치(펌프) 주위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
 - 동결우려가 있는 곳에 보온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 유수검지장치 및 테스트 밸브의 압력은 적정한지 확인

• 어린이집 규모가 4층과 5층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함



**관련주제****간이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상수도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는 수계 소화설비

나. 경보설비**1)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2018.6.13.일부터 시행)

- 정의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알리는 감지기

가) 설치 조건

- (1) 연면적 1,000㎡(302.5평) 미만의 아파트 등 시설에 설치
- (2)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45.4평)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45.4평)마다 1개 이상 설치
- (3)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제외)에 설치

• 구조

〈그림 20〉 단독 경보형 감지기

• 설치 방법

- 베이스를 천장면에 동봉된 볼트로 고정하여 부착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본체에 배터리 삽입
- 시험버튼을 눌러 감지기의 작동여부 확인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 점검 방법

- 각 실 및 바닥 면적당 개수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시험 버튼을 눌러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여 배터리(건전지)의 작동상태 확인

2) 비상경보설비

- 정의 : 비상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시 발신기의 스위치를 눌러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 피난 또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설비이며 비상 경보설비에는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가 있음
- 설치 조건
 - 연면적 400㎡(121평) 이상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45.4 평) 이상인 시설은 설치
 -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 구조



〈그림 21〉 비상벨 설비

3) 자동화재탐지설비

- 정의 :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연기·불꽃을 감지하여 건물 내의 관계자에게 벨, 사이렌 등의 음향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
- 가) 구조
 - 감지기 : 열·연기·불꽃 등에 의해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 발신기 :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 수신기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 중계기 : 감지기, 발신기 등의 작동에 따라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
 - 음향장치 : 화재발생을 음향으로 알리는 장치(경보 벨이나 사이렌 등)





다. 피난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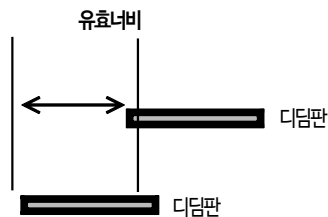
1) 비상출구(비상대피로)

- 비상출구는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해야 함
- 비상출구의 문은 대피 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 비상출구의 문은 잘 열려야 함
- 비상출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함
- 비상출구가 강화 통유리인 경우 비상구 규격에 맞아야 하며, 옆에 비상 망치를 구비
- 비상출구 개방에 방해되는 커튼, 거울, 교구장, 짐 등을 놓아서 비상출구를 막지 않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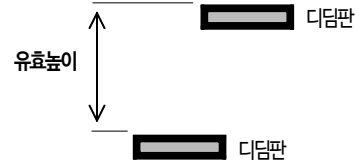
● 화재 시 비상출구에 적체물이 있을 경우 화재 연기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신속히 대피가 어려우며, 적체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2) 비상계단

- 정의 : 주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
- 설치
 - 비상계단은 철재 등 불연재로 설치
 - 내부에 설치된 비상계단은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을 설치
 -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cm 이상으로 함(단, 5층일 경우 90cm 이상으로 함)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cm 이상으로 함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비상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



<그림 22> 유효너비



<그림 23> 유효높이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3) 피난기구

- 피난기구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시킬 수 있는 기구
- 어린이집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기구 종류

구분	정의
미끄럼대	화재 또는 비상 시 안전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장치
구조대	(하강식 경사구조대) 포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오며 대피할 수 있는 것
승강기 피난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 피난기

4) 기타

가) 비상대피도 비치

- 비상대피도를 구성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각 보육실과 출입구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표시
 - 소화기, 옥내 소화전 등 소방 시설의 위치 표시
 - 구획된 실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표시

- ◎ 비상대피도는 보육실 뿐 아니라 눈에 잘 띄는 곳(현관, 복도 등)에 비치하여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화학습

〈 비상재해대비 설치기준 〉

- ◎ 신규인가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하는 시설에 적용
-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시, 동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반드시 고지함

건물구조	비상재해대비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사 2항)	
층별	1층	양방향 대피 - 비상구(폭 0.75m, 높이 1.75m 이상)를 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장변의 1/2이상 이격 설치
	4~5층	1.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층에 설치 2. 양방향 대피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보육실에서 보행거리가 30m 이내 설치) 3. 건물 천장, 바닥, 벽체등 내부마감재 → 불연재로 설치(벽체등에는 가연성 장식물 부착 불가) 4. 조리실은 방화구획(방화문설치) 5. 2급 이상 소방안전관리자 고용하여 어린이집 방화관리





라. 기타설비

1) 방염 대상 물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의 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항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한 것 포함)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페트
 -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압막 및 무대막
 - 침구류와 소파 및 의자는 방염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
-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 종이류(두께 2mm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간이칸막이
 -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그림 24〉 방염 라벨

- 방염은 물품이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타는 시간을 지연시켜(천천히 타) 대피 시간 확보를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심화학습

참고

어린이집 내 소방안전관련 TIP

항목	주요 미흡사항	개선방안
소화기 관리	- 소화기 위치, 소화기 표지, 규격 미달 - 자동확산소화기 미설치	- 소화기 설치장소 · 규격안내 -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점검기록표에 기록
유도등 관리	- 잘못된 설치, 예비전원(배터리) 방전, 유도등 점멸	- 피난구 유도등 위치 및 전용 배선 사용 설치 안내 - 전기차단 시 예비 전원으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예비 전원의 상태 확인 안내
문서관리	- 소방계획서, 비상대피훈련 계획·평가 게시	- 보육사업안내 비상대피훈련 표준안내 서식 참고하여 작성 권장
방염처리	- 블라인드, 벽지, 커튼 등의 방염 미처리	- 방염필증이 부착된 방염물품 사용 권장 - 관리 소홀로 인해 필증분실이 발생할 수 있어 방염성적서를 보관할 것을 안내
비상대피도 관리	- 규격 미달 및 설치 장소 등	- 대피도 규격(B4사이즈) 및 설치장소 안내
기타	- 양방향대피로, 적재물 등 - 비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자동 화재탐지설비 등 - 보일러 기름 용량 관리, 실외기 외부 노출 등 - 투척용 소화기 설치 위치 및 약제 변질	- 대피로에는 물건을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비상구는 잠가 두지 않아야 함을 안내 - 양방향대피의 설치조건에 대해 안내 - 탐지설비 수신기 위치 및 자동방법 안내 - 각 지역의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확인

※ 위 사항은 '17년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결과(소방분야) 어린이집 내 주요미흡사항을 정리한 내용임





전기 안전관리

사고원인 ① - 전기 원인 화재

전기판넬 전선 과부하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보육교사가 점심을 먹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보육실 전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이들을 대피시킴.

화재현장에는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화재는 진압되었고 소방대가 출동하여 잔불을 진압함.

현장조사결과 전기판넬 전선부근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예방 수칙)

- ⇨ 전기 배선 노후화 및 과부하로 전기합선이 되지 않도록 점검 등을 통하여 관리가 필요함
- ⇨ 월 정기점검과 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 ⇨ 특히, 겨울철 하나의 멀티탭에 여러개의 전열기구 사용시 화재사고의 주요원인이 됨

1) 정기적 점검 및 일반적 관리

가) 정기적(월1회 이상)검사

- 누전차단기 정상작동 점검 방법
 - 배선용 차단기를 모두 내려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기를 차단
 - 누전차단기의 우측 또는 하단에 있는 시험용 단추(TEST 버튼)를 누름
 - 이때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누전 차단기를 교체
- 분전반 내·외부 불필요한 물건 방치 확인
 - 분전반 내부 및 외부에 불필요한 물건이 적재 또는 방치되어 있을 경우 즉시 치움
- 전기배선(전선) 및 콘센트 외관 확인
 - 먼지가 쌓인 경우 진공 청소기 또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줌
 - 전기 전선이 노후 되었거나 손상(끊김, 심한 구부림, 가구 등에 눌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새 전선으로 교체
 - 전기 전선에 피복이 벗겨져 있을 경우 가급적 새 전선으로 교체 또는 절연 테이프로 감쌘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 노후 전기기구 교체
 - 노후 전기기구(20년)는 전기화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신제품으로 교체가 바람직함
 - 전기기구에 발열·외형변형·소음·냄새 발생 시 전문가에게 점검 후 조치
- 어린이집 주변 감전위험 확인
 - 어린이집 50m 이내에 고압선, 전선, 가로등 등 감전위험을 확인(알루미늄 풍선, 연날리기 금지)
 - 위험 발견 시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안전조치를 요청

나) 일반적 관리

- 인증 제품 사용
 - 전기용품 사용 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인증 받은 KS 또는 KC 제품을 사용
- 전선 정리
 - 영유아 손에 닿는 부분에 가급적 노출된 전선이 없도록 배관 또는 몰딩을 이용하여 정리
 - 바닥이나 문 틈을 통과하는 전선은 통행에 방해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정리
 - 전선 정리용 몰딩, 전선
- 콘센트
 - 플러그가 정상적으로 꽂혀 있는지 확인 : 발열 또는 검게 그을린 흔적이 없는지 확인
 -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 사용 :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예방
 - 안전 덮개 설치 : 영유아 손이 닿는 위치에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가 있을 경우, 콘센트안전커버 또는 안전 덮개 설치
 - 전열 및 전기 기구에 문어발식 사용금지 : 정격용량을 초과하면 과열되므로 하나의 멀티탭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꼽지 않음
 -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도록 함
 - 물기(습기)있는 장소 유의 : 물기 있는 장소(화장실, 주방 등)에는 덮개용 콘센트(방적형) 또는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 콘센트를 사용
 - 전기용품과 벽면 콘센트간의 거리 유지 : 전기용품과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의 이격거리가 좁을 경우 발열과열에 의한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이격 거리 유지





2) 전기 설비 관리

가) 콘센트

- 접지극(금속부분)이 있는 것을 사용
- 물기 있는 장소(화장실, 조리실 등)의 콘센트는 방적형(덮개 부착형)으로 사용



〈그림 25〉 접지극 콘센트

나) 연결 배선 정리

- 연결 배선은 정리하여 사용(배선 늘어짐, 과도한 사용 등)

다) 냉·난방기구

- 선풍기 덮개를 씌워 보관 시 꼭 전원을 분리하여 정리(선풍기 덮개를 씌워 놓고 전원을 켜 선풍기가 덮개 씌인 상태로 돌아갈 경우 화재 위험이 있기에 반드시 전원을 분리하여 정리)
- 전열기구와 인화성 물질(커튼, 블라인드 등)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사용

라) 분전반

- 영유아의 머리 높이에 분전반 손잡이가 위치하고 있어 돌출될 경우 사고 우려가 있으니 임의 조작에 의해 돌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장치를 함
- 아이들이 쉽게 눌러 분전반 손잡이가 튀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

MEMO





활용 tip

계절별 전기안전요령

봄 · 여름철 전기안전요령	가을 · 겨울철 전기안전요령
- 눈 녹으면 전기설비부터 확인하세요 건물 안팎이나 전선관으로 물기가 스며들지 않았는지, 언 땅이 내려앉은 자리에 배전설비 손상은 없는지 꼭 살펴보세요 - 봄맞이 대청소, 콘센트에 쌓인 먼지부터 먼지가 쌓이면 화재 위험도 쌓입니다. 멀티 콘센트에 쌓인 먼지는 깨끗이 털어주고, 손상된 전선이 없는지도 확인해주세요 - 침수된 전자제품은 시한폭탄 물이 잠기면 빨리 전기 차단기부터 내리세요. 침수된 가전제품은 반드시 건조 후에 작동여부를 살펴주세요	-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접속되었나요? 느슨하게 접속되어 있으면 자칫 먼지 등 인화성 물질이 불꽃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플러그 연결시 한 번 더 꼭 눌러주세요 - 가습기는 콘센트에서 멀리멀리 콘센트나 전기기기는 습도가 올라가면 누전이나 합선사고가 생겨요. 될수록 가습기와 멀리두고 사용하세요 - 난방기기는 반드시 승인받은 제품을 KS 마크가 있는 제품은 정부가 안전성을 인정한 제품입니다. 난방용품 구매 시 꼭 승인마크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한국전기안전공사(2018). 전기안전 미리미리 리플릿

긴급출동 고충처리(전기안전 119):24시간 전기고장신고 접수 즉시 대기자가 출동하여 무료 응급조치
고장신고는 전기안전 콜센터 1588-7500, 정부 통합콜센터 110(긴급신고전화)
※ 전국의 13개 지역본부와 47개 지사에서 운영



심화학습

참고

어린이집 내 전기안전관련 TIP

항목	주요 미흡사항	개선방안
누전차단기 관리	- 과용량 차단기 사용, 누전발생	- 누전차단기 교체 요망 - 어린이집 개보수 시 누전 부분은 보수할 것 -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동작 상태 점검
접지시공	- 접지극 손상, 접지선 미연결	- 인체에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접지극을 연결하여 시공하고 접지 기능이 있는 콘센트 사용
배선관리	- 배선 노후화로 인한 누전, 비닐 코드 선 사용	- 건물 노후화, 임의적 리모델링 등으로 인한 배선 설치시 전문시공 업체에 의뢰하여 시공
방적형 콘센트	- 화장실 등의 방적형 콘센트 미사용	- 습기가 많고, 물이 닿을 수 있는 장소에 콘센트는 방적형 콘센트로 교체요청
환풍기 관리	- 환풍기 먼지 쌓임, 설치 장소 불량	- 환풍기 정기 청소 및 24시간 가동 시 과열로 인한 화재가 능성이 있어 타이머 콘센트 지원

※ 위 사항은 '17년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결과(전기분야) 어린이집 내 주요미흡사항을 정리한 내용임





가스 안전관리



사고원인 ② - 가스 원인 화재

가스 보일러 과열 사고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보육교사가 출근하여 보일러를 가동 시킨 후 교실에서 수업을 준비하던 중,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여 화재 사실을 파악하였음. 이에 보육교사들은 등원한 원아들을 대피시킨 후 소방서에 신고하였으며 구비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하였고 화재 진화 후 관계 당국이 출동하여 사고사실을 확인함
 확인결과 어린이집은 보일러컨트롤 박스에서 오작동으로 경고등이 뜰 때마다, 재가동 버튼을 누르며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얼마 전 보일러 수리기사로부터 교환기 교체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나 정비하지 않음
 보일러는 열교환기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작동하여 결국 과열로 인하여 화재 발생

(예방 수칙)

- ⇒ 가스보일러 권장사용기간 10년 준수
- ⇒ 1년에 1회 이상 가스공급자 또는 보일러 제조사의 안전점검 실시
- ⇒ 오작동 등 이상상황 발생시 즉시 개선
- ⇒ 연소상태와 설치상태 수시 자율점검

1) 정기적(월1회 이상) 점검

가) 배관(호스) 가스누출점검 및 상태 점검

- 배관이나 호스, 퓨즈콕 등의 연결 부위에 비눗물을 묻힌 스펀지(수세미, 행주 등)를 이용하여 거품이 발생하는지 확인
 - 정상 :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 누출 : 조금이라도 기포가 생길 경우
- 배관에 녹이 슬거나 호스가 갈라진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새것으로 교체
- ※ 특히 외부의 입상밸브 부식 확인

나) 중간밸브 적정 설치 상태 확인

-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





다) 가스보일러 및 배기통 상태확인

- 가스보일러의 연소 상태(과열, 소음, 진동 등 또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일러를 끄고 중간밸브를 잠금
- 가스보일러의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아래로 쳐져 있는 곳이 없는지, 꺾여 있거나 배기통 위 천장에 검정색 그을음이 없는지 등 전반적 상태를 확인
- 배기통 설치 부분의 막음 처리 시 내열 실리콘을 사용
- ※ 외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이 주차장과 가깝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안전확보를 위하여 주차장에 주차보호대 설치와 가스배관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관 설치 필요

라) 가스 용기의 보관·설치 적정 여부 확인

- 가스 용기는 직사광선이 쏘이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옥외 용기 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 LPG 용기는 체인으로 고정되어 있고, 평평한 땅 위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 용기 보관실 안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물건이나 인화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치움

마)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막음 조치 여부 확인

- 사용하지 않는 가스난로나 가스레인을 배관에서 철거 할 때, 배관 끝에 플러그로 막음 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

바) 『LPG가스안전공급계약』 체결 여부 확인

- LPG가스를 사용할 경우, 가스공급자(LPG판매업소)와 LPG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확인 스티커를 부착

사) 가스누출경보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경보기의 검지부는 무거운 가스(LPG)의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검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30cm 이하, 가벼운 가스(LNG)는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cm이하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제어부의 열림 및 닫힘 동작에 따른 차단장치의 원활한 작동상태의 유지여부를 확인

아) 가스용품 등 권장사용기간 확인

- LPG 연화비닐호스 7년, 트윈호스 및 측도관(고압고무호스) 5년, LPG 압력조정기 6년, 퓨즈콕크 5년, 이동식부탄연소기 5년, 가스보일러 10년





2) 일반적 관리

가) 사용 전·중·후

- 사용 전
 - 가스 기구(가스레인지, 보일러 등) 주위에 가연성 물질(빨래, 스프레이 통 등)이 있는지 살피며, 있을 경우에는 즉시 치우도록 함
 - 냄새를 맡아서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
 -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킴(가스 연소 시 많은 공기가 필요)
- 사용 중
 - 가스를 켤 때 파란 불꽃의 불이 붙었는지 꼭 확인
 -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자주 살펴봄
 - 국물이 넘치거나 바람으로 인해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고, 가능한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함

- ⦿ 불이 꺼졌을 경우 연소기의 콕크와 중간밸브를 잠가야합니다.
- ⦿ 불이 꺼질 것을 대비하여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사용 후
 - 연소기 콕크와 중간밸브를 잠그는 습관을 갖도록 함
 - 방학, 휴원 등으로 장기간 사용 안할 시에는 용기 밸브도 잠그고, 도시 가스의 경우는 메인 밸브를 잠금

나) 가스 누출 시

- 콕크, 중간밸브, 용기밸브(LP가스), 메인밸브(도시가스) 등 모든 밸브를 잠금
-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및 전문 업체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다시 사용



어린이집 원장은 사회재난(화재, 감염병 발생 등), 자연재난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의 직권으로 휴원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 전기, 난방, 연기 감지기, 소화기 등의 작동 여부 정기 점검 실시와 함께 전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재난 시 행동 및 대피 요령 등의 훈련을 정기적 실시한다.

가. 재난 유형별 안전 대비 및 대응요령

1) 사회 재난(화재)

가) 화재 발생시

- 주변에 알리기 : 화재를 감지하고 불이야! 하고 외침
- 119에 신고하기

화재 발생시 119 신고내용

- 화재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불의 발화지점과 현재 상태)
- 화재가 발생한 위치(도로명 주소/ 가능하면 어린이집 이름과 주소)
- 현재 대피하고 있는 장소와 위치
-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 까지 전화를 끊지 않기

- 초기진화 : 소화기·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초기 진압
- 화재 대피하기 : 초기진화가 어려울 경우 신속히 대피
 - 비상문에서 제일 가까운 영유아가 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하여 신속히 대피
 - 평상시 훈련 대피장소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며 남아 있는 영유아가 있는지 확인
 -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구 계단을 이용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사고사례

화재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2016년 7월. 어린이집 인근 철물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어린이집에 옮겨 붙어 피해 발생

(예방수칙)

- ⇒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1회 실시
- ⇒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은 대피로를 통해 실외로 나가 최종집결지(영유아 숫자 파악) 까지 소방대피 훈련 매월 실시
- 총 대피시간(초) 측정, 훈련사진 등 기록
- 훈련계획 · 결과평가 : 다음훈련에 피드백

활용 tip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 교육자료

01

비상벨을 눌러 화재가났음을 알려요.

02

119에 신고해요.

03

비상구, 유도등을 따라 대피해요.

04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대피해요.

05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요.

119에 이렇게 신고해요.

- ☑ 신고자 이름을 말해요.
- ☑ 화재가 난 곳의 주소나 큰 건물의 이름을 말해요.
- ☑ 신고자 전화번호를 말해요.
- ☑ 화재의 원인이나 상황을 간단하게 말해요.
- ☑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아요.



★ 활용자료: (영상) 세피와 함께하는 화재 대피 요령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www.sepi.or.kr)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7). 세피의 안전수첩





2)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 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태풍, 호우 ☆



사고사례

집중호우 ①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2017년 7월, 경기지역 호우주의보 발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였더니 1층 전체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음. 양수기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어린이집 1층 전체에 수침피해를 입음

(예방수칙)

- ⇒ 어린이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
- ⇒ 침수,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장소와 비상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둠
- ⇒ 파손된 상하수도, 도로가 있으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
- ⇒ 침수된 경우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한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손대지 말고 전문업체에 연락



사고사례

집중호우 ②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2017년 9월, 부산지역 호우경보 발령(일일강수량 264.1mm). 원장이 출근하여 어린이집 건물 1층 내부가 침수된 것을 목격. 양수기를 이용하여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어린이집 1층 전체에 수침피해를 입음





사고사례

강 풍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2017년 9월. 제주 일대 호우 경보 및 강풍주의보 발령. 강풍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지붕이 파손되는 피해 발생

• 정의

- 태풍 : 북서태평양에서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17% 이상으로 발달하는 열대저기압
- 집중호우 : 많은 비가 오는 것을 뜻하며, 특히 단시간에 많은 비가 올 때를 말함.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강우보다 많은 비가 올 때

가) 대비요령

(1) 발생 전

- 영유아가 등·하원 시 우천대비 용품(우비, 우산, 장화 등)을 착용하도록 사전에 가정애 안내
- 우산의 경우 앞의 시야를 잘 볼 수 있는 우산으로 준비 ㉠ 투명우산
- 바람에 날아가거나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어린이집 간판, 우편함, 화분 등은 고정
- 어린이집 옥상이나 마당에 놓여 있는 이동식 놀이기구(놀이집, 삼각대, 흔들말 등)은 실내로 옮김
- 모든 출입문, 창문은 굳게 닫고 잠금
- 유리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여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하고, 커튼, 블라인드를 침
- 가스 사용 후 밸브를 반드시 잠금
- LPG 용기는 밸브를 잠그고, 도시가스는 계량기 전단 밸브를 잠금
- 사용하지 않는 전기는 콘센트에서 뽑음
- 침수 지역의 경우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하여 어린이집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막음
- 창문 틈에 신문지를 채워 넣음
- 부득이하게 보육교직원이 외출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바깥출입을 하지 않음
- 하천 근처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2) 발생 중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은 바깥출입을 하지 않음
- 창문 가까이 접근을 금지
- 유리창이 깨졌을 경우 영유아의 접근을 막고, 깨진 유리조각을 치웁
- 복구가 어려운 경우 태풍 · 집중호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림
- 장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및 휴원 조치

(3) 발생 후

- 붕괴, 침수된 경우 보수 및 복구 전에 사진을 찍어둠
- 가스, 수도, 전기 등 작동 여부 확인
-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않음
- 침수된 어린이집은 전기, 가스, 수도시설에 손을 대지 말고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음

MEMO





대설 · 한파



유형 1-7 미끄러짐

놀이터 바닥이 얼었어요



2월 어느 날, 오랜만에 날씨가 조금 풀린 듯하여 유아반 아이들이 놀이터로 나왔습니다. 겨울 동안 실외 활동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신이 나고 들떠 있었습니다. 현우도 자신이 가져온 공을 가지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멀리 찬 공이 놀이터의 그늘진 곳 구석으로 굴러가 버렸습니다. 현우는 공을 잡으러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공이 굴러간 곳은 아직 얼음이 녹지 않은 **빙판** 바닥이었고 현우는 그곳을 밟아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현우는 넘어지면서 울타리 모퉁이에 귀를 부딪쳐 찢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예방수칙) 겨울철 영유아들의 실외놀이는 안전점검을 더욱 세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쌓여 있으면 물기가 흐르면서 노면에 살얼음이 생겨 미끄럽기 때문에 가급적 주변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그리고 눈 길을 걸을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정의

- **대설** : 일정 시간 동안 많은 눈이 내리는 현상
- **한파** : 뚜렷한 저온의 한랭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아닥쳐 급격한 기온의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



가) 대설 대비 요령

(1) 대설 전

- 현관입구에 미끄럼 방지대를 깔아 놓고, 어린이집 입구에 물기를 수시로 제거
- 창문이나 방문의 틈새를 막아 실내 온기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함
- 보일러 배관,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천 등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보온
- 눈 녹은 물이 어린이집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지 점검
- 설해 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를 차량에 구비

(2) 대설 중

- 계획된 바깥출입(야외활동 등)을 취소하고 영유아는 실내에서 가벼운 활동
- 과도한 전열기 사용은 금지
- 차량운행은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운행해야 할 경우 설해 대비용 안전장구 장착
- 장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및 휴원조치

(3) 대설 후

- 마른 걸레로 어린이집 입구에 물기를 수시로 제거
- 어린이집 출입문, 골목길, 옥상 위, 차량 주변 등에 쌓여 있는 눈을 치움
- 눈이 많이 쌓인 경사면 주변과 위험지역(미확인 장소, 맨홀 등)에 위험표지를 하고 접근 금지
- 미끄러운 빙판길이 있을 경우 모래를 뿌리고, 미끄럼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근처에 접근하지 않음
- 수도관,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실시

나) 한파 대비를 위한 건강 수칙

- 체온 및 실내 온도를 적정상태로 유지
 - 적정 실내온도 (18~20℃), 적정실내 습도(40~50%)를 유지하고, 2~3차례 환기
 - 따뜻한 물 등 수분 섭취 및 고른 영양분을 갖춘 식사로 체온 유지
- 따뜻하게 옷 입기
 - 영유아가 등·하원 시 체온유지 용품(모자, 마스크, 장갑, 부츠 등)을 착용하도록 사전에 가정에 안내
 -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팔 상의를 착용하여 피부가 직접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 옷은 조금 크고 가벼운 옷으로 여러벌 겹쳐 입어 더울 시 하나씩 벗도록 하며 물에 젖게 되면 즉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힘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 바깥출입 자제하기

- 계획된 바깥출입을 취소하고 실내에서 가벼운 활동을 하도록 함
- 걸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천천히 잔걸음으로 걷고, 계단 이용 시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

폭염



- 정의 : 일반적으로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

가) 폭염 시 주의사항

(1)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하기

- 얇은 옷을 헐렁하게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선크림을 발라 자외선을 차단
- 실외 활동, 소풍 등이 계획되어 있다면, 취소하고 실내에서 대체활동(과한 운동은 자제)
- 보육실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햇볕이 바로 들어오는 창문은 커튼이나 천으로 직사광선을 차단
- 통학차량이 있을 경우 그늘진 곳에 주차
-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찬물로 샤워 하지 않음

(2) 위생적인 생활

- 물은 끓이고, 음식은 익혀 먹고 날음식은 삼가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버림
- 조리 기구는 청결히 사용
- 찬 음식을 자주 먹지 않음
- 평소 손을 자주 씻는 등 위생 습관을 철저

(3) 냉방기기를 바르게 사용

- 냉방기기를 사용할 경우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
- 실내 온도는 26~28℃가 적당
-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환기를 자주 시킴
- 에어컨, 선풍기는 사용 후 끄거나 일정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예약
-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돌려 환기 유도
- 냉방이 안 되는 실내에는 햇볕을 차단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





(4) 건강상태 살피기

- 더위와 관련된 질병이 있는지 건강상태 살피기
- 활동 중간에 휴식시간을 갖거나 피곤해 하는 영유아는 쉬도록 함
- 수분을 규칙적으로 섭취
-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응급조치 후 병원
- 장기적으로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및 휴원 조치

▶ 황사 · 미세먼지 ★

가) 황사

- 정의 : 중국, 몽골 등 사막과 황토지대의 작은 모래(마그네슘, 알루미늄, 철 등 포함)들이 하늘에 떠다니다가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 떨어지는 현상

구분	내용
황사 특보 (경보)	-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₁₀) 농도가 800μg/m³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실외 활동 금지 등
황사 재난상태 선포기준	- 미세먼지(PM₁₀) 1시간 평균농도가 2,400μg/m³ 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시 - 미세먼지(PM₁₀) 1시간 평균농도가 1,600μg/m³ 이상시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시

나) 미세먼지

-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관련 어린이집 및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어린이집별로 미세먼지 전파담당자(원장 등) 지정 및 관련 모바일 앱 설치, 문자서비스 신청을 통한 미세먼지 예보 상황 확인(09시, 12시, 17시(익일예보))
 -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고농도 발생 시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제(실내활동으로 대체), 실내공기질 관리(빗자루질 청소 대신 물걸레질 청소, 공기청정기 가동 등)
 - * 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정의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μ m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크기에 따라 PM₁₀(1000분의 10mm이하)과 PM_{2.5}(1000분의 2.5mm이하)로 구분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 μm - 미터법에 의한 길이의 단위. 1마이크로미터는 1미터의 100만분의 1임
 μg - 1그램의 100만분의 1의 질량. 1000분의 1밀리그램과 같은 이유로 또
 감마(γ)라고도 불림

-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와 함께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1군)로 분류됨

(1) 대응 단계별 요건(어린이집)

구분 (예보등급)		요건
1단계	고농도 예보	- 익일 예보 “나쁨” 이상(PM_{10} $81\mu\text{g}/\text{m}^3$ 이상, $\text{PM}_{2.5}$ $51\mu\text{g}/\text{m}^3$ 이상)
2단계	고농도 발생	-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PM_{10} $81\mu\text{g}/\text{m}^3$ 이상, $\text{PM}_{2.5}$ $51\mu\text{g}/\text{m}^3$ 이상 1시간 이상 지속)
3단계	주의보	- 해당 권역의 PM_{10} $150\mu\text{g}/\text{m}^3$ 이상 또는 $\text{PM}_{2.5}$ $9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4단계	경보	- 해당 권역의 PM_{10} $300\mu\text{g}/\text{m}^3$ 이상 또는 $\text{PM}_{2.5}$ $18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지속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 시·도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보 PM_{10} : $100\mu\text{g}/\text{m}^3$ 미만, $\text{PM}_{2.5}$: $50\mu\text{g}/\text{m}^3$ 이상 *경보 PM_{10} : $150\mu\text{g}/\text{m}^3$ 이상, $\text{PM}_{2.5}$: $90\mu\text{g}/\text{m}^3$ 이상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 보고

(2) 단계별 대응 요령(어린이집)

- ‘고농도 예보’ 단계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실내활동으로 대체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고농도 발생’ 단계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깨끗이 씻기 등
 - 실외활동 자제(실내활동으로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물걸레질 청소 등)





- ‘주의보’ 단계
 -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등 실시
 -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 ‘경보’ 단계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단계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감가·안질 등 환자는 휴식 또는 조기귀가
- ‘조치결과 등 보고’ 단계
 - 시도 환경부서는 어린이집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환경부에 취합·보고(3,9월)
 - 어린이집은 시·군·구 담당부서에 보고(경보발령 후 7일 이내)
 - 시도 환경부서는 어린이집의 경보 조치결과를 환경부에 보고(3, 9월)

(3) 황사·미세먼지 대처요령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하기
-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를 착용하기
 -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 하기
-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채소 섭취하기
 - 노폐물을 배출효과가 있는 물 충분히 마시기
 -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채소 충분히 먹기
-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낮을 때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 시 자연환기 자제)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 조리 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통학차량(주로 경유)의 친환경 LPG 차량 전환 검토(정부·지자체 등 보조금 사업 적극 활용) 및 통학차량의 등·하원 대기 시 공회전 줄이기 참여

MEMO





심화학습

미세먼지 농도 및 예·경보상황 확인방법

미세먼지 정보, 어디서 확인하나요?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출처 : 보건복지부(2017).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활용 tip

출처 : 환경부(2017).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보건복지부환경부(2017)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관련주제 ①

실내공기질 안전관리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가) 원인

- 실내오염물질의 발생원은 건축자재 및 마감재, 가스레인지, 가구나 교육용품 등으로 다양하며, 시설 내 실내공기질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방안은 오염물질의 발생원 제어, 환기를 통한 개선, 정화에 의한 오염물질 제거 등이 있음

나) 관리 대상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 ※ 근거: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0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 ▶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 관련부서에 문의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10.5월 배포)에 따라 실내공기질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함

다) 어린이집에서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발생원

- 벽지 :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 건축자재, 가구류, 교육용품 :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 보육활동 시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 단열재 : 석면
- 카펫, 쿠션재, 담요 : 진드기 등 미생물성 물질
- 오염된 외부대기 :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 욕실 등 습한 장소 : 곰팡이, 세균, 암모니아 가스
- 가스레인지, 난로 :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 실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생활 수칙

(1) 철저한 환기

- 창문과 환기시설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공기를 많이 공급
- 환기 횟수는 적어도 오전·오후 하루 두 번 이상 30분씩 실시하고, 시간대는 오전 10시 이후와 일조·채광량이 많은 낮 시간대 이용
 - ※ 영유아 등원 전, 식사 및 간식 시간, 낮잠 시간 후 등에 자주 환기를 시켜 보육실 내에 항상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함
- 환기 시 황사, 미세먼지의 날씨 정보를 활용하여 융통적으로 시간과 횟수를 정하는 것이 필요
-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시 많이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 제거를 위해 시공완료 후 베이킹 아웃(Bake out)을 실시
- 베이킹 아웃(Bake out): 실내공기의 온도를 높여주어 건축자재 등에서 방출되는 유해오염물질의 방출량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를 하여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2) 청소 및 소독

- 월 1회 이상 천장,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벽면 등에 곰팡이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제거·소독
- 진드기, 곰팡이 등의 서식을 막기 위해 습도를 60% 이하로 유지하고, 진드기의 온상인 쿠션재, 담요 등은 뜨거운 물로 정기적으로 세탁하여 햇볕에 말림
- 높은 습도는 유기화학물이 다른 유기물과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조건이 될 수 있으므로 물청소를 한 후에는 반드시 마른 걸레로 닦음
- 공기청정기, 에어컨, 가습기 등은 가동 후 필터교체 및 내부 청소 자주 실시(2주에 1회)
- 적절한 실내온도 및 습도 유지

(3) 친환경 제품사용

- 환경마크, HB마크 등의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않음
 -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2006~2014, 264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실내에서 사용하는 가구류와 교육용품은 환경마크 인증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환경마크가 없는 경우 가급적 KS 규격의 유해화학물질 규제 준수 품목을 선택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4) 자연정화

-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공기청정기나 공기제균기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가능한 숲 같은 천연재료나 벤자민, 고무나무 등 유해물질 흡착효과가 있는 식물을 키워 자연정화

관련주제 ②

▶ 석면 안전관리 ☆

-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석면안전관리법」(2011.4.28. 제정, 2012.4.29. 시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기록·보존(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 다만, 「석면안전관리법」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함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 2009.1.1.이전 설치된 건축물에 연면적 430㎡ 미만 어린이집 신규인가 시 석면조사 실시 권장
-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 정의 : “불멸의 물질”이란 의미를 가진 섬유형태의 광물
 석면입자는 사람 머리카락의 1/5,000로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석면가루를 흡입했을 경우 폐까지 쉽게 도달해서 폐에 상처를 내고, 시간이 흐르면 악성종괴 등의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
- 석면은 노출에 대한 안전한게치가 없어 노출되지 않는 것이 최선
- 석면이 흡입될 경우 약 10~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종괴, 폐암, 석면폐증 같은 석면질환에 걸릴 수 있음





가) 석면관리의 필요성

(1) 영유아에게 더 위험한 석면

- 만지는 습성, 기는 습성 등에 따라 오염물질, 바닥재, 실내용품 등에 흡착된 석면에 노출될 기회가 많음
- 체중당 호흡량이 성인보다 많아(3~4배) 호흡에 의해 침투되는 특성을 가진 석면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음
- 호기심이 많은 특성상 석면건축자재가 손상되어 있을 경우 추가 손상 가능성이 높음

(2) 어린이집이라서 더 위험한 석면

-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높은 손상 가능성 : 잦은 구조물(모빌 등) 변경 및 설치 등으로 인해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이 높음
- 긴 실내 거주시간 : 외부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며, 놀이시간 등 활발한 실내활동이 많아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가능성 및 석면입자의 비산가능성이 높음

(3) 유지·관리 시

- HEPA필터가 장착된 청소기 또는 물걸레 등으로 제거
- 도배 및 페인트칠 등으로 비산방지
- 손상부위 고착화
-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

(4) 해체·철거 시

- 석면해체·철거전문 업체를 통해 작업 실시
- 석면해체·철거 작업지침 준수
- 석면함유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

● 석면조사, 석면조사기관, 석면건축물관리 등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심화학습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환경안심 인증제도〉

- ◎ 환경보건법(제23조 등)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확대 적용됨
-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환경보건법」시행령 별표2)의 주요내용
 - ① 시설물 관리 ② 도로·마감재료 ③ 목재 ④ 모래(토양) ⑤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 ◎ 환경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고자 환경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홈페이지 www.eco-playground.kr / www.chemistory.go.kr 참고

MEMO





지진



우수 대응 사례

▶ 평소 연습한대로 침착히 지진 대피한 어린이집 꼬마들

부산의 한 어린이집이 15일 오후 낮잠을 자던 중 강한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침착하게 대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머리보호용 헬멧**을 단체로 산 뒤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지진 대피훈련**을 해온 곳으로, 지진 교육의 모범을 보여줬다. 부산 좌천파출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고 5분여가 지났을 무렵 '파란색 헬멧'을 쓴 어린이집 원생 20여 명과 선생님 6명이 좌천파출소로 우르르 몰려왔다. 파출소 인근의 한 **은행 직장어린이 집에 다니는 아이들**이었다. 포항지진의 여파로 어린이집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자 '**평소에 연습한 대로**' 선생님 인솔하에 파출소로 피신을 온 것이었다

이날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어린이집 원생 20여 명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회의 중에 심한 흔들림을 느낀 선생님들은 재빨리 아이들을 깨우고, 헬멧을 씌워 **비상 통로**를 통해 어린이집 옆 공터로 대피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2~3분여 만에 벌어졌다.

선생님들은 **여진이 느껴지지 않자 최근 신축한** 인근 좌천 파출소로 아이들을 인솔했다.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내진 설계** 등이 잘 되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겪은 이후 지진에 대비할 목적으로 아이들이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자전거 헬멧**을 단체로 샀다. 시중에 파는 헬멧이 어린 원생들의 머리 크기에 맞지 않자 어린이집 측은 직접 제조업체를 찾아가 **어린이용 헬멧을 맞춤 제작**하기까지 했다. 이 어린이집이 지진 대피훈련 등 **정기적으로 재난 안전 대응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지진으로 평소 안전 교육의 중요성을 잘 보여줬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2017-11-16 일자 부산일보]

- 정의 : 지면이 흔들리는 자연현상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지진 발생시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가) 지진 대비 사전 환경 정비

(1) 어린이집 시설 정비 점검

- 지진 시 넘어지기 쉬운 가구, 가전, 비품 등이 있는지 검사
- 지진 후, 화재 발생을 대비해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방법 습득
- 방화 책임자를 명시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하고 일상 시 점검과 정비
- 보육교사는 일상의 보육환경을 정비하고, 영유아의 행동 특성을 제대로 파악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대상 피난 훈련 계획 및 실시

- 대규모 지진을 가정한 긴급 피난 훈련을 계획하여 실시
- 피난 훈련 통로, 경로를 확인
- 각 보육교직원의 역할 분담, 업무분장에 따라 훈련 실시

(3)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

-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해 피난훈련에 대해 안내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대응방법 및 대피시설을 주지
- 보호자로부터 휴대폰 번호를 주기적으로 확인, 갱신

나) 어린이집 지진 발생 시 대응 순서

<1단계> 지진발생 감지 및 알림	▶ 지진 첫 감지자는 큰 소리로 지진 발생을 알리고, 지휘명령총괄(원장)에게 연락
<2단계> 안전확보	▶ 대피자(영유아, 보육교직원 등) 은 현재 위치에 가깝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보호 ★ 지진대피 3대 원칙 ★  엎드려 가려 붙잡아 ▶ 차단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은 가스, 전기를 신속히 차단(2차 피해방지) ▶ 출입구 확보를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은 대피 가능한 출입구(문, 창문)를 개방
<3단계> 피난장소로 이동	 ▶ 각 반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비상연락처 감지 ▶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비상연락처 지참 ▶ 구급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은 비상용품(비상기기, 비상약품, 물 등)을 신속히 챙김 ▶ 지진이 멈추면 피난 경로의 안전을 확보하여 피난 장소로 이동(큰 공원, 광장 등)



〈4단계〉 부상자 확인 및 응급처치		▶ 보육교사는 영유아 부상자 확인 ▶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부상자 확인 ▶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응급처치를 하고 의료기관 등에 연락
〈5단계〉 재해정보 확인/ 보호자연락 후 인계		▶ 재해정보 담당 보육교사는 비상기기(라디오, 핸드폰 등)로 재난방송을 통해 지진상황을 확인 ▶ 보육교사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안전하게 인계 ▶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피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

출처: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6). 어린이집 지진 관리대응 매뉴얼-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5) 재구성

다) 지진 발생 시 대응요령

(1) 지진 발생 중

(가) 실내

• 보육실

-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는 현재 장소에서 가장 가깝고 안전한 위치로 신속히 이동하여 몸을 보호함
- 견고한 책상, 구조물이 있을 경우 아래 또는 옆에 앉아서 몸을 웅크리고 다리를 꼭 잡음
- 튼튼한 책상이 없을 경우 손과 팔(또는 가방, 베개)로 얼굴과 머리를 가리고 신속히 외부로 통하는 문틀, 출입구 벽면에 가서 앉음
- 움직여도 괜찮다면 현관·창문을 열어 출입구를 확보
- 보관하고 있던 비상용품을 챙김

• 화장실

- 화장실 타일, 거울과 먼 방향의 벽면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보호

• 조리실

- 가스레인지에서 떨어지고 흔들림이 안정되면 사용 중인 전열기구, 가스레인지 등을 신속하게 끄
-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및 수도 밸브를 잠금

(나) 실외

• 머리를 보호함

- 건물 파편,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낙하물에 주의하여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감쌘





제2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관리

-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함
 -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건 옆이나 좁은 길에 가지 않음
- 넓은 장소로 대피함
 - 최대한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져 운동장, 공터, 공원으로 대피
- 계단을 이용함
 - 엘리베이터가 있을 경우 작동이 되더라도 타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

(2) 지진 발생 후

- TV, 라디오로 지진 상황을 확인
- 여진에 대비
 - 파괴된 건물 안에 있는 경우 트인 공간으로 이동
- 부상자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실시
 - 즉시 구조를 요청하고, 부상자가 위치한 곳이 위험하지 않다면 부상자를 그 자리에 두고, 옮겨야 할 경우 기도확보, 머리와 부상부위를 고정한 후 안전한 곳으로 옮김
 - 의식을 잃은 부상자에게는 물을 주지 않음
- 모든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는 마음의 안정을 취함
 - 어린이집 밖으로 급하게 뛰어나갈 경우 유리창, 간판 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나가지 않음
 - 정전이 되고 화재경보기가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더라도 놀라지 않음
- 정전이 되었다면 손전등을 사용함. 불(양초, 성냥, 라이터)은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음
- 전기, 가스, 수도를 확인
 - 가스냄새가 나거나 가스 새는 소리가 나면 도시가스 계량기 전단(LPG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놓고 대피하고, 관계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가스판매점(LPG), 지역도시가스회사)에 연락하여 신속한 조치를 받음
 - 전기에 문제가 있다면 전기차단기를 내림
 - 수도관에 피해가 있을 경우 밸브를 잠금
- ※ 장기적으로 발생하거나 시설 손실로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및 휴원 조치
-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에 피해상황을 연락





활용 tip

<지진 발생 시 교육자료>

1. 지진 발생 시 안전한 대피 방법을 알아보아요.



지진 발생 초기 대피방법
방석 등으로 머리를 가리고 테이블 아래 숨어요.



지진이 멈추고 여진 가능시 대피 방법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여 건물을 빠져나가고 운동장, 공원, 놀이공원으로 대피해요.

★ 활용자료: (영상) 세피와 함께하는 지진 대피 요령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 (www.csia.or.kr)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7). 세피의 안전수첩

MEMO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통해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차 사고 후 적절한 대응 조치는 추가적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회복을 도와줍니다.

이 장에서는 보육교직원이 알아야 하는 응급처치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응급상황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례를 통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1. 안전사고 대처법

02. 사고유형으로 알아보는 응급처치





01

안전사고 대처법



가.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 1) 당황하지 않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교사 자신이 당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교사가 당황하게 되면 사고를 당한 영유아나 나머지 영유아들이 함께 당황해 하거나 더 불안해 할 수 있음
 - 사고를 파악할 때에는 누가 어떻게 다쳤는지, 그 현장에 남아 있는 위험이나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판단
- 2) 다친 영유아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처법 실시
- 3) 119나 응급실에 구조를 요청
- 4) 부모에게 연락
- 5) 남은 영유아를 안심시킴
- 6) 사고보고서를 작성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 어린이집의 장이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나.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교사의 자세

- 1) 모든 교사는 기도확보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법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응급처치는 가까운 전문기관에서 손쉽게 배울 수 있음
- 2) 교사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필요한 물품이 갖추어진 구급상자를 준비함
 - 구급상자에는 응급전화번호, 약품의 사용방법 등을 부착함
- 3) 영유아의 비상연락망, 응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와 응급절차 과정 목록 등을 전화기 옆에 비치
- 4) 야외활동을 나갈 때 교사는 휴대용 구급상자와 비상연락망을 준비함
- 5)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대한 부모동의서를 받도록 함



다. 안전사고 발생 시 부모와의 소통 요령

1) 응급처치 후 즉시 부모에게 연락하여 사고에 대해 상세히 설명

- 장소 및 위치, 상황(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영유아의 상태, 응급조치, 병원 방문 등을 상세히 설명

예) “어머님, 00의 네 번째 손가락 두 번째 마디부분에 0.5cm정도 베이는 상처가 생겨서 바로 지혈을 하고 소독을 한 다음에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친구랑 함께 놀이를 하던 중에 친구가 00의 가위를 사용하자 00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되가져오는 중에 잘못 건네받아 상처가 생겼어요. 처음에 피를 보자 조금 놀라긴 했는데 소독을 하고 밴드를 붙여주니 금세 방긋 웃으며 친구와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2) 부모와 충분히 소통

- 사고로 인해 놀랐을 부모의 감정에 공감
- 부모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경청
- 사고가 난 날 저녁, 부모에게 연락하여 아이의 상태를 묻고 사고에 대한 유감을 표명

예) “많이 속상하시죠”
 “우리 00는 지금 집에서 어떤가요?”
 “어린이집에서 더욱 신경 써서 봐야하는데 앞으로는 더욱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사고가 일어난 후 지속적인 부모와의 소통

- 영유아가 등원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상태와 어린이집 등원이 가능한 날을 확인
- 영유아가 등원한 경우 어린이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등·하원 시 부모에게 물어보고, 원에서 보낸 하루 생활에 대해 이야기 함

4) 부상 시 후속 정보를 알아보고 이를 부모에게 전달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보상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사고유형 분류〉

- 사고유형 ① 할퀴
- 사고유형 ② 당김
- 사고유형 ③ 놀림
- 사고유형 ④ 화상
- 사고유형 ⑤ 물림(사람, 동물 등)
- 사고유형 ⑥ 이물질 삼입, 음식물 섭취
- 사고유형 ⑦ 기타사고(열성경련, 영아돌연사증후군)

가. 응급처치의 기본원칙

-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자신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함. 구조자가 위험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달려드는 것은 양쪽 다 해로운 일임
- 언제나 신속, 침착,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함
- 여러 환자가 있는 경우 긴급한 환자부터 처치해야함
- 이송이 필요한 상태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함

※ 응급환자 신고 시 전달할 기본 정보

- ① 환자가 발생한 위치, 주소 및 전화번호
- ②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와 환자상태
- ③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화재, 사고, 위험물질 등)
- ④ 환자의 수

-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가급적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함. 특히 무의식 환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기도를 막아 숨을 못 쉬게 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하며, 심각한 손상, 심한 출혈 등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음식물 제공은 수술시작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음
- 부상자 운반 시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이송하는 행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음



나.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유형 1 할렘(꼬집음)

손톱이 너무 길었어요



오전 자유선택놀이시간, 민석이는 언어영역에서 그림책과 낱말카드를 가지고 놀이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쌓기영역에 있던 현준이는 언어영역에 관심을 보이면서 민석이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가 보던 그림책을 같이 보고 싶었던 현준이는 민석이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뒤뚱거리게 되었습니다. 현준이는 민석이의 머리를 집으며 넘어지게 되었고 **손톱으로 민석이의 이마를 4cm 정도를 할퀴고** 말았습니다.

(예방수칙) 성장이 빠른 영유아들은 손톱도 빨리 자라며 손톱을 자주 깎아주더라도 마모가 덜 되어 예리하고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영유아 등원 시 손톱 정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할퀴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정에서도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관련주제

▶ 찢어짐(찰과상, 베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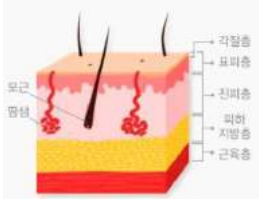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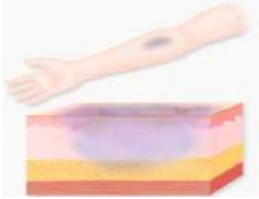
- 가벼운 상처의 경우 깨끗한 상처는 그대로 두고 밴드를 붙이지만, 더러운 상처인 경우에는 다친 부위를 식염수나 깨끗한 수돗물로 세척
- 물기를 깨끗한 거즈로 닦은 다음 상처에 밴드를 붙임
- 상처의 깊이와 크기, 부위 등에 따라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





심화학습

〈피부의 구조와 상처의 종류〉

 피부의 구조	 찰과상 : 마찰에 의하여 피부의 표면에 입는 상처	 타박상 : 외부의 힘(충돌 등)이 피부의 넓은면에 가해질 때 생기는 상처
 절상 : 끝이 예리한 물체(칼, 유리, 파편 등)에 의해 피부가 잘려져 입는 상처	 자상 : 끝이 예리한 물체(못, 창 등)에 의해 피부가 찔려서 입는 상처	 열상 : 외부의 자극에 의해 피부가 찢어져 입는 상처

출처 :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http://health.cdc.go.kr/health>)

MEMO

Blank area for writing notes.



유형 2 당김

줄리지 않은 낮잠시간



선생님은 낮잠 시간이 되어 아이들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잠이 잘 오지 않았던 수희는 이불을 물고서 장난을 치고 싶어졌습니다. 수희 옆에 있던 재현이는 너무 졸렸으나 수희에 움직임 때문에 깊게 잠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재현이는 잠결에 수희의 이불을 세게 끌어당기며 반대쪽으로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이불이 당겨지자 수희의 **앞니가 부러지게** 되었고 결국 치아의 뿌리까지 손상되어 발치하게 되었습니다.

(예방수칙) 영유아들은 어릴수록 잠자리에 들 때 입으로 무언가 물거나 빨고 자는 버릇이 있습니다. 고무젖꼭지나 거즈 수건을 물고 자던 버릇이 있는 영유아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개별 매트와 이불을 사용하며 매트 간 간격을 일정하게 띄우도록 합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애착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주제

치아손상

- 부러진 이가 땅에 떨어졌다면, 부러진 치아의 씹는 면을 잡고 생리식염수를 부어 씻어낸 후 생리식염수에 담가 치과로 가져감(생리 식염수가 없다면 차가운 흰 우유를 사용해도 무관)
- 영구치가 빠졌는데 영구치와 유치 구별을 하지 못하여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부모와의 통화) 후 조치함
- 유치는 앞니부터 좌우로 각 5개씩, 위아래 10개씩 총 20개임





금요일 오전, 어린이집 근처 공원에서 아이들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날씨가 매우 좋아 선생님은 아이들을 잠깐 놀이터에서 놀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석민이는 놀이터 기구 중 구름사다리를 향해 뛰어갔고 한 칸씩 한 칸씩 팔로 매달려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장난기가 많은 주용이는 석민이가 구름사다리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자 다리를 **잡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석민이는 구름사다리에서 손을 놓치게 되었고 주용이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용이는 석민이의 무게에 이기지 못해 함께 주저앉으며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방수칙) 구름 사다리는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아니므로 접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물리적 경험이 부족한 영유아들이 놀이기구 사용 규칙을 잘 지키며 놀이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와 지도가 필요합니다.

관련주제

골절, 탈구

- 다친 부위를無理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고정된 후 병원에 방문
- 다리를 다친 경우에는 살살 눕힌 후 종이 박스나 나무판, 패드 등을 무릎과 발목 아래에 넣어 받쳐 주어 고정함
- 팔의 경우에는 다친 부위의 위아래 관절까지 부목을 단단하게 대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함





유형 ④ 화상

선생님의 물건은 위험해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날 오후,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 환경구성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산타클로스 그림과 다양한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어린이집 현관 입구에 부착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은 글루건을 예열시키기 위해 전원을 켜 놓은 채로 교구장 위에 잠시 올려 놓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소희가 장식 용품을 구경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옆에 놓여있던 글루건에 호기심이 생겨 뜨거운 글루건 심을 손으로 만졌고,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큰 물집이 생겼습니다.

(예방수칙) 교사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영유아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영유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 해야합니다. 어린이집 행사 준비나 환경 정리를 할 경우에는 특히 글루건 등과 같은 위험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가능하면 하원시간 이후에 실시하고 영유아와 함께 있을 때는 보육외의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주제 ①

화상

- 식염수로 화상 부위를 씻어 주고 깨끗한 거즈와 붕대로 화상 부위를 덮어 병원에 방문
- 화상 부위가 손이나 발일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에 천이나 거즈를 끼워서 서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 깨끗한 붕대로 손과 발을 느슨하게 하고 병원에 방문
- 주의사항
 - 물집은 세균에 의한 감염을 일으키므로 벗기거나 터트리지 않음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 영유아는 화상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지 않음(체온손실로 저체온증 우려)
-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바르지 않음
- 모든 화상은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아야 함

〈화상유형별 대처〉

① 열상 화상

- 화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김
- 환부를 흐르는 찬물로 15~30분 정도 식힘
- 수포가 발생하였거나 영유아의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

② 흡입 화상

-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김
- 의복을 느슨하게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함
- 호흡 또는 심장 정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시작

③ 화학 화상

- 즉시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화학물질 제거
- 화학화상은 3도 이상의 화상으로 간주하여 응급실 방문

④ 전기 화상

- 상처 부위가 크고 작은 것과 달리 모든 전기 화상은 3도 화상임
- 전기로 인한 화상은 외견상 보이는 화상보다 심한 내상을 흔히 동반
- 전기 감전 발생 시 함부로 환자를 직접 떼어내지 말고 일단 전기 스위치를 내려 전기공급 중단
- 화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김
- 좌측 팔의 전기화상은 심장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팔히 응급실 방문

심화학습

응급처치 및 생활가이드

- 물 혹은 불에 데인 경우에는 옷을 벗겨야 하는데 옷을 벗기거나 환부 부위의 옷을 자르는 행동은 가급적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하도록 즉시 응급실을 방문함
- 물집이 생긴 경우에는 임의로 터뜨리지 말고, 물집이라도 절대 벗겨 내지 않도록 함
- 상처 부위를 소독한다고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등의 자극성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음
- 화상부위에 간장을 바르거나, 감자를 붙이는 경우 등의 민간요법은 2차 감염을 일으키거나 창상 감염을 일으켜 패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 초래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http://www.snuh.org>





관련주제 ②

〈어린이집 내 화상사고 주요 원인〉

- 뜨거운 음식- 간식 및 배식 시 뜨거운 죽이나 국물에 의한 화상
 - 글루건- 미술활동 등에 사용하는 글루건으로 인한 화상사고 다수 발생
 - 교사의 커피- 교사가 마시던 커피나 차에 의한 화상 또는 커피포트의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 화장실 온수- 영유아를 씻기는 과정에서 세면대 및 샤워기의 온수에 의한 화상
 - 기타- 분유 물, 경수기, 스팀청소기, 요리활동 시, 여름 물놀이 시 뜨거운 바닥 등
- ※ 최근 보육교직원 부주의에 따른 화상사고로 영유아들의 화상사고 증가, 각별한 주의 필요!

추가 사고사례

▶ 전기 주전자의 물이 쏟아졌어요



(사고경위 및 발생원인)

교사가 분유를 타기 위해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인 후 식히고 있는 사이, 살짝 열린 안전문을 밀고 주방으로 들어온 영아가 호기심에 주전자 출을 당겨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아직 식지 않은 뜨거운 물이 몸 전체에 쏟아져 화상을 입은 사고

(예방수칙)

- ⇨ 전열기구 등은 영유아들이 손이 닿는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
- ⇨ 조리실 안전문은 영유아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항상 문을 잠금
- ⇨ 분유를 타기위한 온수는 충분히 식힌 후 적정 온도인지 확인하여 보온병이나 용기에 담아 보육실로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함





유형 5-1 물림(사람)

친구가 화났어요



실내에서 자유선택활동으로 아이들이 모여 앉아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블록을 높이 올려 쌓는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후가 블록 하나를 가지고 맨 위에 올리려고 할 때 은성이가 그것을 빼앗아 맨 위에 올리고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블록을 빼앗기자 화가 난 지후는 은성이의 **볼을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후의 행동에 놀란 은성이는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은성이의 얼굴에는 멍과 치아 자국이 남았습니다.

(예방수칙) 분노는 공격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첫돌 이후 세돌 이전 영아기에 가까울수록 이로 무는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도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지만, 언어발달이 늦거나 갈등 해결 기술을 익히지 못한 영유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같은 행동을 자주 보이는 영유아는 교사가 특별히 관찰하면서 화난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분노 조절의 긍정적인 모델링을 보여 주어 올바른 소통방법을 익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주제



물림(사람)



- 사람의 구강 내에는 입으로 물 때 옮겨질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균들이 산재해 있음
- 사람에게 물렸을 때 만약 피부에 상처가 없다면 생리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깨끗이 씻는 것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 만약 피부에 상처가 났다면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난 후 사고 일지에 기록하고 의사의 진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치료하여야 함





유형 5-2 물림(동물)

토끼에게 먹이를 주다 손가락을 깨물렸어요



어린이집 베란다에서 토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토끼에게 말도 걸고 먹이를 챙겨 주는 것이 즐거운 일과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은 토끼에게 먹이를 주고 싶어 했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토끼 먹이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은 토끼에게 다가가 풀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은솔이가 갑자기 토끼를 만져보고 싶어 손가락을 살짝 넣었습니다. 먹이를 맛있게 먹던 토끼는 순식간에 은솔이 **손가락을 깨물었고 살짝 찢어지는 상처**가 났습니다.

(예방수칙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자연친화적인 경험을 하도록 동물을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므로 동물을 만날 때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동물은 영유아들의 손이 직접 닿지 않도록 관리하며 관찰만 가능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합니다.





관련주제



물림(사람)



-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도록 하며, 개방성 상처인 경우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여야 함
- 병원에 방문하여 동물의 종류와 정황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함
- 동물의 주인이 있을 경우 동물의 병력을 확인하여 의사에게 설명하고, 야생 동물인 경우 물린 장소, 시간, 동물의 특징 등 사고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 함

심화학습

- ① 주인이 있는 동물의 경우 사후 사건 처리를 위하여 동물 주인의 전화번호를 받아 놓도록 함
- ②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진술과 신원을 기록
- ③ 동물에게 물린 상처는 일반 상처에 비해 감염률이 약 8~9배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물린 상처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상처가 깊을 가능성이 크고 타액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상처의 깊이 등을 진단하도록 함

MEMO





유형 ⑤-3 물림(벌레, 동물 등)

윙윙~ 벌이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습니다. 다예는 그네를 타고 싶어 했고 선생님은 다예를 그네에 앉혀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예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놀라서 다가가 보니 울던 다예가 얼굴에서 무언가를 떼어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커다란 벌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놀라서 다예의 손에서 벌을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다예 얼굴이 점점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예방수칙) 영유아들과 실외놀이를 할 때 벌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공원 등에는 꽃과 나무가 많아 벌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벌은 꽃처럼 밝은색의 옷과 화장품 냄새 등을 좋아합니다. 벌이 따라올 때에는 고개를 숙여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벌이 다른 곳으로 날아간 것을 확인한 후 이동하고, 벌에 쏘인 부위는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합니다.

관련주제 ①

물림(벌, 뱀)

가. 벌

- 침이 박혀 있을 경우는 침을 잡아당기지 말고 신용카드 같은 것의 모서리로 살살 긁어 침을 제거하고, 침 끝에 남아 있는 독이 몸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잡아당기지 않도록 함
- 이차적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흐르는 물로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고, 연고를 발라 줌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 쓰인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한 후에 냉찜질을 하여 부종을 감소시킴

● 아주 드문 경우 심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얼굴과 몸, 기도가 부어올라 호흡이 어려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니 쓰인 후 아이의 증상 변화를 살펴봐야 함

관련주제 ②

나. 뱀

- 뱀에 물린 경우는 모두 응급 상황,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병원으로 이동함
- 물린 부위를 입으로 빨아내거나 칼을 사용하여 절개를 하는 등의 행위는 감염은 물론 빨아내는 사람과 물린 영유아 모두에게 2차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함
- 독이 심장 쪽으로 퍼지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 물린 부위의 위쪽 상부를 가볍게 묶고 심장보다 아래에 위치하도록 함



유형 6-1 이물질 삼입(삼킴)

콧구멍에 쑥



오후 6시, 대부분 아이들이 하원을 마치고 어린이집에는 선생님과 해원이만 남았습니다. 해원의 부모님께서 오늘 사정이 있어 할머니가 해원을 데리러 오기로 하셨습니다. 동화책도 다 읽고 할머니를 기다리다 심심해진 해원은 자신이 입고 온 옷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원피스 상의에 붙은 진주알 장식이 예뻐 계속 만져보는데 '뚝'하고 떨어졌습니다. 호기심 많은 해원은 진주알을 콧속에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콧속 깊은 곳까지 쑥 눌러버려 진주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란 해원은 콧속을





가리키며 울기 시작했고 선생님과 곧바로 이비인후과로 이동하였습니다.

(예방수칙 ) 영유아들은 콧속으로 무언가를 넣고 싶어 합니다. 설마 이런 걸 넣을까 싶을 정도로 영유아들의 호기심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강난감 외에도 영유아들의 옷에 달린 장식용 구슬 등 주변사물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을 위해 옷차림이나 소지품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주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코)



- 반대편 콧구멍을 막고 세차게 코를 풀도록 함
- 면봉으로 제거하려고 시도하다가 더 깊이 밀어 넣거나 점막 손상으로 코피를 유발할 수 있음
- 풀어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거나, 코를 풀 수 없는 영아의 경우에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확인

MEMO





오늘 미술 시간에는 종이와 색연필, 가위, 풀 등을 이용하여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운이는 수업 재료 이것저것을 만져보며 선생님의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종이를 접고 풀을 예쁘게 칠해서 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운이도 풀을 사용하기 위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주어도 열리지 않자 풀을 짹 눌렀는데 그만 압력에 의해 뚜껑이 튕겨 나오면서 **물풀**이 재운이의 눈에 튀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재운이의 눈을 깨끗한 물로 씻기고 급히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예방수칙) 영유아들과 미술 활동 시 널리 사용하는 물풀은 화학용품이므로 사용시 주의해야 합니다. 활동에 필요한 용품은 영유아들에게 내어 주기 전에 모두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물풀의 경우, 접착제가 뚜껑에 묻으면 마르면서 잘 열리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사용 후 정리할 때 물티슈로 뚜껑에 닿는 부분을 닦아서 관리 하도록 합니다.

관련주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눈)

- 눈의 표면에 먼지가 붙어 있을 경우 눈꺼풀을 벌려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을 흘려 씻어 내도록 함
- 영유아가 눈을 비비면 각막이 손상 될 수 있으니 눈을 비비지 않게 함
- 눈을 감게 하고 깨끗한 손수건 등으로 따를 만든 후 눈을 가려 눈을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





오늘 간식으로는 고소한 호두가 나왔습니다. 호두를 처음 본 채민이는 호두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 먹지 않다가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호두를 입에 물고 오물 오물 씹고 있다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채민이의 입안에 있던 호두 조각이 **기도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채민이가 구토를 하고 호흡을 어려워하자 곧바로 병원에 갔고 목에 8mm의 호두 조각이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방수칙 ) 견과류를 통으로 섭취할 때에는 충분히 씹어야 하는데, 씹는 힘이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들은 알갱이가 있는 채 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섭취과정에서 사례에 들리고 기도가 막히는 위험한사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식사지도를 주의 깊게 하도록 합니다.

관련주제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경우

가. 기도가 막힌 경우

- 음식물이나 사탕, 장난감 등이 기도로 넘어가 호흡이 막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목을 감싸 쥐고 괴로워 할 때, 즉시 119에 연락하고 응급처치를 실시





심화학습

기도가 막힌 경우 응급처치

1세 이하의 영아를 위한 응급처치 (~12개월)

1. 아기를 왼쪽 팔에 엮어 올려놓고서 아기의 목과 머리를 받혀서 잡습니다.
2. 오른쪽 손바닥으로 아기의 어깸죽지 사이를 빠르고 힘 있게 4번 연속해서 때려줍니다.
3. 위의 방법으로 이물질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아기를 딱딱한 바닥에 바로 눕히고 아기의 가슴 중앙의 뼈 있는 부위(흉골)를 손가락 2개로 힘 있게 4차례 눌러줍니다. 이 때, 너무 세게 누르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4. 그래도 숨을 쉬지 못하면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로 아기의 양 볼을 눌러서 입을 벌린 후 가제나 수건으로 혀를 잡아당겨서 아기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합니다.
5. 이렇게 해도 이물질이 깊숙이 들어가서 호흡곤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즉시 아기의 입과 코를 교사의 입으로 덮은 채 숨을 불어 넣어 인공호흡을 시키면서 서둘러 응급실로 갑니다.



1세 이상의 영아를 위한 응급처치

1. 응급처치로 이물질이 튀어나오지 않으면 아이를 딱딱한 바닥에 똑바로 눕힌 후에 명치와 배꼽 사이에 교사의 한쪽 손바닥을 대고 그 위에 다른 손을 얹은 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밀어 올리며 몇 차례 재빨리 눌러줍니다. (간이나 갈비뼈가 상할 수 있으므로 너무 심하게 누르는 것은 금물)
2. 아이가 계속 숨을 쉬지 못하면 입을 벌리게 한 후 혀를 잡아당겨서 숨을 쉴 수 있게 합니다.
3. 그래도 숨을 쉬지 못하면 인공호흡과 복부 압박을 각각 6~10회 반복하면서 119의 신고 또는 얼른 응급실로 옮깁니다.

유아를 위한 응급처치

1. 유아의 뒤에 서서, 허리를 팔로 감싸 유아를 안습니다.
2. 제일 아래쪽 갈비뼈 바로 밑과 배꼽 약간 위쪽에 한 손의 주먹을 밀착시킨 뒤 다른 손으로 덮고 세게 껴안은 것처럼 45도 정도의 각도로 위쪽으로 눌러줍니다.
3. 물체가 나올 때 까지 10회 정도 반복합니다.
4. 물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19에 신고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5).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행동매뉴얼



유형 7-1 기타 사고

열성경련



한빈이는 등원할 때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인형극 공연도 제대로 못 보고 다른 활동시간에도 다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육실 한쪽에 기대어 쉬고 있던 한빈이는 친구들이 간식을 먹으러 가자는 말을 듣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식탁 쪽으로 걸어가던 한빈이가 갑자기 휘청대더니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선생님은 한빈이를 일으키고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한빈이는 고열에 전신 **경련 증상**을 보이면서 호흡을 힘들어했습니다.

(**예방수칙**) 영유아들이 고열로 인해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기 증상이 있고 기운이 없이 힘들어하는 영유아의 경우에 수시로 열을 측정하고, 입소원서에 병력 등의 건강 관련 정보를 정확히 수집, 확인하여 충분히 대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관련주제 ①

발작(경련)

- 영유아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이나 억제를 하지 않고, 목과 허리 부분의 옷을 느슨하게 함
- 구토를 하거나 입 안에 구토물이 보이는 경우 질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억지로 입을 벌리지 않음
- 발작(경련)이 지속되는 경우 119에 전화하고 병원에 데려 가도록 함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가. 열이 날 때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해 해열제·감기약 등을 투약할 경우 미리 부모의 투약의뢰서 또는 부모의 투약요청 의사를 확인(유선 등)하고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 가능 시 투약 실시
※ 투약 시 약품에 기재된 투약기준(용법, 용량 등)을 준수하여야 함

1) 해열제를 복용하여야 하는 경우

- 백일 이후
- 섭씨 39도 이상
- 만성적인 폐·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 이전 열성경련이 있었던 경우

2) 해열제 사용시 주의점

- 정확한 양, 4~6시간 간격을 두고 투여
- 자주 사용은 금할 것
- 자는 아이를 깨워서 투여하지 말 것

3) 해열제 사용

- 해열제는 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며, 병의 경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
- 영유아가 평소처럼 잘 먹고 잘 놀며 잠을 잘 자는 경우에는 해열제를 투여하지 않아도 됨

관련주제 ②

〈해열제 종류〉

타이레놀(Acetaminophen)	이부프로펜(Ibuprofen)
- 4~6시간 마다 10~15mg/kg(몸무게kg당 0.3-0.5cc)로 사용 - 하루 5회 이상 투여해서는 안됨 -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시간이 걸리므로, 복용 1시간 내에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시 투여해서는 안됨 - 대개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나, 장기간 사용 하면 신장 기능 장애가, 대량 복용하면 간 기능 장애가 올 수 있음	- 6~8시간 마다 5~10mg/kg(몸무게kg당 0.25-0.5cc)를 사용 -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시간이 걸리고 타이레놀에 비하여 지속시간이 길며, 진통효과가 좋아 밤새 통증이 있거나 열이 있는 경우 사용 - 큰 부작용은 없으며 소화불량이나 구역감이 5% 정도에서 생길 수 있고 아주 드물게 위장출혈, 뇌수막염, 신장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심하게 토하고 탈수가 심한 영유아에게는 신중하게 투여하여야 함

출처 : 보건복지부·대한소아과학회(2011).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





4)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기

- 욕탕이나 대야에 2.5~5cm 정도 깊이로 30℃ 전후의 미지근한 물을 채움
 - ※ 온도계가 없다면 손목이나 손등으로 느껴질 때 약간 따뜻한 정도면 적당
- 스펀지나 깨끗한 물수건을 사용하여 우선 아이의 목 뒷부분과 등을 닦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순서로 내려가면서 닦음
- 영유아가 몸을 떨며 오한이 있을 때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음

- ① 해열을 위해 해열제 보다 먼저 닦아주기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② 해열제는 보통 정상 체온으로 내리지 못하고 섭씨 1~1.5도 정도만 내린다. 아스피린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MEMO





심화학습

즉시 병원이나 응급실로 가야하는 경우

◎ 열날 때

- 열이란? 직장 온도 섭씨 38도, 구강온도 섭씨 37.5도, 겨드랑이온도 섭씨 37도 이상으로 정의. 가벼운 열(38도-38.5도)은 운동을 하거나 옷을 많이 끼어 입거나 목욕을 하거나 더운 날에 측정될 수 있음. 의심스러우면 30분후 재측정
- 3개월 이하의 영아가 열이 날 때
- 매우 아파보이고 점점 심해진다고 판단될 때
- 의식이 없거나 점점 나빠질 때
- 다리를 절거나 움직이지 못할 때
- 빠르게 숨을 쉬거나 숨쉬기 힘들어서 잘 먹지 못하거나 놀지 못할 때
- 목이 뻐뻐하거나 경련을 할 때

◎ 토할 때

- 반복적으로 심하게 토할 때
- 배가 평소보다 부푼 듯이 보일 때
- 배를 움켜잡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심한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
- 3일 이내에 머리를 다친 적이 있는 경우
- 탈수 현상(소변 양이 줄고 혀가 말라 있는 등)이 있는 경우
- 녹색 혹은 피 색깔의 구토를 하는 경우

◎ 기타

- 처음으로 경기를 할 때
- 검은색 변을 보거나 피가 섞인 변을 볼 때
- 머리를 다친 후 의식이 흐리거나 자려고만 할 때

출처 : 보건복지부·대한소아과학회(2011).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



만 0세 은수는 오전 10시에 우유 100cc를 먹고 트림을 한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는 소리가 들려 선생님이 다가가 달래주었더니 다시 잠이 깊게 들었습니다. 곧 점심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되어 선생님은 주방에 가서 몇 가지를 점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깨울 준비를 하려는데 느낌이 좀 이상하여 은수를 보니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차가웠습니다. 선생님은 은수를 일으켜 등을 두들기며 119에 신고를 하고 부모님께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은수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방수칙 ) 영아돌연사증후군이란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잠든 이후 사망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사망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 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수면 중 일때에는 교사는 걸을 떠나지 말고 숨소리와 잠을 자는 자세, 낮빛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련주제

영아돌연사증후군

가. 개요와 정의

- 정의 : 영아가 예기치 않게 사망한 경우는 종합적으로 영아돌연사(급사) (SUID: Sudden Unexpected Infant Death)라고 함





제3장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응관리

- 그 중 영아돌연사(급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은 임상기록의 철저한 검사, 사망 현장의 검사, 완벽한 부검 실행을 포함하여 철저한 사건조사 후에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1세 미만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정의
- 어린이집에서 영아 사망 시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형사상 책임을 면하고,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음. 또한 영아돌연사로 추정되어 부검을 실시하여 사인이 밝혀지는 경우 어린이집 측과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나. 현황

- 영아돌연사증후군은 계절별로는 겨울에, 시기별로는 생후 6개월 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6년(4년간)의 국내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망건수는 총 327건으로 연평균 89건에 달함
- 안전공제회에는 2012년 6건, 2013년 8건, 2014년 7건, 2015년 5건, 2016년 2건으로 최근 5년간 총 28건, 연평균 5~6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음. 연 중 시기별로는 영아돌연사증후군의 발생이 7월, 10~1월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 어린이집에서의 대처

- 영아돌연사증후군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음. 바로 눕혀 재우는 것만으로는 영아돌연사증후군을 모두 예방할 수 없으나 적어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아돌연사증후군에 대한 교육을 받아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

1) 보육교사 안전수칙

- 영아를 재울 때 등을 바닥에 대고 천장을 보도록 바로 눕힘
- 영아가 수면하는 바닥의 면이 단단해야 하며 덥지 않게 함
- 어둡지 않게 하여 수면 중인 영아의 얼굴을 살필 수 있어야 함
- 영아가 자고 있는 주변에 위험한(폭신한) 물건이 없어야 함
- 영아와 같은 침대에 자거나 바로 옆에 눕지 않도록 함
- 영아 수면 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함
- 영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시간을 기록
- 영아의 머리와 얼굴을 덮지 않도록 함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법을 숙지함
- 흡연과 간접흡연 방지





활용 tip



★ 활용자료: (영상)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
(www.csia.or.kr)

출처: 질병관리본부(2007). 우리아이 똑바로 눕혀 재우기

MEMO





심폐소생술



- 심폐소생술(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란,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멈추었을 때 인위적으로 호흡을 유지하고 혈액 순환을 유지해 주는 응급처치법
-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에게 전문 소생술이 시행되기 전에 인공순환과 인공호흡을 제공하여 환자의 심장 박동이 회복될 때 까지 뇌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
- 영유아 심정지 원인은 성인과 달리 주로 급성기도폐쇄, 호흡마비나 손상, 영아돌연사증후군, 패혈증 등의 원인으로 발생

가. 이렇게 대처하세요

★ 활용자료: (영상) 영아 심폐소생술

-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www.csia.or.kr)



1. 의식확인

- ▶ 먼저 영유아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발바닥을 두드리며 소리침
- ▶ 의식이 없고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상태라면 즉시 119에 신고



2. 119신고

- ▶ 누군가와 함께 있을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119에 신고
- ▶ 혼자 있을 경우,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한 뒤 119 구급대에 전화하여 응급의료상담원의 지시를 따름



3. 심폐소생술(유두선 찾기)

- ▶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해 영유아를 편평하고 딱딱한 바닥에 바르게 누인 후 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냄
- ▶ 영유아의 고개를 움직이지 않게 유지하며 젖꼭지 사이를 연결하는 가상의 선인 유두선을 그음
- ▶ 그리고 둘째, 셋째 손가락의 첫마디를 유두선 중앙 아래에 위치시킴



4. 영아 심폐소생술

- ▶ 영아의 이마를 눌러 기도를 확보하고 유두선 중앙 아래를 가슴 높이의 1/3인 4cm 깊이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속도로 중단 없이 강하고 빠르게 30회 누름



4-1. 소아 심폐소생술

- ▶ 소아 심폐소생술 방법
한 손 또는 두 손을 사용하여 가슴 높이의 1/3인 5cm 깊이로, 분당 100회 속도로 30회 압박
- ▶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의 아래 부위를 소아의 흉골 부위에 놓고 압박



5. 기도확보

- ▶ 영아는 머리가 몸통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평상시 고개가 약간 숙여져 있음
- ▶ 기도를 확보할 땐 고개를 15도만 들어 정면을 보게 함



6. 인공호흡

- ▶ 영유아의 입을 벌려, 입과 코가 한 번에 덮이고 가슴부위 상승이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1초 동안 약하게 숨을 불어 넣음
- ▶ 이대로 인공호흡을 2회 실시

주의) 1.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은 같이 하지 않음
2. 인공호흡을 과도하게 하지 않음



7. 반복실시

- ▶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반복
- ▶ 만약 환아가 스스로 숨을 쉬거나 의식을 찾으면 심폐소생술을 중단

출처 :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5). (영상) 영아 심폐소생술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2017).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_____(2018). 2018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대한소아과학회(2011). 어린이집 건강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4).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 길라잡이.
 _____(2016). CCTV 관리방법 포스터.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6). 어린이집 지진 관리·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환경부(2017).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어린이집안전공제회(2014). 창립5주년 기념 대국민 토론회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
 _____(2015a).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처행동매뉴얼.
 _____(2015b). [애니메이션] 놀이시설 안전관리(full).
 _____(2015c). [애니메이션] 등하원시 주의사항.
 _____(2015d). [애니메이션]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_____(2015e). [애니메이션] 영아 심폐소생술.
 _____(2016a). 소화기 사용법과 화재시 대처요령 포스터.
 _____(2016b). 어린이집 안전관리 백과.
 _____(2016c).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집 vol2.
 _____(2016d). [교육자료] 버스에 혼자 남겨졌어요(통학차량 안전).
 _____(2016e). [애니메이션] 안전가나다(자막ver).
 _____(2017a). 세피의 안전수첩.
 _____(2017b). [영상] 세피와 함께하는 지진대피 요령.
 _____(2017c). [영상] 세피와 함께하는 화재대피 요령.
 이기숙 · 장영희 · 정미라 · 배소연 · 박희숙(2002).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서울: 양서원.
 질병관리본부(2007). 우리아이 똑바로 눕혀 재우기 리플릿.
 한국전기안전공사(2018). 전기안전 미리미리 리플릿.
 환경부(2017).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울산 어린이집 화재... 1분 만에 유아 27명 대피시킨 보육교사들에 소방관 감탄, 이데일리
 (2015.3.25.)



평소 연습한대로 침착히 지진 대피한 어린이집 꼬마들, 부산일보(2017.11.16)

도로교통공단 www.koroad.or.k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www.snuh.org

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www.safe182.go.kr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www.eco-playground.kr/www.chemistory.go.kr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health>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행정안전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www.cpf.go.kr





201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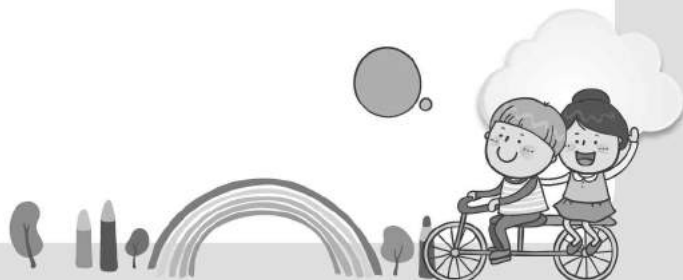
아동학대 예방교육

기획/편집

성명	소속	직위
마미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조성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	팀장
윤지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지원사업팀	보육전문요원

집필/감수

분야	기관
아동학대예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예방 및 사후관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집필:손민원 감수:이현혜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실종아동전문기관





목차

제1장 아동학대 예방 • 129

I 아동권리 이해 / 129

1. 아동권리의 개념
2. 아동권리의 중요성
3. 유엔 아동권리협약

II 아동학대 이해 / 132

1. 아동학대의 법적 개념과 유형
2. 아동학대의 현황
 - 1) 아동학대의 일반 현황
 - 2)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3. 아동학대 발생원인 및 후유증
 - 1) 아동학대 발생원인
 - 2) 아동학대의 후유증

III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해 / 141

1.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과정

IV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방향 / 151

1. 영유아 보호를 위한 실천방향
2. 보육교직원 인식강화 및 지원을 위한 실천방향
3. 국가적 차원의 실천방향





제2장 성폭력 ·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163

1. 성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 163

1. 아동성폭력 이해 / 163

- 1) 아동 성폭력 예방의 필요성
- 2) 아동 성폭력(성학대)이란?
- 3) 아동 성폭력의 위험성
- 4) 아동성폭력 발생 현황
- 5) 아동성폭력 발생 단계
- 6) 아동 성폭력에 대한 통념

2.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아동은? / 171

- 1) 이야기를 잘하는 수다쟁이 아동!
- 2)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아동
- 3)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분하는 아동
- 4) 지켜야 할 비밀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비밀에 대해 아는 아동

3.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 173

- 1) 아동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것
- 2) 일상에서 어른이 해야 할 것
- 3)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대처 방법
- 4)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역할

4.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 / 175

5. 성폭력 피해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 176





II.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178

1. 실종아동에 대한 이해 / 178

- 1) 실종아동의 정의 및 유형
- 2) 실종아동 발생 현황
- 3) 실종으로 인한 문제

2. 실종유괴 예방교육 / 180

- 1) 영유아 실종유괴 예방교육의 방법
- 2) 영유아 실종유괴 예방교육의 내용

3. 실종 대처방법 / 184

-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지침
- 2) 실종신고 요령
- 3) 실종 아동 발견 시 지침

참고자료 • 186

부록 • 187



제1장 아동학대 예방

I 아동권리 이해

학습목표

- ▶ 아동권리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아본다.
- ▶ 아동권리 관련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알아본다.

1. 아동권리의 개념

인간의 권리란 출생과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자연법적 권리이다. 성인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동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나, 아동은 아직 스스로 생존하고 보호할 수 없으므로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추가된다.

따라서 아동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그 주체인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성, 언어, 종교, 인종, 피부색, 능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아동권리의 중요성

아동은 출생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누릴 권리의 주체로서 살아간다. 그러나 많은 성인들이 그릇된 아동관과 양육관을 가지고,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의존적 존재로 생각하여 아동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아 아동이 성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누릴 가치가 있으며 권리의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과 성인의 소유물이 아니며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존중받지 못한 아동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성인으로 자라기 힘들므로 성인은 항상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과





제1장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19세기 이전까지는, 아동을 성인의 전유물로 생각해 왔으며, 아동을 노동인력으로 이용하거나 혹사시키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런 아동 인권 문제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1차 세계대전 후 「아동권리선언(1924년 9월)」이 제정됐다. 이후 「세계아동헌장」, 「제네바선언」, 「유엔아동권리선언」, 「국제아동의 해 제정」 등 아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다.

국제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에게 부여된 기본 권리들을 규정하는 조약을 승인하였다. 이것이 바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이는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며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제적 의지표현이자 국제인권협약이다.

총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리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아동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비준함으로써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총 54개 조항 중 기본 권리는 다음 4개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표 1-1〉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

기 본 원 칙	내 용
무차별의 원칙 (2조)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3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시에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생존 및 발달 보장의 원칙 (6조)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참여의 원칙 (12조)	아동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 받아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은 4-3-1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데, 4-3-1은 4개의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3원칙, 1과정이다.

〈표 1-2〉 4-3-1 모델

구 분	내 용	
4 (기본권)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충분한 영양 섭취, 생명유지,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차별로부터 보호, 학대, 방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과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3 (원칙)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 제공	
	차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	
1 (과정)	아동권리 실현은 우리 모두의 책임	

위의 내용에서와 같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과 아동권리 관련 내용을 항상 인식하여 영유아 보육에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학습목표**

- ▶ 아동학대의 법적 개념과 유형을 알아본다.
- ▶ 아동학대의 현황과 사례를 알아본다.
- ▶ 아동학대의 발생원인과 후유증을 알아본다.

1. 아동학대의 법적 개념과 유형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호는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를 학대행위로 본다. 우리나라는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 처벌 근거, 관련기관에 대한 법적근거를 포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항에서 아래와 같이 법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및 방임이며,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금지하는 행위를 통해 아동학대의 구체적인 예시¹⁾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내 용
신 체 학 대	금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구체적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트림 등) •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1)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구분	내 용
정서학대	금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구체적 예시 • 원망작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성학대	금지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학대 행위
	구체적 예시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 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유기 및 방임	금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구체적 예시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2. 아동학대의 현황

1) 아동학대의 일반 현황

2017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 아동학대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는 2001년 2,105건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18,700건으로 약 8.9배 늘어났다. 특히 2016년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하여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이 59.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되고 신고의무가 강화되는 등 아동학대 신고가 활성화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설됨에 따라 피해아동 발견을 및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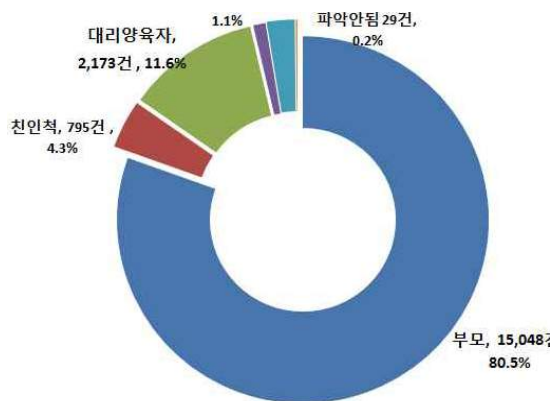
〈표 1-4〉 연도별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사례 건수

(단위 : 건, %)

구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신고 접수 건수	건수	4,133	4,111	4,983	6,998	8,000	8,903	9,478	9,570	9,309	9,199	10,146	10,943	13,076	17,782	19,203	29,671
	증가율	-	-0.5	21.2	40.4	14.3	11.3	6.5	1.0	-2.7	-1.2	10.3	7.9	19.5	36.0	8.0	54.5
아동 학대 사례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69	10,027	11,715	18,700
	증가율	-	17.7	17.9	33.2	19.1	12.3	7.3	-0.1	1.9	-0.5	7.1	5.7	6.1	47.5	16.8	59.6

•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6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18,700건 중 부모 15,048건(80.5%), 대리양육자 2,173건(11.6%)이었고, 대리양육자 중 보육교직원이 587건(3.1%)으로 나타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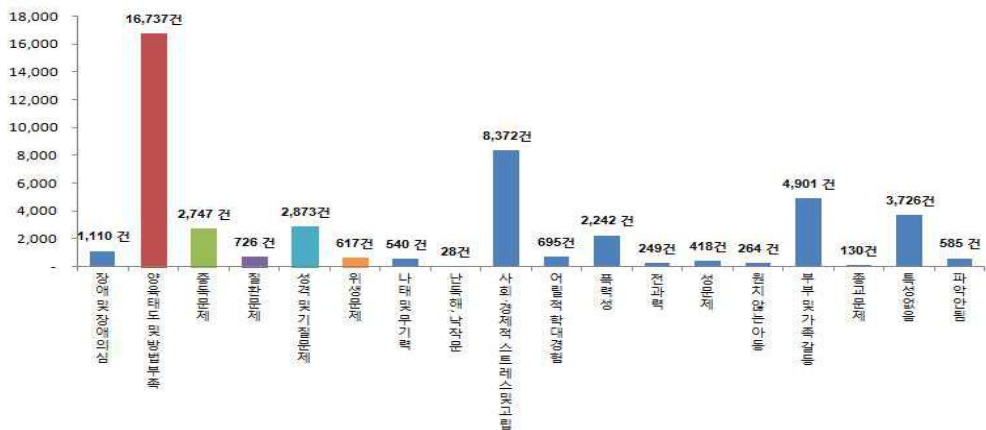


[그림 1-1]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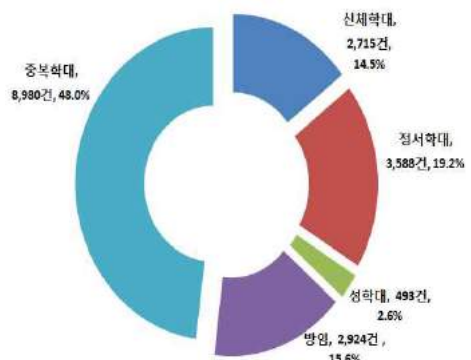
아동학대 사례에서의 학대 행위자 특성(중복 응답 포함)을 살펴본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6,737건(3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8,372건(18%), 부부 및 가족 갈등 4,901건(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는 어느 한 가지 특정한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기보다는 다양한 개인과 사회적 환경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긍정적인 양육태도 확립이 중요하며,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의 긍정적 변화와 더불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그림 1-2]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

• 아동학대 발생유형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중복학대가 8,980건(4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정서학대 3,588건(19.2%), 방임 2,924건(15.6%), 신체학대 2,715건(14.5%), 성학대 493건(2.6%) 순으로 나타나 아동학대는 한 가지 학대유형보다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중복학대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중복학대의 경우 더 심각한 학대 후유증 및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야 한다.



[그림 1-3] 아동학대 발생 유형





제1장 아동학대 예방

•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가 4,364건(2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는 2,384건(12.7%), 일주일에 한 번인 경우는 2,260건(12.1%)으로 나타나 아동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총 9,008건(48.1%)로 전체 18,700건 중 절반 수준이다.



[그림 1-4]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의 장기화는 일회성의 학대보다 아동의 생애 전반에 심각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반복적·만성적으로 발생하는 학대 방지를 위하여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아동의 학대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재학대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의 일반적인 현황에서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가장 많았고, 학대 행위자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유형은 중복학대, 빈도는 거의 매일 발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도에 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와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 아동학대 범죄의 처리절차,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현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10건에서 2016년 587건으로 약5배 이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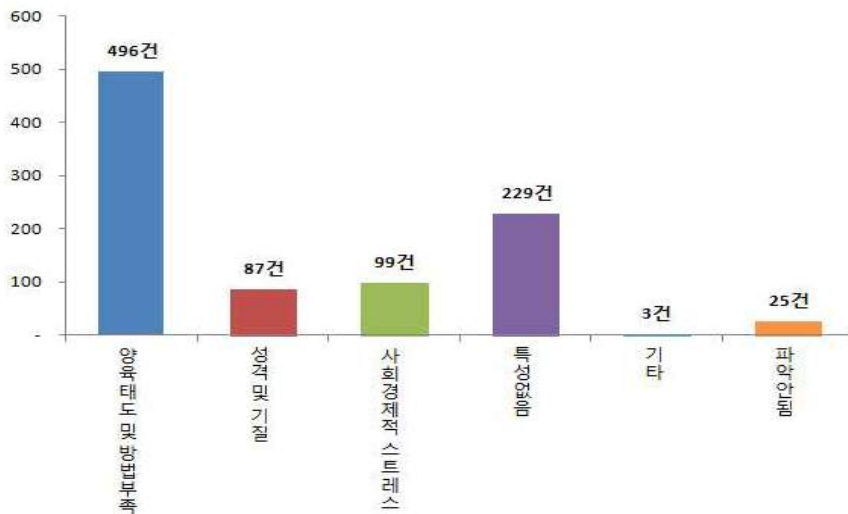
〈표 1-5〉 연도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건수

(단위 : 건)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발생 건수	110	217	295	427	587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

아동학대의 일반적인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아동학대 발생 총 18,700건 중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587건(3.1%)이었으며,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496건(52.8%)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특성없음 229건(26.9%),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99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

보육교직원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인한 아동학대 행위는 아동보다 일과 운영을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 일과 운영을 방해하는 아동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하여 아동의 행동을 제한하고 죄책감을 갖게 하거나 일방적 지시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피주기, 위협하기, 애정이나 정서적지지 주지 않기, 무시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기, 웃어주지 않기, 필요이상으로 비난하기, 따끔하게 야단치는 강압적 훈육 등의 행동은 아동을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당하는 수직적 관계로 보기 때문이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수평적 관계로 대하는 보육교직원의 태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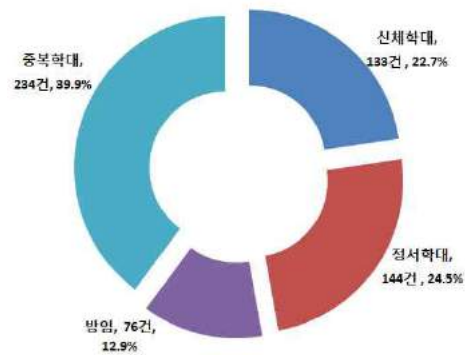


제1장 아동학대 예방

•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사례 유형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지학대가 234건(39.9%), 정서학대 144건(24.5%), 신체학대 133건(22.7%), 방임 76건(12.9%)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학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중 중복지학대 유형은 신체학대·정서학대 166건(28.3%), 정서학대·방임 33건(5.6%),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26건(4.4%)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모두 아동 학대이며, 아동에게 언어적 혹은 정서적 위협을 가하거나 인격이나 감정을 심하게 무시, 모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런 정서학대는 눈에 잘 띄지 않고 당장 그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한다. 아동에게 심한 욕설 혹은 고함을 지르거나 독방에 감금하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따돌림이나 부당한 차별 대우 모두 학대이다.



[그림 1-6]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사례 유형

아동학대 보도사례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 생후 1개월 친딸 학대로 불구 만든 20대 친모 징역3년 <중앙일보. 2018.3.4.>
- 4세 자녀 앞 흉기난동 비정한 아버지 실형 <한국일보. 2017.08.02.>
- 추행 일삼던 아빠는 딸이 성인이 되자마자 성폭행했다 <국민일보. 2017.11.27.>
- 부부싸움 후 93분간 아이방치... 60대 아빠 징역형한국일보 <2018.02.18.>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사례]

- “잠 안잔다”며 3세 아동 때리고 울린 어린이집 교사 ‘집유’ <노컷뉴스. 2018.01.18.>
- 스펀지로 때려도 아동학대 < 법률신문. 2015.10.30.>
- 생후 7개월 영아 젖병 물린 채 방치해 사망? ... 보육교사 집유 <뉴스코리아. 2017.11.27.>





3. 아동학대 발생원인 및 후유증

1) 아동학대 발생원인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 각 요인별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아동학대 발생원인

부모 요인	보육교사 요인
• 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및 아동존중 인식부족 •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 잦은 가정의 위기 또는 사회적 고립 • 미성숙 또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 알코올·약물중독, 불안,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 • 그릇된 아동관 및 양육관 • 부모의 분노, 좌절,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등	• 아동학대, 훈육, 체벌의 개념 혼동 • 온정적이지 않은 태도 • 아동지도 기술 부족 •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가정·지역사회 요인	어린이집 요인
• 가족관계 문제 • 체벌에 허용적인 문화 •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 결여 등	• 어린이집 조직문화가 폐쇄적인 경우 • 업무 과중을 조절하는 조직문화가 없는 경우 • 아동문제 지도방안에 대한 어린이집 내 논의 부족 • 교사 교육 부족 등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어린이집아동학대사례 심층분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2) 아동학대의 후유증

아동기는 신체 및 정신적으로 성장이 미완료된 시기로 외부 환경에 취약하다. 따라서 한번의 학대라도 그 피해는 치명적이며,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방해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영아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는 더 심각하다. 무엇보다 학대를 받은 아동들의 경우 문제 증상을 야기하고, 또 다른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후유증에 대한 관찰과 치료가 중요하다.

아동학대후유증은 크게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후유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유형별로 후유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아동학대 후유증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후유증	• 신체 손상: 신체 일부의 변형, 피부의 결손, 자상, 화상, 기능 손실 (예: 청력 저하, 시력 저하, 대소변 조절능력의 저하 등) • 발육 부진: 예상 신장과 체중에 미달함
정신적 후유증	• 지능 손상: 지능 발달에서 결함을 보임 •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높은 충동성으로 인해 각종 충동적인 행동들을 보임 • 감정의 불안정성: 불안, 우울, 감정의 기복 등을 보임 • 사회성의 저하: 또래 관계 및 대인 관계를 잘 맺지 못하거나 유지가 어려움 • 학교 부적응: 학교를 자주 빠지거나 혹은 졸업을 하지 못함 • 각종 정신과적 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탈억제형 사회적 참여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장애, 적응장애

아동학대는 평생에 걸쳐 개인에게 영향을 주며 학대받은 경험이 일생 동안 개인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 또한 부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낳게 할 뿐만 아니라, 비행과 학교폭력을 유발할 수 있고, 학대받은 아동이 부모가 되어 또 다시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문선화 외, 2010). 따라서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I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해



학습목표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의 내용을 알아본다.
- ▶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과정을 알아본다.

1.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래와 같으며, 제10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제1장 아동학대 예방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삭제 <2016.5.29.>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발견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 관련 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영유아보육법」에 보호규정이 아래와 같이 마련되어 있어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또는 신고의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특히,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신





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취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등의 법적 처벌뿐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표 1-8〉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관련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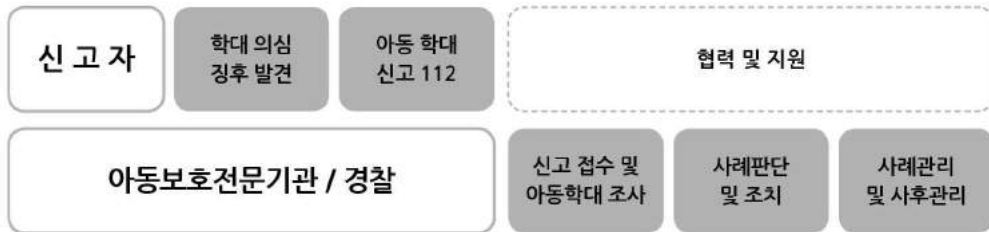
관련법	내 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0조의2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면 안 됨 • 제10조의3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 제62조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도 금지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62조의2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②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중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조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12조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 제13조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 제7조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은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조서 등을 작성할 때 범죄 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제8조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범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 됨 • 제9조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분관리카드의 열람 제한 • 제11조 소환된 증인 또는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인의 인적 사항이 증인 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함 • 제12조 법원은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변호인과 해당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할 수 있음 • 제13조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함
영유아보육법	• 제46조 어린이집의 원장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2.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과정

아동학대 의심징후를 발견하여 112로 신고하면, 아래의 과정과 같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그림 1-기]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과정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과정에서 신고의무자의 역할은 학대의심징후 발견시 112로 신고한 후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판단 및 조치에 협조, 이후 사례관리 및 사후 관리에서의 아동 및 가정에 대한 각종 지원에 협조하는 것이다.

학대 의심 징후 발견

먼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대상처는 일반상처와는 다르게 다치기 어려운 곳에서 발견된다. 예를 들어, 양손골절 및 두 가지 이상의 중복골절이나, 아동의 귀, 코, 목 등 정상적이지 않은 곳의 출혈 흔적 및 상처자국, 다리미나 담뱃불로 인한 화상자국, 벨트자국, 이빨자국 등 반복적으로 많은 수의 타박상 및 상처 등이 발견되는 경우 아동학대 징후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화상자국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대 유형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는 아래와 같다.



〈표 1-9〉 아동학대 의심 징후

학대 유형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신체학대	• 상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 도구 모양 그대로 나타난 상처 • 화상: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긴 화상 • 골절: 시간차 골절, 복합나선형 골절 • 결상: 입, 입술, 잇몸, 눈, 외음부 결상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귀가 및 부모에 대해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등
정서학대	•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 말더듬 같은 언어장애 • 미숙한 정서반응 • 집중력 결여 • 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공격적 성향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수면장애, 놀이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해, 자살시도
성학대	• 신체적 지표: 성병감염, 임신, 걸거나 앉기 어려움 • 생식기 증가: 정액, 처녀막, 질 내 상처 • 항문 증후: 괄약근 손상, 항문주변 멍이나 찰과상, 회음부 동통 • 구강 증후: 입천장 손상, 인두 임질	• 성적 지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조숙한 성지식, 타인, 동물, 장난감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비 성적 행동지표: 수면장애, 충동성, 주의집중장애, 방화/동물에 잔혹함(남아), 섭식장애, 비행, 가출, 자살시도, 우울증 등
방임	• 지속적인 배고픔, 열악한 위생상태 •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 의학적 치료와 치과치료의 불이행 • 지속적 피로, 불안정감 • 수업 중 조는 태도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늦게 귀가함 • 잦은 결석, 만성 지각

출처: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www.mapo.sc.or.kr>)

아동학대신고 (112)

신체적 · 행동적 징후 발견 및 증언을 통해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한다. 응급상황인 경우 신속한 출동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응급상황을 설명하면 경찰이 우선 10분 이내 출동 가능하며, 신고자는 경찰이 긴급 출동할 때까지 아동의 신병을 확보하여 추가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시간 여유가 있다면 경찰서의 사복 전담 형사 요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동반 요청이 가능하며, 관할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아동학대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아동학대 예방

언제?	무엇을?	어떻게?
•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 전화 및 방문: 112,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 전화, 문자 신고가능

(아동학대 신고전화 예시)

- oo 어린이집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 oo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 _____의 이유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합니다.
- 아동의 현재 상황은 _____입니다.
※ 아동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 아동의 인적 사항은 _____입니다.
※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_____입니다.
※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 신고자는 _____입니다.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등

출처 : 법무부,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는 큰일이 난 것처럼 하여 아동이 불안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행동하면서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하고 지지하며,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 반응해주면서 학대를 받은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인지시켜준다. 지나친 반응 및 신체 접촉은 아동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학대행위 의심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진술의 오염되지 않도록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성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는 것이 좋다.





신고 접수 및 아동학대조사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호 통보하여 아동학대 발생장소 및 아동학대와 관련된 장소에 출동하여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자료(증거 사진 및 아동학대 조사 녹취 등)를 확보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 접수	아동학대조사
• 24시간 신고전화 운영(112) • 아동학대 의심사례 접수 후 아동학대조사 실시 • 일반상담 접수 및 타기관연계 •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호통보 ※ 신고시 아동을 포함한 학대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아동의 현 거주지, 행위자의 관계 등)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됨	• 상담원 2인 1조 출동 • 경찰우선/동행출동 • 아동학대발생지 및 관련 장소 내 조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신고자, 관련인 등 • 아동학대혐의 판단 ※ 아동학대조사 과정에 취득한 증거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비밀누설금지 등에 의거하여 당사자에 한한 정보 외에는 제공이 금지됨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조사에 협조하여 아동 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내의 독립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 제공에 협조하며, 필요시 아동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교사가 함께 아동조사에 참여하여 아동이 조사 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한다. 보육교직원의 협조가 도움이 되었던 예로, 아동 성학대 의심 사례에서 아동이 불안을 느껴 진술을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평소 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던 보육교사 A씨가 동석하여 아동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었고, 해당 내용이 증거로 채택된 사례가 있다. 아동학대조사에서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적극 협조는 학대혐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례판단 및 조치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신고 된 사례는 아동학대 정황이 확증된 경우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며, 아동학대 혐의가 의심되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업무상 과실에 의한 아동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부적절한 훈육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기자원사례로 판단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판단이 불가한 일반사례로 구분된다. 각 사례판단에 따라 피해아동 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 조치가 취해진다.

사례 판단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조치
• 아동학대: 아동학대 정황이 확증된 경우 • 조기자원 - 아동학대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자원이 필요한 경우 • 일반사례: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 • 지속적인 모니터링 • 아동학대혐의가 있을 경우 고소 고발 • 학대 행위자의 접근 금지 • 피해아동 보호명령 • 행정처분 결정 및 통보

만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사례 판단 결과를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받은 아동학대 판단결과 뿐 아니라 피해아동 수,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위반 사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 8(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해당 기관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 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사례 관리 및 사후관리

마지막으로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 가족에게 심리치료 지원, 상담 및 교육, 타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향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사례를 관리하며, 학대위험요인 감소 및 보호안전체계 확립여부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가 종결된다.

사례관리	사후관리
• 심리치료 지원: 심리검사 및 심리 치료 • 상담 및 교육: 개별 및 집단상담, 부모교육,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 타기관 연계: 건강가정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사회복지관, 의료기관, 심리상담센터 등 연계	• 학대위험요인 감소, 보호안전체계 확립 등을 고려하여 사례 종결 • 사례 모니터링

사례 종결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재학대 발생여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어린이집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찰하여 재학대 발생 및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신고의무자를 위한 Tip

1. 신고하면 어떤 경찰관이 출동하나요?

즉시 출동해야 하는 경우 지구대의 지구대 경찰이 출동합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경찰서의 사복 전담형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의 동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고했음을 가해자/가족에게 고지해도 되나요?

가해자에게 고지하는 경우 거짓 진술을 준비할 시간을 제공하여 진술 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을 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신고 후에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합니다.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면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가 출동하기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있을 것을 권합니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어떤 협조가 필요한가요?

증언, 가족관계, 의심되는 가해자 등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능하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이후에도 요청사항에 협조합니다.

5. 신고자 신변안전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산불 신고처럼 명백한 진술이 없다면 가해자는 미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적 보복이 우려되면 신변 보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학대행위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아동학대 범죄라고 모두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상담/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요령





IV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방향



학습목표

-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천방향을 알아본다.

1. 영유아 보호를 위한 실천방향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를 위한 실천사항은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 관리와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무단결석하는 영유아에 대한 관리를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평소 영유아의 출결사항을 확인하며 결석한 영유아의 보호자와 연락하여 결석 사유를 확인하고, 무단결석 영유아에 대한 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무단결석 영유아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작성한다. 가정방문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공무원과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112로 신고 및 상담한다.

〈표 1-10〉 무단결석 영유아에 대한 관리대응

시 기	관리 및 대응
결석당일 (1일)	• (점검사항) 결석 영유아의 결석 사유를 확인하여 원장 및 원감에게 보고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하여 확인 • (행정사항) 무단결석 영유아에 대한 조치 결과 관리대장 작성
2일	• (점검사항) 결석 영유아의 출석 여부 확인 및 소재·안전 확인 • (조치사항) 영유아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육교직원,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가정방문결과 영유아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112)에 신고 • (행정사항) 무단결석 영유아에 대한 조치 결과 관리대장 작성 무단결석 아동 중 아동학대 신고 현황 교육청 /시군구 보고
사후관리	• (유관기관 연계) 수사기관에서 협조 요청 시 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 (무단결석 영유아 관리) 무단결석 영유아가 재 등원하였을 경우, 영유아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치 • (보호자 관리) 해당 보호자에 대해서는 면담 또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

출처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제1장 아동학대 예방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건강상태를 살피고, 평상시와 다른 상흔, 감정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며, 의심사항은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의심사항 기록 시 아래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으며, 1개 문항 이상 ‘예’ 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 이므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하여 아동학대가 조기발견 될 수 있도록 한다.

〈표 1-1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연번	체크항목	체크란 □	
1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	아니요 □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	아니요 □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	아니요 □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	아니요 □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	아니요 □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	아니요 □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	아니요 □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	아니요 □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	아니요 □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	아니요 □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	아니요 □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	아니요 □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예 □	아니요 □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	아니요 □
15	“아동학대 체크리스트”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사항:)	예 □	아니요 □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실천은 신고의무자로서의 의무이자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매일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계획 수립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관련 교육실시 시기 및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1-12〉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주기(총 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 내 몸의 소중함 • 내 몸의 정확한 명칭 •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 시청각 교육 • 사례 분석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며, 영유아가 구체적인 상황별 역할극을 통해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보육교직원 인식강화 및 지원을 위한 실천방향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며 영유아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조화롭게 성장·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을 통한 인식강화와 소통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 교육

현재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함으로써 관련법령과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 및 개입을 통한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에 대해 알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학대 등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며 즉시 대응할 수 있다.

더불어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교육과 재교육을 통해 전문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는 외부교육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아동 권리 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 아동발달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훈육방법, 보육의 기본방향 재정립 등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자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연간교사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어린이집 내에서 실시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사교육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아동학대 예방

〈표 1-1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교육 방법

구분	교사교육 방법
외부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하기
자체교육	• 어린이집 내 사례(본인의 경험 등)를 중심으로 상호 의견 나누기 • 어린이집 내 동영상 촬영 내용을 보며 상호 의견나누기 •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교육 듣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 바람직한 훈육방법 등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한 자체교육 수시 실시 • 보육교직원용 아동권리 자가체크리스트를 정기적으로 활용해보기 • 아동학대 예방 및 관련 규정들에 대한 스터디 모임 등

아동복지법에서 나타난 영유아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과 유엔권리협약에 나타난 영유아를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며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아동학대 예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법령 및 「2018 보육사업안내」,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에 다음과 같은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표 1-14〉 아동학대 예방 관련 지침 참고자료

구분	내용
영유아보육법	• 보육교직원 책무, 보수교육, 지도감독 관련사항 보육교직원은 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되며, 아동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고, 아동에게서 아동학대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 관련규정, 아동학대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 예방, 방지 관련사항 아동학대 정의와 금지사항 및 아동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18 보육사업안내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신고의무, 보육교직원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금지 위반 시 자격 취소,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 3-5 안전교육 및 사고대책 보육교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동을 체벌하지 않으며 특히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 아동이 아동학대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 안전관리 분야 아동학대 예방·조치를 위한 교육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숙지하며 가정에도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을 이해하여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보육교직원 간 소통하는 환경 조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린이집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보육교직원은 장시간 근무 하는 직업 특성과 학부모와의 관계, 업무과중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의 누적은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을 살펴보고 보육교직원간 상호 협력과 대화,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교사회의를 통하여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회의를 통한 도움 구하기

- 보육실의 어려운 상황은 주기적인 교사회의를 통해 도움을 구하기
- 영유아의 문제를 함께 파악하고 동료 간 협력하여 영유아에 대한 지도 방안 모색하기
- 학부모와의 관계 영유아의 생활지도 등에 대한 도움구하기
- 보육교사 직무 스트레스 조절 및 긍정적인 생활을 위한 조직체계 유연성 확보하기
- 과외업무 분장을 적절하게 나누어 직무 스트레스 감소시키기 등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여 직무스트레스 경감 및 보육교직원간 소통 증진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아동학대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상담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표 1-15〉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상담

구분	내용
상담대상	전국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상담신청	해당센터 홈페이지, 전화, 방문
상담유형	홈페이지 상담, 전화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상담내용	• 심리상담(나와 타인 이해하기, 스트레스 조절하기 등) • 심리검사(직무스트레스 검사, 투사 검사, 에니어그램 등)
상담장소	• 찾아가는 상담(신청 어린이집) • 내방상담(신청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프로그램 내용 예시	• 의사소통프로그램/ 나와 너 이해하기/ 스트레스 조절 • 수고했어, 오늘도(스트레스 그림검사, 인생그래프 그리기) • 에니어그램 성격유형검사 • MBTI 성격유형검사 • 보육교직원 직무스트레스 척도 검사 • 상담자가 찾아가는 상담 • 드라마 역할극 진행 •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및 타인이해 • 직장동료관계 향상을 위한 ‘함께 건너는 징검다리’ • 회복탄력성 점검을 통한 나만의 탕탱볼 키우기*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따라 상담 프로그램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보육교직원 상담서비스 이외에도 보육교직원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 및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의 상황과 보육교직원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 국가적 차원의 실천방향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와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률개정·제정 뿐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아동학대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포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 법령 개정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

법령 개정·제정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 감시망을 확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기관 확대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로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 및 신고 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아동을 위한 법적 지원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아동에 대한 전문적 지원 및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표 1-16〉 법령 개정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

구분	내용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기관 확대	•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제1호~5호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기관 삭제로 25개 직군의 신고의무자가 소속한 모든 기관이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교육기관으로 확대됨 〈개정 2017.10.24.〉 [시행일 2018.4.25.]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의무화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연 1회 의무화 [본조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9.1.1.]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2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본조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7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을 제공 [본조 신설 2017.10.24.] [시행일 2018.4.25.]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아동학대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사례를 관리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대응체계 구축과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위기아동조기발견 시스템은 2018년 전국으로 확대하여 장기결석, 건강검진 실시 정보 등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고위험가구를 예측하고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복지 서비스 및 학대 징후를 판단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위기아동 모니터링 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며,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학대조사, 사례 관리, 피해아동 보호 등 종합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제1장 아동학대 예방

〈표 1-17〉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구분	내용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 자료연계: 장기결석·건강검진 미 실시 등 정보수집(행복 e음 등) • 아동학대 고위험가구 예측 • 방문확인: 읍면동 공무원, 복지수요 및 학대 징후 판단 • 사례관리: 아동복지 서비스 연계, 위기아동 모니터링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 아동학대 범죄 전문수사를 위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전담검사와 여성 청소년 수사팀 배치 • 피해아동 격려·보호조치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아동피해쉼터 확충 • 아동학대 예방경찰관을 배치

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보도참고자료(2017.3.27.) 아동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1.18.).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형 복지국가를 구축한다.”

•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과 신고참여 독려를 위해 정부의 범부처 합동 Catch 캠페인으로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고, 2017년 12월 아동 콘텐츠 전문기업과 협약하여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 공감형 홍보·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영유아 스스로 학대 인식을 갖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 1-18〉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원

구분	내용
부모역량 증진 지원	•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한 부모에게 자녀 양육 관련 교육영상 필수 시청 • 취약가정 부모 대상 가족 상담 부모교육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등
아동인식 개선 지원	• 영유아 눈높이에 맞는 아동학대 예방관련 콘텐츠 제작하여 배포 • 스스로 학대인식을 갖도록 리플릿, 교육영상 제작 배포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	• 아동학대 예방의 날(매년 11월 19일) 및 아동학대예방주간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관련 행사와 홍보 •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보도참고자료(2017.3.27.) 아동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도자료(2017.12.12.) 아이들 친구 캐라멜라캐빈, 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전도사 되다!





보육교직원 아동권리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아동학대 행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고 아동학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아동권리에 대해 보육교직원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집 원장 및 교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교직원들의 정기적 사용을 권장합니다.

※ 해당하는 문항에 체크(✓)하시고 점수를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해보세요.

항목	전혀 없음	1회	2회 이상	거의 매일
1 아동에게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한 적이 있다. •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한 적이 있는 경우 : 돼지야, 이 못생긴 게, 멍청아, 바보, 나가죽어라 등. • 아동을 비판, 비난, 조롱, 모욕, 우롱한 적이 있는 경우 : 넌 혼자 이것도 못하니, 애비 없는 자식, 너처럼 못하는 아이는 처음 봤다며 무시하는 행위 등				
2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음식을 먹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연령이 낮은 반으로 보내서 아동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3 아동에게 위협을 주는 언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숫자 다 셀 때까지 해, 엄마한테 일찍 데리러 오지 말라고 할거야, 동생반이 나 원장반으로 보내버릴거야, 엄마아빠한테 이를거야, 집으로 내쫓을거야, 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아동이 바깥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				
4 아동에게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한 적이 있다. 아동에게 종사자 간 싸움 장면을 노출시키는 행위, 원장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다른 아동이 목격하는 경우 등				
5 도구(자, 화초리, 긴 막대 등)로 아동을 위협한 적이 있다.				
6 화장실, 창고 등의 아무도 없는 빈 장소에 벌을 세우기 위해 아동을 가둔 적이 있다.				
7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아동을 재촉하거나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아동에게 고향을 지른 적이 있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혼자 놔두고 갈거야!				





제1장 아동학대 예방

	항목	전혀 없음	1회	2회 이상	거의 매일
8	아동의 신체부위를 때린 적이 있다 맨손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랑의 매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때린 행위 등				
9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은 입히지 않았지만, 고의적으로 아동의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아동의 팔을 당겨 서두르게 하는 행위, 아동의 머리나 엉덩이를 치며 행동을 중지시키는 행위,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입을 벌려 먹이는 행위, 아동을 꼬집거나 잡고 흔드는 행위, 목을 잡고 조르는 행위 등				
10	낮잠시간이나 놀이시간 등에 아동을 혼자 있게 하거나 아동 간 다툼을 방치한 적이 있다				
11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아동이 적절한 음식을 충분히 제공받도록 하지 않거나, 식사 때가 되어도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상한 음식을 아동에게 주는 행위 등				
12	아동을 위험상황이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한 적이 있다 아동이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두는 행위, 아동이 자는 낮잠시간에 책상 위에 의자를 두는 행위,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는 행위, 아동이 흘린 음식을 먹게 하거나 기저귀를 긴 시간동안 갈아주지 않는 행위 등				
13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적이 있다 아동이 몸이 아프다고 해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등				
14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하거나 아동의 신체를 노출시킨 적이 있다 기저귀갈이 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생식기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사람들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히거나 용변을 보도록 하는 행위				
15	음란비디오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사용방법

- 사용주기: 근무개시 1주일 이내에 필수, 이후는 분기별 혹은 반기별(연 2회 정도) 사용을 권장합니다.

분류	세부내용
없다	당신은 아동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개 이상 '있다'에 체크	'예'에 해당되는 항목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



보육교직원 영유아권리선서

우리는 보육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유지하고
영유아의 권리보호, 존중, 충족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가 차별없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돕는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에게 충분한 영양과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가 자신의 욕구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의 발달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보육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영유아 존중을 바탕으로 일체의 체벌을 포함한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보육활동에 부모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전문가 연계를 통해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2018년 월 일
보육교직원



제2장 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I

성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학습목표

- ▶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을 알아본다.

1. 아동 성폭력 이해

1) 아동 성폭력 예방의 필요성

성폭력 예방교육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발달, 권리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이현혜, 2011b).

최근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대, 살인, 성폭력 사건 등이 몇 년 사이에 많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충격과 불안에 떨게 하였다. 아동은 한 가정의 희망이자 사회와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할 미래이다.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노력은 국가, 지역사회, 학교, 부모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적 대우,
성적학대를 포함한 폭사나 착취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19조 -

2) 아동 성폭력(성학대)이란?

아동 성폭력은 성인 및 아동이 자기보호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
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범죄 행위이다. 아
동 성폭력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





제2장 성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진 범죄행위로 ‘아동 성학대’라는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아동 성폭력은 아동을 대상으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가해자의 성적 욕구 충족 및 성적 착취 등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며, 힘의 차이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역할관계, 연령, 지적 수준, 사회적 지위 차이 등을 포함한 힘의 불균형 상태를 말한다. 또한 또래 아동 사이에서의 성적 호기심, 성적 놀이로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한다면 또한 성폭력이 될 수 있다.

아동 성폭력은 접촉하는 행위와 접촉하지 않는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폭력의 영향은 접촉을 했는가 안했는가보다 아동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은 달라진다(이현혜, 2011b).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특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처벌 가능

‘성적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행위로서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폭력 혹은 가혹행위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성학대의 예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
-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가슴 그리고 엉덩이나 배 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을 원하지 않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빼는 것
- 성기나 가슴과 같은 중요한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는 것
- 원하지 않는데 자기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
-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신체 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것
- 야한 비디오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 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아동이나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것
- 아동이 스스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어른이나 나이 많은 청소년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것





3) 아동 성폭력의 위험성

아동 성폭력은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기 쉬운 사람(동네사람, 통학버스 기사, 교사, 경비원, 친부, 계부, 삼촌, 이모부, 사촌, 형제, 할아버지 등) 즉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2015년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전체 건수는 1,308건이었다. 그 중 13세 미만 아동성폭력은 157건으로 전체 상담수의 11.3%를 차지했다. 이들 중 7~13세 아동은 65.7%, 7세 이하는 58.5%가 친족 및 친인척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이 수치는 외형적으로 파악된 것만 집계한 탓에 실제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보태면 더욱 커질 수 있다.

아동은 성폭력 범죄에 있어 매우 취약한 지위에 놓여 있다. 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가해자의 협박이나 길들이기 과정에 의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므로 아동 성폭력의 피해는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가해할 아동이 취약한지 살펴보는데, 고립되어 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수동적인 아동에게 접근할 가능성이 많다. 최근 10년간 일어난 아동학대 유인범 250명을 분석한 결과 장난감이나 놀이를 통한 호기심 유발형이 35%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KBS 추적60분, 2009). 가해자는 보통 아동들에게 신체적 힘을 가하지 않고 놀이, 속임수, 위협 등의 형태로 아동을 침묵하게 만든다. 그런데 아동이 성장하면서 친밀감이 아닌 성폭력이었음을 인식하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 아동은 다른 사람들과 신뢰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아동은 정확한 피해 진술이 어려우며 범죄사실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언어능력의 미숙과 기억의 해리현상이라는 한계로 인해 증언의 증거능력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전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은 즉각적인 심리적·정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성폭력을 미리 막으려면 위기 시에 아동에게 대처하라고 가르치기보다 우리 어른들이 예방과 지지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 성폭력 발생 현황

아동 성폭력 발생 건수를 보면 2015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272건이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2006년 946건에서 2008년 1,208건으로 증가하였다. 그 이후부터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34.5% 증가하였다 (법무부, 2016).





제2장 성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그림 2-1]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의 발생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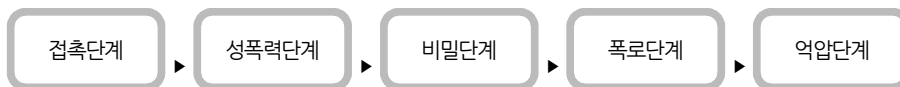
출처 : 법무부(2016) 범죄분석

13세 미만 아동피해자의 86.3%가 여아이다. 전체의 13.7%만이 남아이었는데, 이는 13세~20세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남자피해자가 5.1%라는 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97.9%는 남성이고, 51세 이상의 고령 범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5) 아동 성폭력 발생 단계

아동 성범죄는 성인의 성범죄와는 달리 폭행 협박보다는 유인에 의한 피해가 많다. 아동 성범죄 발생 단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2] 아동 성폭력 발생 단계

① 접근단계

가해자는 피해 아동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특정 장소에 둘만이 있는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며 아동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게임이나 놀이, 선물, 먹을 것 등으로 아동을 유인한다.

② 성폭력 단계

가해자가 아동에게 실제 성폭력 행위를 하는 단계이다. 이 행위는 노출에서 성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③ 비밀단계

성폭력 이후 가해자는 아동에게 비밀 유지를 강요하며, 이런 비밀 유지는 가해자에게 있어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성폭력을 지속시키는 수단이 된다.

④ 폭로단계

성폭력 피해 아동이 말을 하거나 제 3자의 관찰 또는 피해 아동의 성병 감염, 임신, 조숙한 성 행동화 등에 의해 피해 사실이 주변에 폭로되기도 한다.





⑤ 억압단계

가해자와 피해 아동 주변인들이 억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 사실을 축소·왜곡하는 단계이다. 피해사실이 폭로 된 후 가해자는 성폭력 사실을 부정하고 아동의 피해 주장에 대해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한다. 또한 피해 아동의 가족들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피해 아동에 대한 낙인 등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불편해한다. 성폭력이 가족 내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런 억압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인천광역시 교육청, 2015).

그루밍(Grooming)

인터넷에 '그루밍'을 검색하면 고양이와 자기 몸을 핥고 있는 사진이 나온다.

- groom(그룸)의 첫 번째 뜻 '손질하다, 다듬다'와 관련이 있다.
- groom의 두 번째 뜻은 '특별 한 목적이나 행동을 위해 누군가를 준비시키거나 교육함'이다. 그루밍은 여기서 파생한 단어다. 성범죄자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고르고, 피해자에게 신뢰를 얻고, 성폭력을 가한 후 피해자를 통제하는 모든 과정을 그루밍 혹은 길들이기라고 부른다.
 - ▶ 아이에게 성적인 질문, 농담을 하는 것
 - ▶ 아이가 볼 수 있는 곳에 음란물을 놓아두는 것
 - ▶ 음란물을 권하거나 제공하는 것
 - ▶ 성장을 체크한다며 몸을 살피는 것
 - ▶ 아이가 옷을 입거나 목욕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
 - ▶ 간지럼을 태우거나 레슬링 등 몸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 ▶ 애정의 욕구를 채워줌
 - ▶ 선물이나 특별한 특권을 줌

출처: 네이버 영어사전, 이현혜(2014) 대상별 성폭력의 이해

피해 아동이 갖는 내적인 신념

- “‘싫어요’ ‘안돼요’라고 하라 했는데 그렇게 못해서 혼날 거야!”
- “내가 말하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거야”
- “이건 내 잘못이야”
-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 “나는 나쁜 아이야”
- “우리 가족이 해체되면 어쩌지”





6) 아동 성폭력에 대한 통념

사람들의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다. 잘못된 인식은 성폭력의 피해 책임을 가족이나 아동에게 전가하고 더 나아가 가해자를 옹호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가해자는 강자, 피해자는 약자로 힘의 불균형을 내면화 시킨다.

① 아동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 내용에 대해 자꾸만 물어보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묻지 말아야 한다?

“NO” ▶ 성폭력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피해 내용을 말하지 못하고 숨긴다면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알고 죄책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여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 다만, 추궁하듯 캐묻거나 말을 막거나 단정적으로 미리 판단해 말한 후 “그렇지?”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럴 경우 아동의 진술이 혼란되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진술은 경찰이나 상담전문가 입회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아동과 성인사이의 성적 접촉이 강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동에게 해롭지 않다?

“NO” ▶ 아동과 성인과의 성적접촉은 물리적인 힘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동은 강제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른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성학대를 가하는 성인을 거부하기 어렵다.

③ 성폭력을 당했다는 아동의 말은 거짓말인 경우가 많다?

“NO” ▶ 아동이 성폭력에 관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른들은 아동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의 말을 믿기보다 상대적으로 어른의 말을 믿는다. 그러나 아동들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코 흥분하거나 아이 말을 막지 말고 차분히 들어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동센터 등에 연락해 상담하고 도움을 청한다.





④ 아동 성폭력은 항상 어른들이 저지른다?

“NO” ▶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 서울 해바라기센터 사업보고에 의하면, 2015년 18세 미만 청소년 가해자가 55.1%를 차지한다. 어느 정도의 성적 호기심과 성적 탐구는 비슷한 연령의 아이에게 있을 수 있지만 성인과 같은 성적 행위를 강요하면, 그것은 폭력행위가 되는 것이다.

⑤ 아동 성폭력 피해는 크면 잊기 때문에 문제를 키우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아이를 위해 좋다?

“NO” ▶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의 가족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감추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많다. 성폭력 사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 피해일수록 정확한 진단과 전문적인 치료 및 장기적인 관찰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피해자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고 가해자가 잘못이며 벌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된다. 적절한 치료와 보살핌을 받는다면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치료될 수 있다.





2.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아동은?

최근까지 이루어진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은 ‘안돼요, 싫어요’ 라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대처하는 기술을 익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교육은 아동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교육이다.

1) 이야기를 잘하는 수다쟁이 아동!

가해자의 길들이기(grooming) 과정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기표현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적절한 의사소통은 아동의 취약함을 줄이고 아동이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교사가 아동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 아동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게 되고 교사는 적절한 성폭력 예방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이현혜, 2011b).

•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으며 필요할 때는 선생님이 언제든지 도와 줄 거라는 생각이 들게 해 주기
아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할 때 “잠깐만”, “나중에”라는 말은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라면 아동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아동과의 대화를 통해 친밀감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아동은 선생님과 많은 것을 나누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이현혜, 2011b).

- 아이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지지와 공감을 하고 칭찬해 주기
- 선생님의 감정도 표현하고, 화가 나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보여주기
- 따뜻함을 충분히 준 후 분명한 체계주기

2)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아동

인권존중과 배려의 가치가 전제되어 있는 경계존중 교육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실천법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개인 간에 사적인 영역이 존재, 이를 ‘경계’라고 한다. 경계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물리적 경계, 신체적 경계, 언어적 경계, 정서적 경계, 시각적 경계가 존재한다.





‘경계’가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일상생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 경계의 원칙 1 : 나의 경계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해야 한다.
- 경계의 원칙 2 : 상대방이 경계를 침범, 침해할 경우 “NO”라고 말한다.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선생님과 아동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가족끼리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한 규칙을 같이 정한다.
- 상대방이 “NO”라고 하면 “NO”를 수용해야 한다. “NO”를 수용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이다 (이현혜, 2011b).

3)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을 구분하는 아동

좋은 접촉은 기분이 좋아지는 접촉으로 부모나 교사가 칭찬해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거나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해줄 때, 친한 친구와 손을 잡고 학교 갈 때 등이며, 나쁜 접촉은 어른 또는 친구가 나의 가슴이나 생식기를 만지거나 보여줄 때,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을 할 때, 벗은 몸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줄 때 등임을 알게 한다.

그 누구도(의학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자신의 수영복으로 가린 부위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나쁜 접촉으로 인한 나쁜 느낌이 들거나 또는 어떠한 느낌인지 잘 모를 때 매한 경우에도 부모나 교사 등에게 꼭 이야기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평소 좋은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느낌을 경험하게 하자.

4) 지켜야 할 비밀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비밀에 대해 아는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죄를 지속하기 위해 아이에게 비밀유지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비밀이 드러났을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좋은 비밀이며, 부모 등 가족에게 말하지 말아야 하거나 말하지 말라고 강요를 받은 비밀은 나쁜 비밀임을 구분하고, 나쁜 비밀은 꼭 부모, 교사 등에게 말해야 함을 가르쳐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쁜 비밀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런 비밀은 부모님, 선생님께 꼭 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도록 한다.





3.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

성폭력 예방교육을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라.’, ‘싫어요!, 안돼요!, 소리쳐!’ 라고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이 교육은 성폭력을 예방하기보다 성폭력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가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예방 교육의 경우에는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이 성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관심을 보일 때 교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함께 자기보호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소에 지도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친다.

- 자신과 타인의 몸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친다.
-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전화해보기 연습을 해 본다.
-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하거나, 인형이나 강아지를 보여줄 테니 같이 가자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낯선 어른이 도와 달라 부탁할 때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기분이 나빴어요.’, ‘무서웠어요.’ 등)를 표현하도록 한다.
- 아동 스스로가 다른 친구의 신체 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2) 일상에서 어른이 해야 할 것을 알고 교육시 활용한다.

- 저 연령의 아동에게는 신체구조와 차이에 대해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깨우쳐 준다.
- 아동은 자신의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알고 부모를 비롯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 등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외우게 한다.
- 항상 어디를 가든지 꼭 부모나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먼저 허락을 받도록 지도한다.
- 몇 번 본 적이 있거나 아는 척을 해 오는 사람이 ‘아는 사람’ 또는 ‘안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아이가 생각하는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물어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 만약 누군가(아동이 신뢰하는 어른일지라도) 자신의 몸을 만져서 혼란을 느낀다면 교사나 부모에게 언제라도 이야기하라고 일러주며, 반대로 아동 스스로가 다른 친구의 신체 부위는 함부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지도한다.





제2장 성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 집에 혼자 있을 때에는 문을 잠가두도록 지도하고, 부모가 허락한 친척이나 친구가 아니라면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가르친다.
- 아동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경찰, 지구대, 주민자치센터 등)의 위치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성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익히도록 한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발견한 후 처음 해야 할 행동은 신고하는 것이다. 아동 성폭력은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의료, 상담,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경찰 신고를 대비하여 피해 당시의 시각, 피해 장소, 피해 유형, 피해 당시의 옷, 가해자의 특성 등을 메모해 놓는다.
- 특히 정액과 같은 증거물이 남아있다면 종이봉투에 넣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 근거는 진찰을 받아야 얻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 부모에게 연락하고 부모와의 의견을 모아 대응 방법을 모색한다.
- 전문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의료적인 처치 외에 법률 지원을 위한 진술조사 등 증거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4)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해 인지한다.

아동 성폭력 신고의무(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 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한 명의 아동을 구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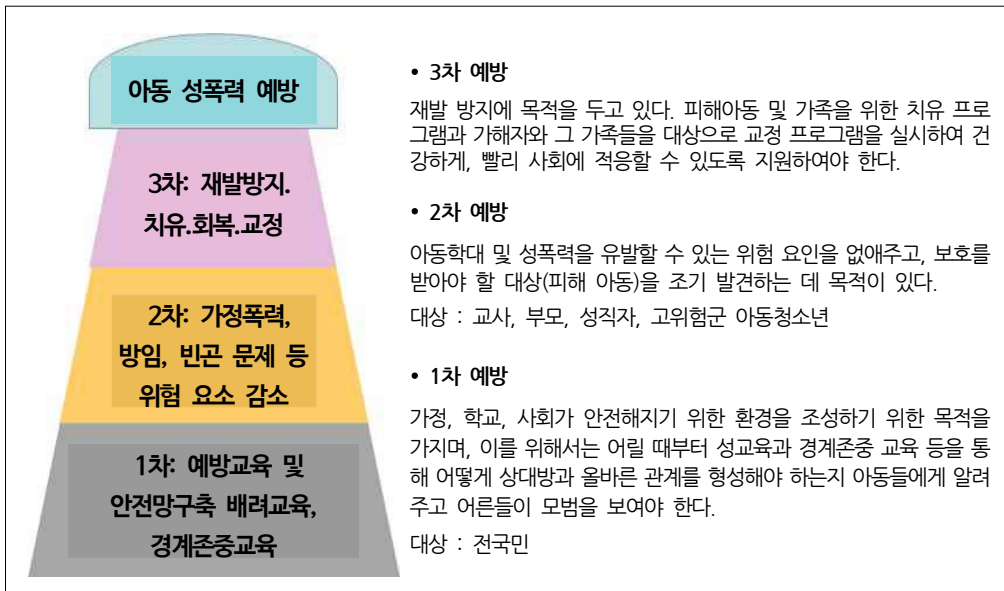
성 학대를 당한 아동이 불안함 때문에 진술을 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 평소 아동과 친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진술 조력인이 되어 아동을 안심시켜 진술하게 하고 이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어 친부는 처벌을 받은 사례.





4.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어른이 예방교육의 주 대상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출처 : 이현혜(2011b), 부모, 교사가 알아야 할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천 매뉴얼 개발





5. 성폭력 피해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

○ 해바라기 아동센터

- 성폭력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종합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아동 중심의 종합서비스와 전문가 그룹에 의한 후유증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 및 보호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는다.
- 홈페이지 : www.child1375.or.kr
- 전화 : 02-3274-1375

○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상담과 교육, 사후관리 등 각종 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한다.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아동
- 전화 : 전국 61개 아동보호 전문기관(부록2참고)

○ 여성긴급전화 1366

- 1차 긴급 상담 서비스를 연계한다.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기타 여성폭력 상담 및 보호시설을 연계한다.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1366 / 1년 365일 24시간 HOT-LINE 운영



성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10계명

아이들이 기억해요.

1.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인터넷에서는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보호자와 매일 이야기해요.
2. 내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요.
3. 등학교는 가능하면 보호자와 함께 해요. 아이들끼리만 다닐 때는 밝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로 여럿이 함께 다녀요.
4. 보호자의 허락 없이는 놀러가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거나 음식이나 선물을 주려고 하면 “부모님께 허락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거절해요.
5.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나쁜 감정이 있었다면, 또 내 몸을 만져서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보호자에게 이야기해요.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분을 만진 사람이 있다면 꼭 말하세요.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1. 항상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아이 안전을 지켜요. 보호자는 아이가 24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2. 아이가 “싫다”고 했을 때 보호자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3. 아이와 함께 안전계획을 세워요. 아이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등학교 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아동안전지킴이집, 주민 자치센터, 경찰, 공공기관 등) 이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 이용 시 주의할 점을 미리 알려주세요.
4. 모르는 아이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하지 말아 주세요.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5. 아이가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갖도록 생활 속에서 교육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신고해요.

출처 : 여성가족부 · 교육부(2013) 우리 아이 지키기 10계명





II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학습목표

▶ 실종아동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 및 실종 대처방법을 알아본다.

1. 실종아동에 대한 이해

1) 실종아동의 정의 및 유형

실종아동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 등을 말한다. 실종아동의 유형은 아래와 같다.

〈표 3-1〉 실종아동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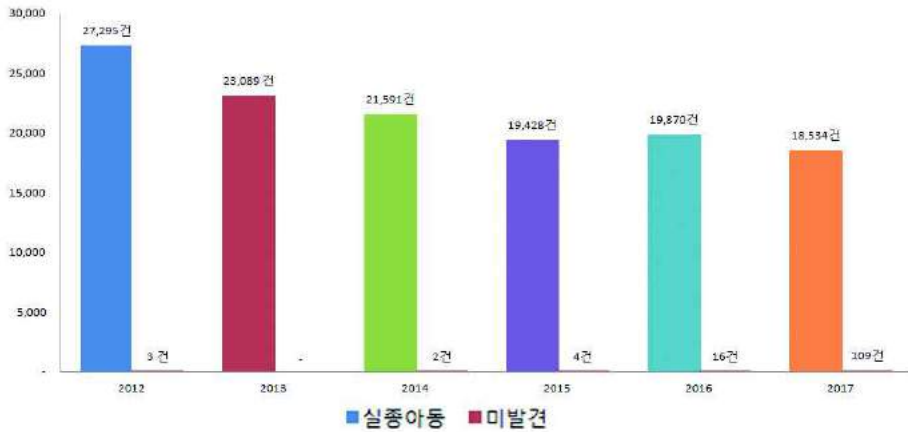
실종아동의 유형	
미아	공공장소 등에서 아동이 길을 잃은 경우
유괴	금전, 성적 만족, 양육 등의 목적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
가출	아동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
사고	사고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유기	보호자가 아동을 버린 경우

출처 : 실종아동전문기관(2016). 아동실종·유괴예방을 위한 교사 자료집

2) 실종아동 발생 현황

실종아동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실종아동의 발생은 2012년 총 27,295건에서 2017년에는 총 18,61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18,500명 이상의 아동이 실종되었다가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으며, 복귀하지 못한 미발견 아동도 2017년에는 109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 실종아동 발생현황

자료제공 : 실종아동전문기관

3) 실종으로 인한 문제

실종발생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영유아가 부모와의 분리로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문제의 당사자인 실종가족들은 슬픔, 죄의식, 죄책감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겪으며, 많은 경우 가족 관계 갈등을 야기하여 가정이 해체될 수 있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하여 실직이나 이직을 경험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동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실종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가정 해체에 따른 손실 발생 및 실종아동 보호 양육과 실종 가족지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표3-2〉 실종으로 인한 문제

구 분	문 제
개 인	• 부모와의 분리 경험 •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위협
가 족	• 심리적 어려움, 육체적 건강상태 저하 • 사회적 관계 위축, 경제적 상황 악화, 가족해체
사 회	• 사회적 비용 손실 • 사회적 불안 야기

출처 : 실종아동전문기관(2016). 아동실종·유괴예방을 위한 교사 가이드





2. 실종 유괴 예방교육

「아동복지법」 제31조와 시행령 제28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종·유괴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 이상(연간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표 3-3〉 영유아에 대한 실종유괴 예방교육

실시주기(총 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
3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 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 유괴범에 대한 개념 • 유안·유괴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 시청각 교육 • 사례 분석

출처 : 보건복지부(2018). 2018 보육사업안내

1) 영유아 실종유괴 예방교육의 방법

영유아의 실종·유괴 예방교육은 영유아와 함께 자극을 강화하고 학습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실제 상황에서의 판단력을 체득할 수 있도록 역할극 등을 통해 밝은 분위기 속에서 재미있게 관심을 유도하며, 연령별 특성 및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추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표 3-4〉 연령별 교육방법

구 분		교 육 방 법
3~5세	특 성	머릿속 생각이 아닌 육체적 경험을 통해 지식을 내재화 함
	지도법	역할극 등 구체적 교구를 활용한 실물을 통해 실제적으로 교육해야 함
	예 시	만약 아저씨가 과자를 사준다고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상경험, 구체적 교구 활용)

출처 : 실종아동전문기관(2016). 아동실종·유괴예방을 위한 교사 자료집





2) 영유아 실종유괴 예방교육의 내용

(1) 미아상황 대처방법 교육

미아 상황은 익숙한 장소에서도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영유아는 미아 상황에서 불안,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미아상황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겪을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대비하여 미아 상황을 가정하고 반복 연습(훈련)을 하면서 영유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대상을 선별하고, 미아 상황에서의 3가지 수칙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아상황의 3가지 수칙

1단계 멈추기	• 제자리에 멈추고 기다리기 교사나 부모가 영유아와 왔던 길을 되짚어 갔을 때,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제자리에 잘 있어 준다면 영유아를 쉽게 찾을 수 있음
2단계 생각하기	• 이름과 연락처 생각하기 영유아가 자신의 신상명세를 기억하도록 노력하며, 10번씩 외우면서 기다리도록 하고 보호자는 빠른 시간 내에 영유아를 찾아가야 함 ※ 영유아가 평소 자신의 이름과 부모님 이름, 부모님, 연락처, 주소 등을 잘 외우고 있더라도 일이 발생되면 쉽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평소에도 연습하여 익숙해지도록 함
3단계 도와주세요	• 주위에 도움청하기 보호자가 찾으러 오지 않으면, 아이와 함께 있는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공중전화에서 112를 눌러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함 ※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른의 신분이 확인될 수 있는 건물 안의 가게(밖에서 내부가 보이는 가게)에 들어가 도움을 구하도록 교육

출처 :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 유의사항

미아 상황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 조성은 금물이다.

- ▶ 미아 상황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언급은 불필요하다.
- ▶ 미아 상황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죄책감은 상황 대처에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2) 유괴상황 대처방법 교육

가족 외의 모든 사람이 무조건 위험하고 나쁜 사람이지는 않지만, 유괴범은 낯선 사람을 포





제3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함하여 영유아와 안면이 있거나 심지어 부모와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으므로 위험한 사람을 미리 인지하고 피하기는 어렵다. 평상시 장소, 인물, 상황을 가정하고 반복연습(훈련)을 하며, 실물을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착하고 예의바른 것보다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불쾌하거나 불편할 때에는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영유아는 학습을 통해 형상화된 공포심을 지니고 있어 험악하고 무서운 인상의 모습을 한 사람을 유괴범(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절대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도록 가르치되, 위험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분하는 것보다 절대 보호자의 허락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되며, 보호자에게 먼저 허락받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괴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3가지 수칙(‘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괴상황의 3가지 수칙

1단계 안돼요

- **안돼요! 허락받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어요!**
영유아에게 좋아하는 것을 주거나 도와달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도,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따라가지 않음

2단계 싫어요

- **싫어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영유아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거나, 영유아의 마음이 약해지도록 도와달라고 하면, 분명하게 ‘싫어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함

3단계 도와주세요

- **도와주세요!**
영유아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는 큰소리로 도움을 청함
※ 단, 소리치는 것이 생명에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
▶ 개방된 공간에서는 ‘싫어요, 도와주세요’를 크게 외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도록 함
▶ 폐쇄된 공간에서 성폭력과 같은 위험한 상황일 경우는 심하게 거부하는 행동이 오히려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줌

※ 만약 유괴를 당했다면

- ▶ 격리된 공간에 유괴범과 단둘이 있을 때는 울음을 참고 고분고분할 것
- ▶ 고개를 숙이고, 유괴범의 얼굴을 가급적 보지 말 것
- ▶ 음식을 주면 먹기 싫더라도 꼭 먹을 것
- ▶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출처 :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





(3) 아동 실종·유괴 유형별 교육방법

아동 유괴범죄의 유형은 호기심 유발형, 지인 사칭형, 동정심 유발형, 물리적 강제동원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아동실종·유괴예방을 위한 교사 자료집에서 유형별 특성과 지도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3-5〉 아동 유괴범죄의 유형 및 지도방법

호기심 유발형	영유아가 좋아할만한 것(간식, 경품추첨 등)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유인하며,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영유아의 심리를 이용하여 경계심이 풀어지는 때를 노림 ☞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는 물건을 절대 받지 말고, 먼저 보호자의 허락을 받도록 지도 ☞ 영유아가 먹을거리 등을 받아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지도 ☞ 반드시 꼭 필요한 물건은 보호자(부모)가 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도
지인 사칭형	부모님과 잘 아는 사이, 이웃 등으로 가장하여 친근감 있게 접근함. 이름을 부르거나 말을 걸며 안심시킨 후 영유아가 경계를 늦추는 심리를 이용함 ☞ 이름을 알고 있거나 얼굴을 아는 사람도 반드시 보호자에게 먼저 허락을 받도록 지도 ☞ 아무리 급한 경우라도 먼저 보호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와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믿을 수 있는 사람(친인척)의 연락처를 암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
동정심 유발형	아픈 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길을 물어보며 영유아의 동정심에 호소하여 동정심과 착한 행동을 칭찬받고 싶은 보상심리를 이용함 ☞ 예의바르고 착한 것보다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도록 지도 ☞ 직접 도와주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 어른에게 다른 어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절을 베푼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지도 ☞ 정상적인 어른은 절대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도록 지도
물리적 강제동원형	저항하는 영유아를 물리적인 힘으로 억지로 유괴함 ☞ 누군가 강제로 데려가려 하면 밝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안돼요.”, “싫어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

아동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위한 콘텐츠 활용 방법

아동 실종·유괴예방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는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www.missingchild.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미야예방과 유괴예방 2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제는 <상황알기-감정 이해하기-대처방법 알기-실습하기-리뷰하기>로 나뉘어져있고, 실종예방 퀴즈도 활용할 수 있다. 아동의 연령대나 교육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활용한다.





3. 실종 대처방법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지침

순간적인 부주의로 실종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모는 아래와 같이 대비해두는 것이 좋다.

첫째, 아동의 지문 등 사전정보를 미리 등록한다. 경찰청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으면,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할 수 있다. 안전Dream홈페이지(안전Dream 앱),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등록 가능하다.

둘째, 아동을 혼자 두지 않는다. 가정에서는 잠시 외출한다고 아이를 혼자 두고 나오면 아이가 집 바깥으로 엄마를 찾으러 나올 수 있으며, 특히 아이가 잠든 틈에 외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외출할 때는 친척이나 이웃에게 자녀를 돌봐 달라고 부탁한다.

셋째, 항상 아동과 함께 다닌다. 가까운 곳에 외출했을 때에도 잠시도 아이 혼자 두지 않아야 하며, 특히, 가까운 백화점·슈퍼마켓·시장·쇼핑몰·영화관·공원·공중화장실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실을 혼자 가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동차 안에 혼자 두는 것도 위험하다.

넷째, 실종아동 예방용품들을 활용한다. 아동이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못하는 경우 이름표를 착용하게 하고,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을 때에는 바깥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주는 것이 좋다. 낯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동에 관한 정보들을 기억한다. 아동의 키, 몸무게, 생년월일, 신체특징, 버릇 등 상세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실종아동 예방 및 실종아동 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가정에서는 매일매일 자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해두고, 아동의 인적 사항을 적어 둔 카드를 집에 비치해 둔다.

여섯째, 아동의 하루 일과와 친한 친구들을 알아둔다. 아동이 놀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재빨리 수소문해 볼 수 있으려면 하루일과와 바깥에 있는 아동이 구체적인 어디에서, 누구와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외출할 때에는 누구와 가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어디로 가는지 등을 물어보고 시간 약속을 지키도록 가르친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아동사진을 찍어둔다. 실종아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아동의 사진이다. 영유아기는 특히 성장이 빠르므로 너무 오래된 사진은 실종아동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가능한 정기적으로 아동의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2) 실종신고 요령

실종아동 발생 시 국번없이 112 또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182로 신고한다. 실종신고를 할 때 서두르다보면, 자칫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쉽다. 아동에 대해 가능한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을 찾는 데 중요하다.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신고할 때는 침착하게 아래의 사항을 신고한다.

실종 발생시 신고 사항

- 아동의 이름
- 아동의 나이(생년월일)
- 잃어버린 일시와 장소
- 잃어버리게 된 자세한 경위
- 실종 발생 당시 아동이 입고 있던 옷차림과 신발, 소품, 신체특징(얼굴모양, 머리모양, 흉터나 점 등의 여부, 안경착용여부, 키, 몸무게 등)
- 아동의 최근사진(가능한 다른 모습이 담긴 최근 사진 여러 장)
- 부모 이름 및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연락처, 주소

3) 실종아동 발견 시 지침

길을 잃은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도와주면 대부분 부모의 품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첫째, 아동이 한눈을 팔았거나 보호자의 부주의로 아동과 떨어진 경우 보호자는 대개 가까운 장소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동을 절대 다른 곳으로 데려가거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아야 하며, 아동이 있는 장소에 그대로 서서 일단은 아동의 보호자를 기다린다.

둘째, 아동에게 이름과 사는 곳,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주며 달랜다. 평소 똑똑한 아동도 길을 잃고 겁에 질리게 되면 묻는 말에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으므로 아동의 불안한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안내방송이 가능한 시설의 경우 안내데스크나 방송실에 실종아동 찾기 안내 방송을 요청하면, 안내방송을 해준다. 아동을 실종아동 보호센터나 경찰서, 파출소 등에 인계하는 경우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경찰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아이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을 남겨 둔다.

- 출처: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www.safe182.go.kr)





[참고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2016).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학대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문선화 외(2010). 아동학대의 이해. 양성원.
법무부(2017). 우리아이들을 지키는 법.
법무부(2016). 범죄분석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요령.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15). 우리아이 지킴이 가이드.
실종아동전문기관(2016). 아동실종·유괴예방을 위한 교사 가이드.
실종아동전문기관(2016). 아동실종·유괴예방을 위한 교사 자료집.
실종아동전문기관(2016). 지적장애아동의 실종·유괴 예방을 위한 매뉴얼.
한국보육진흥원(2012). 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5). 성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 자료집.
이현혜(2011a),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패러다임 변화,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 교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2011b), 부모와 교사가 알아야 할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실천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 교육청(2015), 교사 학부모를 위한 성폭력예방 가이드북(초등).



부록1.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2018년 1월 기준)

시도명	기관명	주소	기관 대표번호
서울	중앙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층(서계동)	02)701-043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5 연호빌딩 3층	02)772-9814~8
	서울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72길 7(대치동 961-17)	02)546-1736~7
	서울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6길 16(성내동 556-1)	02)486-3556
	서울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66길 9(수유동 410-293)	02)994-7480
	서울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 2길 50(내발산동)	02)2064-2730~2
	서울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128 2~3층(봉천동)	02)851-2834~5
	서울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56가길 31 3층(군자동)	02)467-1827~9
	서울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03 우리은행 구로동지점 3층(구로동)	02)859-5432, 5678
	서울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시흥동)	02)894-2264~5
	서울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층(상계동)	02)930-1944
	서울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2길 28(방학동 306-10)	02)3494-3341~2
	서울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대문구황물로62(답십리동)	02)2237-5800, 02)2247-5843~5
	서울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대방동 385-2 3층)	02)823-4567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1길 71(상암동 1686)	02)308-0202
	서울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구보건소 별관 우리들 1층(홍은동 425-3번지)	02)3217-9550
	서울서초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46(서초동)	02)598-9340, 596-9340
	서울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계로 160(상왕십리동)	02)499-5675~6
	서울성북구	서울특별시성북구오패산로10길19(하월곡동222-6)	02)918-8080~2
	서울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오금동 50번지)	02)449-0505(내선2번)
	서울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3층(신정동)	02)2646-7790~1
	서울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40길 5(신길4동 232-20)	02)833-6022, 6025
	서울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꿈나무종합타운 2층	02)749-9673~4
	서울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5가길 4(구산동)	02)351-3629/3630
	서울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1길 6-3(명륜3가동 147-1번지), 3~4층	02)737-0890/735-0850
	서울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길 5(신당동 292-60)	02)2263-2626
	서울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67길 10(망우동) 망우본동복합청사 6층	02)495-0030~1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 262	051)866-0536~7
	부산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중앙로 110	051)991-0777
	부산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29	051)526-0756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575-18(가야동)	051)936-7011
	부산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1210번길 17(괘법동)	051)321-3389
	부산연제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124번길 22	051)866-7191
	부산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513번길 66-11	051)527-2446





제3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시도명	기관명	주소	기관 대표번호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371길 30(내당2동 52-4번지)	053)421-2346~7
	대구동구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53길 36	053)662-3521
인천	인천역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00(수산동) 남동체육관 내 1층	032)431-4606~9
	인천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계산동) 사회복지회관 1층	032)556-5712~4
	인천남구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로19번길 10-18 4~5층(송의2동 168-11 4~5층)	032)884-0756
	인천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동로18번길 51, 2층(삼산동)	032)361-8653~4
	인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64(심곡동)	032)568-7234
	인천연수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청사 내 604호	032)715-8262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내 2층	062)714-3635~6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유성구월드컵대로32동관1층	042)721-1256~7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	052)266-4173~4
	울산남구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251(달동 1322-9)	052)256-9508~10
	울산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 1길 61, 2층(전하동)	052)201-0961
	울산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18	052)246-0600
	울산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8길 66	052)275-1233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16(중촌동, 종촌종합복지센터 1층)	044)865-0561
경기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031)258-1485
	경기도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둔아로 9 4층 (의정부동)	031)876-5767~8
	경기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화정동)	031)975-3314
	경기과천시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2 가족여성플라자 4층(부림동)	02) 6925-2526
	경기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성채로 78번길 7 (소하 2동)	02)899-0163~4
	경기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회안대로 1404-1	031)765-6010
	경기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 34(인창동 527-37)	031)566-2323
	경기군포시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0, 3층(산본동)	031)393-0236
	경기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장기동)	031)985-1901
	경기남양주시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 어린이비전센터	031)528-4463~4
	경기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330	032)322-8686
	경기성남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 4층(복정동 667번지)	031)721-1640
	경기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4번길47 (정자동)	031)255-5682~4
	경기수원시동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759번길 29(영통동)	031)273-6690~2
	경기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 233번길 37, 3층	031)431-5682,6358
	경기안산시	경기도안산시상록구안산대학교로155안산대학교채플관B6호(일동)	031)415-2271~3
	경기안양시	경기도안양시만안구냉천로39만안평생교육센터2층(안양동)	031)383-5170~1
	경기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26(고암동)	031)8082-4225~6
	경기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670-2	031)374-5563
	경기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90	031)335-8690
	경기의왕시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22 여성회관 지하1층(오전동)	031)455-1853~4
	경기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 덕암빌딩 3~5층 (의정부2동 572-5)	031)853-5006~8





시도명	기관명	주소	기관 대표번호
	경기이천시	경기도이천시중리천로34번길38(중리동)	031)634-9842~4,6
	경기파주시	경기도파주시문산읍통일로1680문산행복센터3층	031)954-4800
	경기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 11길 2(비전동)	031)692-7705
	경기포천시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207번길 26, 1층	031)536-9632
	경기화성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도이리 산31-6번지)	031)8059-1640~2
강원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 (후평1동)	033)244-2660, 4660, 8660
	강원강릉시	강원도 강릉시 용지각길 20번안길 3(3층) (포남동)	033)641-1382, 642-1383
충북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410호(북대동)	043)239-8777~8
	충북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13-2(내덕동)	043)222-6660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1층(의화동)	041)634-6234~9
충남	충남천안시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오성로232층(두정동)	041)561-2821~2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주시 덕진구 들사평로1 38 전라북도 여성일자리센터 2층(2-5)	063)276-8080~1
전북	전북고창군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 2길 20	063)564-0862
	전북군산시	전라북도군산시대학교330(1~2층)	063)911-0756
	전북익산시	전라북도 익산시 공동로 43	063)859-4765
	전북전주시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선너머3길61번길2동3층	063)905-6509
전남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아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2층	061)285-5455~6
	전남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읍산길 27	061)749-4085
경북	경상북도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360	054)337-9939~40
	경북김천시	경상북도김천시용전1로1길25	054)421-2471, 2470
	경북문경시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역옆길 25(홍덕동 257-1)	054)701-2337
	경북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 포항시 평생학습원 407호(상도동)	054)256-2580,2,7
경남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교로 20 창원대학교 두레관 4층	055)213-2471~5, 7
	경남진주시	경상남도진주시남강로1463번길17(하대동)	055)749-5435
	경남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20번길 11(가음동 20-8) 창원시여성회관 창 원관 4층	055)287-1216
	경남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09	055)934-0883~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26 2~3층(해안동)	064)746-2211
	제주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동로22(법환동)	064)739-6275





부록2.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년 1월 기준)

시도명	기관명	주소	기관 대표번호
보건복지부	중앙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6길 19(역삼동)	02-558-1391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수서동)	02-2040-4242
	서울시동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69길 106(장안동)	02-2247-1391
	서울강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시정현빌딩 2층 (가양동)	02-3665-5183~5
	서울은평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4층(응암동)	02-3157-1391
	서울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 에이스테크노타워 4층 407호	02-842-0094
	서울성북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타운힐빌딩)	02-923-5440
	서울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신수동)	02-422-1391
부산	서울동남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5층(문정동)	02-474-139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가)	051-791-1391
	부산동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호	051-715-1391
	부산서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405,406호	051-711-1391
대구	부산남부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삼한오피스텔 1503호(범일동)	051-791-1360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동인동3가) 2층	053-422-1391
	대구남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송현동) 2층	053-623-1391
인천	대구북부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25길 12-1(산격동)	053-710-139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032-434-1391
	인천북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5층 504, 505호(계산동, 삼환1빌딩)	032-515-1391
광주	인천남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간석동)	032-424-139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쌍촌동)	062-385-1391
대전	빛고을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97-2(운암동)	062-675-139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울로 156(중촌동)	042-254-6790
울산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중구성안3길21(성안동)	052-245-9382
	울산남부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355번길 23(삼산동)	052-256-1391
경기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번길 20(영화동)	031-245-2448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4층(도림빌딩)	031-874-9100
	경기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031-756-1391
	경기고양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11, 7층(행신동, 삼정프라자)	031-966-1391
	경기부천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79 서호빌딩4층 405호 (중3동 1058-4)	032-662-2580
	경기화성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찬병마로 1334, 4층(봉담읍, 송현빌딩)	031-227-1310
	경기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204호(금곡동, 다남빌딩)	031-592-9818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35, 402호(월파동, 에스엘타운)	031-402-0442
	경기용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9 505호(구갈동)	031-275-6177
	경기사흥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대야동, 2층)	031-316-1391
	경기평택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소사동)	031-652-1391
	수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392번길 17 (연무동)	031-8009-0080





시도명	기관명	주소	기관 대표번호
강원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번길 35(후평1동)	033-244-1391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5번길 33 2층(교동, 반트빌딩 2층)	033-644-1391
	강원서부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7(명륜동)	033-766-1391
	강원남부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2,3층	033-535-5391
충북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202번길 66-1(울량동)	043-216-1391
	충북북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4층(청전동, 제천시보건복지센터)	043-645-9078
	충북남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옥천읍)	043-731-3685
충남	충청남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성정동)	041-578-2655
	충청남도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84번길 55(취암동)	041-734-6640
	충청남도서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층 (신경리 903)	041-635-1106
전북	전라북도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서서학동)	063-283-1391
	전라북도서부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갈산동 185-3)	063-852-1391
	전라북도동부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향교동)	063-635-1391
전남	전라남도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용당동)	061-753-5125
	전남서부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석현동)	061-285-1391
	전남중부권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3층(송월동)	061-332-1391
경북	경북남부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95번길 24(성간동)	054-745-1391
	경북북부	경상북도 안동시 법적골길 20(율세동)	054-853-1391
	경북동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5번길 12, 3층(대잠동)	054-284-1391
	경북서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3층(송정동 80-1 하나빌딩)	054-455-1391
경남	경상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회원동)	055-244-1391
	경남서부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상대동)	055-757-1391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감해대로 2385번길 8 2층(부원동)	055-322-139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064-712-1391~2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서귀동)	064-732-1391



